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944-01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Policy Development for Promotion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to Certified Producer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최종보고서(2017.12)

연구기관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책임연구원 유 병 덕
연구원 김 난 영
연구원 이 승 영

연구 담당

유병덕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김난영	연구원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제도
이승영	연구원	GAP 인증에 관한 친환경농업인·소비자 인식 조사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1
2. 친환경 소비시장의 확대 전략의 필요	6
3. 생산자 편익의 증대	9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1. 친환경 및 GAP 인증제 현황	11
2. 친환경-GAP 병행인증 사례 분석	27
3. 해외 유기농에서의 GAP 적용 사례	39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78
2. 응답자 통계적 성격	80
3. 친환경 농업인의 GAP 인식	87
4. 병행인증 생산자의 통계적 성격	103
5. 응답자 특성에 따른 GAP 인식 분석	108
6. 친환경 농업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112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 조사 개요	116
2. 친환경농산물과 GAP 인증에 관한 일반 인식	118
3. 토마토를 통해 추정된 농산물의 인증의 가치	131
4. 소비자 인식 조사의 결과	136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1. 친환경인증과 GAP 연계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140
2.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보완 방안	156
3. GAP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	171
4. 인증 절차 간소화 방안	180
5.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189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196
7. 친환경인증농가의 글로벌갭(GLOBALG.A.P.) 연계 및 수출활성화 방안 ·	200

제6장. 결론	209
---------------	-----

부록

1.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 비교표	218
2. 친환경(유기) 및 GAP 인증기준 비교	233
3. GLOBALG.A.P. 기준 (v5.1)	248
4. 친환경농업인 설문조사 양식	296
5.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302

참고문헌	310
------------	-----

표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표 1-1. 성인 가구원의 특성별 식품소비 정책의 분야별 중요도 비교	6
표 1-2. 성인의 국민 건강 추구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 정책 인식	6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표 2-1.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 일반 현황 비교	14
표 2-2.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유효기간 비교	15
표 2-3.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시 분석 비교	16
표 2-4.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생산자 교육 비교	17
표 2-5.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생산자 관리계획서 비교	18
표 2-6.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관리 시스템 비교	23
표 2-7. 친환경 + GAP 병행인증 기관 지역분포	25
표 2-8. 친환경, GAP 인증기관 현황	26
표 2-9. 인터뷰 대상 농가	32
표 2-10. 주요국 GAP 비교	59
표 2-11. 글로벌갭(GLOBALG.A.P.) 규정 구성	61
표 2-12. 친환경인증, GAP, 글로벌갭(GLOBALG.A.P.) 관리 시스템 비교	68
표 2-13. 유기농-GAP 병행인증 사례 (1,004건의 생산자 정보 확인 결과에 한함) ·	70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표 3-1. 거주 지역	80
표 3-2. 연령	82
표 3-3. 대표 작목	83
표 3-4. 인증 종류	84
표 3-5. 재배 방식	85
표 3-6. 농사 규모	85
표 3-7. 연간 농가 소득	86
표 3-8. 농사 경력	86
표 3-9. 친환경 농업인의 GAP 인증 필요성 인식	87
표 3-10. 친환경 및 GAP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	88
표 3-11.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89
표 3-12.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	91

표 3-13. 생산자의 인증마크 선호도	92
표 3-14. 소비자 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	93
표 3-15. 인증 난이도 인식	94
표 3-16. GAP 인증 추진 시 애로사항	95
표 3-17. 선호 인증기관 유형	96
표 3-18. 현 인증기관의 GAP로 인증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97
표 3-19.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	99
표 3-20.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사항	100
표 3-21. GAP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101
표 3-22. GAP 추가 인증 시의 기대 효과	102
표 3-23. 거주 지역 빈도분석	103
표 3-24. 응답자의 연령 분포	104
표 3-25. 응답자의 대표 작목 현황	104
표 3-26. 인증 종류	105
표 3-27. 재배 방식 현황	105
표 3-28. 농사 규모	106
표 3-29. 연간 농가 소득	107
표 3-30. 농사 경력	107
표 3-31. 친환경 인증 농가 종류별 GAP 추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 인식	108
표 3-32. 품목별 GAP 추가 인증 필요성 인식	109
표 3-33. 응답자 특성과 GAP 인식의 상관관계	111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표 4-1. 응답 소비자들의 기초 통계	117
표 4-2.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 정도	118
표 4-3.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 인지 수준	120
표 4-4.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121
표 4-5. 친환경 기준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농산물 안전성 인식	123
표 4-6. 친환경농업과 GAP의 목적	125
표 4-7.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신뢰도	126
표 4-8.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미래농정연구원, 2007)	127
표 4-9. 친환경농산물 신뢰정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7
표 4-10.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가능성 측정	128
표 4-11.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설정	130
표 4-12. 선택실험에 사용한 토마토의 속성 및 수준	132
표 4-13. 표본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133

표 4-14.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134
표 4-15. 속성수준의 한계 지불의사액	136
표 4-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변화 (단위: 명(%))	139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표 5-1. 글로벌갭(GLOBALG.A.P.) 개인위생 수칙	162
표 5-2. 유기농산물에서 위생 관리 기준 보완을 위한 개정안	164
표 5-3. 생물학적 리스크 평가 예시 (GLOBALG.A.P. 팜어슈리, 이시도르연구소)	167
표 5-4. 작물 유형에 따른 생물학적 리스크 분류	169
표 5-5.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비교	182
표 5-6. 친환경 및 GAP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비교	188
표 5-7.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개정안 제안	192
표 5-8.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197
표 5-9.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198
표 5-10. 국내 글로벌갭(GLOBALG.A.P.) 인증현황	201
표 5-11. 유기농가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적용 시 적용되는 기준 (권장기준 제외)	203
표 5-12. 유기농 버섯 배지 기준 개선안	207

그림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그림 2-1.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연령 분포	27
그림 2-2.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작목 분포	28
그림 2-3.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경작면적 분포	29
그림 2-4.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농업소득 분포	30
그림 2-5.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범위	45
그림 2-6. JGAP 인증 농장 수	46
그림 2-7. JGAP 농장, 농축산물 사용 마크	48
그림 2-8. 중국 GAP 기준 구성	51
그림 2-9. 중국 GAP 인증 마크	52
그림 2-10.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절차	63
그림 2-11. 글로벌갭(GLOBALG.A.P.) 운영 체계	66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1. 거주 지역 분포	81
그림 3-2. 연령 분포	82
그림 3-3. 대표 작목 분포	83
그림 3-4. 친환경 농업인의 GAP 인증 필요성 인식	87
그림 3-5. 친환경 및 GAP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	88
그림 3-6.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90
그림 3-7.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	91
그림 3-8. 생산자의 인증마크 선호도	92
그림 3-9. 소비자 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	93
그림 3-10. 인증 난이도 인식	94
그림 3-11. GAP 인증 추진 시 애로사항	95
그림 3-12. 선호 인증기관 유형	97
그림 3-13. 현 인증기관의 GAP로 인증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98
그림 3-14.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	99
그림 3-15.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사항	100
그림 3-16. GAP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101

그림 3-17. GAP 추가 인증 시의 기대 효과	102
그림 3-18. 품목별 GAP 추가인증 필요성 인식 (단위: %)	109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그림 4-1.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 정도인식	119
그림 4-2.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 인지 수준	120
그림 4-3.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122
그림 4-4. 친환경 기준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농산물 안전성 인식	123
그림 4-5. 친환경농업과 GAP의 목적	125
그림 4-6.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신뢰도	126
그림 4-7. 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도 조사	127
그림 4-8.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가능성 측정	128
그림 4-9.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설정	130
그림 4-10. 농산물의 후생가치와 보건가치의 효용극대 소비점	137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그림 5-1. 친환경농산물과 GAP 통합적 연계 개념도	143
그림 5-2. HACCP의 선행요건프로그램(PRP)	147
그림 5-3. 친환경과 GAP의 독립적 연계 개념도	150
그림 5-4. 글로벌갭(GLOBALG.A.P.)의 농업용수 수질검사 여부 결정 순서도	166
그림 5-5. 친환경농산물에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 단계적 도입안	170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1.1.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효과

- 친환경농업의 본질적 목적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친환경농어업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

- 농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통하여 확보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의 적용 목적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UN보고서(2009) 「Comparative study on the GLOBALG.A.P. Fruit and Vegetables Standard and the EU Organic Agriculture Regulation」에서 유기농업의 목적은 농업생태계의 건강, 글로벌갭(GLOBALG.A.P.)의 목적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규정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은 생물다양성, 자원의 순환, 토양 환경의 보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¹⁾
 - 식품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제도는 GAP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주요 목적과 구별해야 함

- 유기농산물은 관행농산물에 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면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화학적 위해요소(hazard)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 ⇒ 화학자재를 적정 사용하는 GAP에 비하여 친환경농산물은 화

1) CAC GL 32.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관원 번역판
서문 제7항.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 총체적 생산관리제도이다.

학적 리스크가 더욱 낮아짐

- 유기농산물의 경우 퇴비화 기준이 적용되어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퇴비사용 기준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농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이나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한 것을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할 것”

⇒ 퇴비의 부숙과정을 통하여 유해미생물, 기생충알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해소됨. 관행농업에서는 퇴비의 부숙, 사용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리스크가 친환경농산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가치는 농업생태계(Agroecosystem)의 건강과 재배 과정에서 작물의 건강을 높임으로서 농산물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

- 친환경농산물의 부속 가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확보된 화학적, 생물학적 안전성

⇒ 본래의 목적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제어되는 효과로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에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음

친환경농어업의 정의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

1.2.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요건

○ 자연발생적인 화학적 위해요소²⁾

-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화학자재가 아닌 자연발생적인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제어가 필요

⇒ 자연발생적인 화학적 위해요소는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요소

○ 유박 등 부속하지 않은 유기질 비료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 퇴비 등 부속한 자재에 비하여 부속 공정 없이 사용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 기준이 필요
- 유기질 비료의 투입 시기 제한의 필요

- USDA NOP의 경우 리스크가 높은 유기질 비료(부속되지 않은 구비 등)의 투입 시기와 위치를 제한

예) 가식부위가 토양에 인접하는 작물에는 수확 전 90일 전까지만 사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준에도 생물학적 리스크가 높은 자재를 사용할 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수확 과정과 농산물 취급과정(수확후 처리 등)에서 농산물의 안전 관리

- 개인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의 기본 요건은 친환경농업에도 적용되는 것이 생물학적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2) 화학적 위해요소는 자연발생적 위해요소와 인위적 위해요소로 구분되는데, 자연발생적 위해요소는 버섯독, 복어독, mycotoxin, 파툴린 등이 있고, 인위적 위해요소는 잔류농약, 질산태 질소, 식품첨가물 등이 있음

1.3. GAP를 통한 안전성 강화 효과

-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안으로 GAP 적용 가능성
 - 식품안전 위해요소 관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식품 안전 리스크 제어 가능
 - 친환경농산물 재배 기준에서 요구되지 않는 수확작업 및 수확 후 작업 시의 개인위생 기준 등 GAP 기준을 병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농산물의 안전성 외에도 농작업자의 건강·안전·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GAP가 효과적
 - 친환경농업에서는 농작업자의 농약중독, 안전사고, 노동자 인권 등 농업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기준이 미흡
 - GAP에서는 보호 장구, 농업기계, 안전, 보건, 재해예방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환경보전 및 농업생태계 보전 과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건강한 농산물로서의 가치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가치의 상승효과를 이룰 수 있음
 - ⇒ 친환경농산물의 건강성 + GAP의 안전성 = 가치의 상승

2. 친환경 소비시장의 확대 전략의 필요

2.1.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

- 소비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식품정책으로 인식
 - 식품소비 정책 중 식품안전보장(2015, 62.1%)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
 - 국민 건강 추구를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식품안전 관리(2015, 31.1%)를 선택

표 1-1. 성인 가구원의 특성별 식품소비 정책의 분야별 중요도 비교

연도	식품 안전 보장	식품 관련 거래 적정화	식품 관련 피해 구제	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	식품 표시 정보의 제공	기타
2013	66.5%	10.6%	5.4%	12.0%	5.0%	0.7%
2014	63.3%	9.3%	6.3%	14.8%	6.2%	0.1%
2015	62.1%	10.0%	7.7%	16.0%	4.1%	0.1%

농경연 (2014-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표 1-2. 성인의 국민 건강 추구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 정책 인식

연도	식품 안전 관리로 질병 예방	식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의 공급체계 구축	소비자 건강 향상	관련 정보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홍보
2013	29.8%	21.2%	29.0%	13.6%	6.5%
2014	30.7%	24.6%	28.5%	11.8%	4.4%
2015	31.1%	27.4%	26.7%	10.2%	4.6%

농경연 (2014-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친환경농산물은 관행농산물에 비하여 퇴비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생물학적 위험(Risk, 이하 ‘리스크’)³⁾이 더 높은 것으로 오해
 - 하상도(2012)는 유기농식품 관련 안전문제 발생 사례를 제시
 - (1) 친환경 껌잎에서 식중독균 검출(2010)
 - (2) 프랑스산 유기농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2009)
 - (3) 캘리포니아 유기농 계란에서 살모넬라균 검출(2009)
 - (4) 미국에서 유기농으로 추정되는 토마토에서 살모넬라균(2008)
 - 유기농이기 때문에 식중독균 등이 더 많이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 관련 사고는 유기농과 비유기농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 가능
 - 식품 전체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비율과 친환경 식품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을 구분하여야 함. 실제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리스크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 (유기농산물 생산 기준에서 퇴비의 완전한 부숙을 요구)
 - ⇒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안전 사고 리스크를 더욱 낮추어 소비자의 선택 선호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

2.2. 해외의 여러 시장에서 유기농과 GAP를 동시에 요구

- 캐나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을 구분하지 않고 캐나다갭(CanadaGAP) 인증을 요구
 - 2015년 현재 블루베리 생산농가의 약 30% 인증(유기농 포함)
 - COABC⁴⁾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성 조사

3) 식품안전에 관련된 용어 중 Risk는 ‘위험’, ‘위험성’, ‘위해성’ 등 우리말 표현이 일관되지 않고, 부처별로 달리 쓰이는 바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로 표현하고자 함

- 국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에서 유기농 또는 GAP 농산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채택
 - 런던 올림픽(2012),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2016)에서는 유기농 등 지속가능한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
 -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공급될 농산물은 GAP 인증품으로 권고 :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정책

- 남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USDA NOP 인증 유기농산물(주로 파인애플, 바나나)에 대해서는 소매업체들이 GAP 인증을 추가적으로 요구
 - 주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생산품은 농업생산 다국적 기업으로 Dole, Del Monte, Chiquita 등이 있음 : 이들 기업은 관행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모두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취득
 - 인증기관은 EcoCert(프랑스),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네덜란드), Kiwa BCS Oko Garantie(독일), QAI(미국) 등으로 유기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추진이 가능

3. 생산자 편익의 증대

3.1. 생산자의 병행 인증 애로사항

- 친환경인증농가가 GAP 인증을 병행하기 위해 농가의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
 -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의 관리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 예컨대, 공시된 유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시스템, 취급시설의 위생관리, 폐기물·폐수의 관리, GAP 교육 이수(2년에 1회 이상),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등
 - 친환경인증기관과 GAP 인증기관이 분리되어 각각의 인증 절차를 수용해야 함
 - 같은 필지에 대해 인증신청서, 생산계획서, 위해성평가 등 서류 작업을 반복하여 시간과 노력을 이중으로 소모
 - 같은 필지에 대해 두 가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인증 후에도 사후관리의 별도 진행으로 심사에 대한 부담감 가중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경우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프리미엄 기대가 낮음
 - 친환경인증만 받는 경우와 GAP 인증을 병행하는 경우에 가격 프리미엄이 미흡
 -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여, GAP 인증 추가 획득으로 인한 소비 촉진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3.2. GAP 추가 인증 시 생산자의 부담 완화 방안의 마련

- 친환경인증 농가가 GAP 인증을 추가 획득 시, 인증기준의 중복사항은 면제 및 간소화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 시행 방안이 필요
 - 토양, 수질, 작물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공유
 - 토양 및 작물의 양분 관리 시 화학비료 사용이 최소화 되었으므로, GAP 심사 시 면제 가능
 - 화학농약을 사용 하지 않으므로, GAP 심사 시 ‘농약 등의 안전 사용기준’ 등 관련 사항을 심사에서 면제 가능

⇒ 두 제도 사이 관리사항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령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의 개정 검토

-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 마련
 - 친환경인증기관과 GAP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의 조정
 - ⇒ 친환경인증기관이 한 번의 절차로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심사원 및 인증심의관의 자격기준을 비교하여, 동일인이 한 번의 절차로 심사 및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두 가지 인증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절차 간소화 및 인증비용의 절감이 가능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1. 친환경 및 GAP 인증제 현황

1.1. 인증제도의 개요

○ 가치와 목적

- 친환경인증은 화학자재의 투입을 최소화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친환경농산물은 건강한 농업생태계에서 생산됨으로써,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후생(厚生) 수준이 높아짐 (후생가치)
- GAP 인증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GAP 농산물은 위생 등 안전기준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보건(保健) 수준이 높아짐 (보건 가치)
- 친환경농산물과 GAP는 같은 목적(식품안전)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오해하여 GAP가 친환경의 하위 수준 농산물로 평가되기
 도 함
- ⇒ 이는 잘못된 정보로, 두 제도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르며 상호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

○ 인증 도입

- 1993년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1996년 저
 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품질인증제도와 별도로
 1997년 유기농산물 표시제를 도입. 2001년 「친환경농업육
 성법」으로 변경하고 품질인증제와 표시제를 통합관리. 2002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GAP 인증은 2002년 도입 결정 이후 2003년~2005년까지 시범
 사업⁵⁾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행

○ 인증 대상

- 친환경인증의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식품, 사료, 양봉, 취급자
 로 다양하며,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시설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음
- 단, 가공 및 취급 인증 시에 유기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확인

5) 인삼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생약협회, 농협, 인삼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에서 참여하였음

- GAP은 우수관리시설을 인증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친환경의 취급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에 대한 인증만을 받을 수가 있음

○ 인증기관

- GAP 인증 활성화 정책⁶⁾에 의하여 인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기존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GAP 인증기관으로 병행인증기관을 추진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병행하는 인증기관은 30개임

6) 정부에서 2015년 「GAP 농산물 확산방안 마련」, 2016년 「GAP 인증 농가 증가율 전년 대비 20% 달성」 정책 추진

표 2-1.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 일반 현황 비교

구분 ⁷⁾	친환경인증	GAP 인증
개념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생산물(농·축산물을 포함)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제고
추구가치	후생가치: 농업생태계의 건강과 소비자 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	보건가치: 농산물의 안전성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최초 도입	2002년 도입	2006년 도입
대상	농산물, 축산물, 양봉,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농산물, 관리시설
인증건수(건)	농산물: 24,566 (유기: 5,163, 무농약: 19,403)	6,994
인증면적(ha)	농산물: 1,709,812 (유기: 1,647,542, 무농약: 62,270)	102,929
인증기관(개)	62	52

7) 본 표에서 작성된 인증건수, 면적, 기관수는 친환경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및 GAP 정보서비스 참조(2017.12.12.)

1.2.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비교

- 본 장에서는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에서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을 하며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GAP 인증을 받기 위하여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에서 세부적인 방법을 제시함
- 인증 유효기간
 - 친환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종류에 상관없이 1년임. GAP 인증은 농산물의 경우 2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이며 매년 사후관리를 통하여 매년 인증대상을 관리

표 2-2.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유효기간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농산물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유효 기간	1년	2년 인삼 및 약용식물: 3년	5년

- 분석
 - 친환경과 GAP 인증 시 수질, 토양, 생산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친환경인증에서는 수질의 경우 분석주기를 5년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심사 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분석을 실시
 - GAP 인증에서는 토양(중금속), 수질에 대하여 5년마다 분석을 실시하며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분석은 심사

시에 분석을 실시

⇒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양과 생산물에 대한 중금속 분석이 필요

표 2-3.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시 분석 비교

구분		분석 주기	
		친환경인증(농산물) ⁸⁾	GAP 인증 ⁹⁾
토양	중금속 등	- 오염우려 지역일 경우 분석	5년
	잔류농약	- 오염우려 지역 -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 (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해당 없음
수질		- 5년 (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5년
생산물	잔류농약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 신규 개인 신청 농가	심사 시
	중금속	해당 없음	심사 시
	GMO	-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없음
퇴비		- 유기농산물일 경우에만 적용 :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없음

8) 고시 제2017-32호 [별표 2]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제3항 관련)

9) 고시 제2016-56호 [별표 1]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 교육

- 친환경인증의 경우 교육은 인증의 필수 조건이 아님. 단, 생산자 단체의 경우 지정된 생산관리자가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GAP 의 경우 인증신청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친환경인증 농가에서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GAP 기본교육을 이수와 공동작업자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

표 2-4.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생산자 교육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교육	- 신청자가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게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	- 최초 인증 시: 인증신청 전 - 갱신 시: 인증 유효기간 이내에 1회(2시간) 이상 - 공동작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 실시

○ 관리계획서(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 관리계획서는 인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인증 신청품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임
- 친환경인증에서는 재배포장 내역 및 품목 생산 계획량, 재배 작기 재배포장, 용수, 종사 관련 내역, 재배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
- GAP 인증에서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며 재배포장 내역 및 품목 생산 계획량, 재배 작기 재배포장 안내도, 수확 후 관리시설 평면도, 위해요소 분석(재배과정 별 잠재적 위해요소 확인 및 평가),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중요관리점

별 점검방법 등을 기재

- 친환경인증농가에서 GAP 인증을 받을 시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방법에 대한 어려움 발생

⇒ 위해요소관리계획서와 중요관리점에 대한 작성 방법 학습 및 친환경인증에 맞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샘플계획서 개발 필요

표 2-5.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생산자 관리계획서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관리 계획서	- 생산계획서 작성 - 단체: 생산자 단체 공동사항	-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른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 단체: 사업운영계획서

○ 추적성

- 인증품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친환경과 GAP 인증에서는 기록관리를 통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고 있음
- 국내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2005년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이후 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필수로 등록해야했으나 2014년부터 필수 등록사항에서 제외

○ 종자

- 친환경인증은 유전자변형물질(GMO)에서 유래한 종자 사용을 하지 못하며, 유기종자를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함
- GAP 인증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가 된 종자를 사용하거나 자가 채종 및 육묘 시 종자의 생산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함
 - ⇒ 친환경인증 시 자가 채종 및 육묘 시에는 관련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 사용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음. GAP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 해당 종자 포장지 겉면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록 또는 해당 포장재를 보관

○ 작물보호제

- 친환경인증은 유기합성농약 사용이 금지되어야 있으며,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또한 살포 장비로 인한 혼입과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 GAP 인증에서 유기합성농약 사용 시 ‘안전사용 기준’, ‘안전사용 기준 시기’, ‘사용내역 기록관리’, ‘장비의 청결’, ‘농약 혼용 가부표 준수’, ‘보관 장소 관리’, ‘사용하고 남은 농약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친환경인증농가에서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기농업 자재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관리¹⁰⁾가 필요함

1) 살포 장비의 청결 관리

10)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 및 시기는 없으므로 생략

- 2) 유기농업자재 보관 장소 지정
- 3) 유기농업자재의 구분보관
- 4) 사용 후 남은 유기농업자재와 폐기물 관리

○ 양분관리 자재 관리

- 친환경인증에서는 양분관리 자재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GAP 인증에서는 비료의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
 ⇒ 친환경인증에서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비료(무농약), 퇴비, 유박 등 유기질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 종묘, 유기농업자재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보관하고, 보관 중인 양분관리자재는 **강우로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 수확작업 및 보관

- 친환경인증에서는 수확관리에 관련된 기준으로 ‘수확 후 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음
- GAP 인증에서는 수확작업 및 보관 시 위생관리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1) 농산물 수확 시 개인의 위생관리에 주의
 - 2) 수확용 농기구, 수확장비, 운송장비는 청결하게 보관 및 관리
 - 3)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과정에서 선별·제거하고 이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 4)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에 파리·쥐·새 등의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 5)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시설 등에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 6) 수확한 농산물은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방치하는 경우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확물 취급 시 작업자의 위생관리

- 수확 후 수확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GAP 인증 기준에 따라 작업 전 손 청결, 위생복장 착용, 취급 도구와 설비의 위생적 관리, 작업장 청소 및 기록이 필요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는 작업자의 위생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음

⇒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1) 손 건조기(또는 수건) 비치
- 2) 위생복장 착용
- 3) 도구와 설비의 위생 관리
- 4) 작업장 청소 및 기록

○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계 보전

- 친환경인증에서는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 윤작 실천 등 재배방법을 통하여 농업생태계를 보전
- GAP 인증에서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농장 폐기물 관리를 통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1)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 관리
- 2) 유기농업자재병과 폐비닐의 처리
- 3) 폐기물·폐수 처리에 대한 기록관리
- 4) 생활쓰레기 소각·매립·방치 금지

○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친환경인증에서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기준 없음
- GAP 인증 시 작업자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농약 살포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한 보호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1)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2) 유기농업자재 살포 시에는 보호장비 착용하고 보관 시에는 세척 후 건조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표 2-6.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관리 시스템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법적 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효 기간	1년	농산물: 2년(인삼 및 약용식물: 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5년
분석	※ 고시 [별표2]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석 실시 - 토양: 잔류농약 ¹¹⁾ (심사 시) - 토양: 중금속 ¹²⁾ (심사 시) - 수질분석 ¹³⁾ (5년/회) - 생산물 ¹⁴⁾ (심사 시) - 퇴비 ¹⁵⁾ (심사 시)	- 토양 중금속 분석(5년/회) - 수질분석(5년/회) - 생산물: 잔류농약(심사 시) - 생산물: 중금속(심사 시)
교육	- 생산자단체 담당자의 경우 4시간 이상 2년에 1회 기본 교육 이수	- 2년에 1회 기본교육 이수 - 작업자 위생교육 실시
관리 계획서	- 생산계획서 작성 - 단체: 생산자 단체 공동사항	-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른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 단체: 사업운영계획서
위해 요소 분석	- 없음	- 과정별 농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 분석표 작성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과정)
중요 관리점	- 없음	- 중요관리점 결정표 작성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추적성	- 기록 및 관리를 통한 이력추적 관리	- 기록 및 관리를 통한 이력추적 관리
종자	-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 사용 금지 - 유기종자 우선 사용(유기기준)	-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가 된 종자 사용 - 자가 채종 및 육묘 시 종자의 생산정보 기록관리 실시
토양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중금속, 잔류농약)	- 토양중금속기준 준수

- 11)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 분석 실시
- 12)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인 경우 분석
- 13)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 14)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 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 15)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작물 보호제	- 농약 사용 금지	-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시기
	- 자재의 사용내역 기록관리	- 농약의 사용내역 기록관리
	- 농약살포 장비로 인한 혼입과 오염 방지	- 농약살포 장비의 청결
	- 없음	- 농약 혼용가부표 준수
	- 자재의 보관 방법에 대한 기준 없음	- 농약 보관 장소의 안전성과 잠금장치 설치
	- 자재의 보관 방법에 대한 기준 없음	- 농약의 구분관리
	- 없음	- 사용 후 남은 농약과 폐기물 처리
비료	- 적정 시비(과다 사용 금지)	- 적정비료의 사용
	- 퇴비, 유박 등 유기질 비료의 보관 방법 없음	- 비료의 구분관리
수확 작업 및 보관	- 없음	- 수확용 농기구 및 장비의 청결관리
	- 없음	- 등급 외 농산물 선별관리
	-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수확물 취급 시 작업자의 위생관리	- 없음	- 작업 전 손을 청결하게 씻고 손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 사용
	- 없음	- 품목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위생복장 착용
	- 없음	- 도구와 설비의 위생적 관리
	- 없음	- 작업장 청소 및 기록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 계 보전	- 없음	-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 관리
	- 없음	- 유기농업자재병과 폐비닐 처리
	- 없음	- 폐기물, 폐수 처리에 대한 기록 관리
작업자의 건강, 안전	- 없음	-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
	- 없음	- 농약 살포시 보호장비 착용과 관리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1.3. 인증기관 현황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은 62개, GAP 인증기관은 52개, 친환경+GAP 병행인증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30개
- 친환경+GAP 병행인증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라도 지역(12개)에 집중

표 2-7. 친환경 + GAP 병행인증 기관 지역분포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제주
인증기관수	4	1	3	5	2	5	3	5	2

자료: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GAP 정보서비스(2017.12)

- 인증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인증농가에서 병행인증 신청 시 어려움은 없음. 다만 병행인증을 받는 경우 친환경과 GAP 인증 심사원 자격이 갖추어진 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 시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

표 2-8. 친환경, GAP 인증기관 현황

인증기관	친환경	GAP	인증기관	친환경	GAP
(주)한국농식품인증원	○	X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	X	(주)비씨에스코리아	○	○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X
(주)한국유기농인증원	○	X	사단법인 유기농진흥센터	○	X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주식회사	○	X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	○	한솔농림수산물인증센터	○	○
(사)울진친환경농산물인증원	○	X	(주)한국농산업연구소	○	○
(주)오씨케이	○	○	(계)하동녹차연구소 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	○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	○	(주)그린인증원	○	X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	X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연구원	○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	가평군농업기술센터	○	X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X	봉화군농업기술센터	○	X
(사)농산물품질평가원	○	○	(주)친환경인증센터	○	X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X	(주)에코리더스인증원	○	X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	(사)친환경축산협회	○	X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X	(주)인증포럼	○	X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	X
토지 영농조합법인	○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	X
주식회사 성농	○	○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	X
(사)자연돌농식품인증원	○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주식회사	X	○
한국작물연구소(주)	○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X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농업회사법인(주)대한농업회	X	○
국립목포대학교	○	X	(주)농업회사법인 농산물품질인증평가원	X	○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	X	(주)대한인증원	X	○
농업회사법인(주)유기식품평가원	○	X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X	○
(주)에버그린농우회	○	○	(주)유기농업기사인증평가원	X	○
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	○	(주)오에이티씨	X	○
스마일친환경(주)	○	X	아이센(주)	X	○
네오친환경인증센터(주)	○	X	주식회사 이앤컴퍼니	X	○
주식회사 온누리친환경	○	○	(주)한국인삼공사	X	○
건국에코씨트인증원(주)	○	X	(주)푸드머스 에이치앤에스연구소	X	○
주식회사 예농	○	○	(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X	○
(주)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	○	(사)한국생약협회	X	○
(주)지리산인증	○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X	○
(주)우리농인증원	○	○	주식회사 대유	X	○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	X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X	○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	X	농협경제지주(주)식품연구원	X	○
도담친환경 유한회사	○	X	산림조합중앙회	X	○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품	X	○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식회사	○	X	(재)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X	○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	X	농업법인플럼코트(주)	X	○
Kiwa BCS Oko Garantie GmbH	○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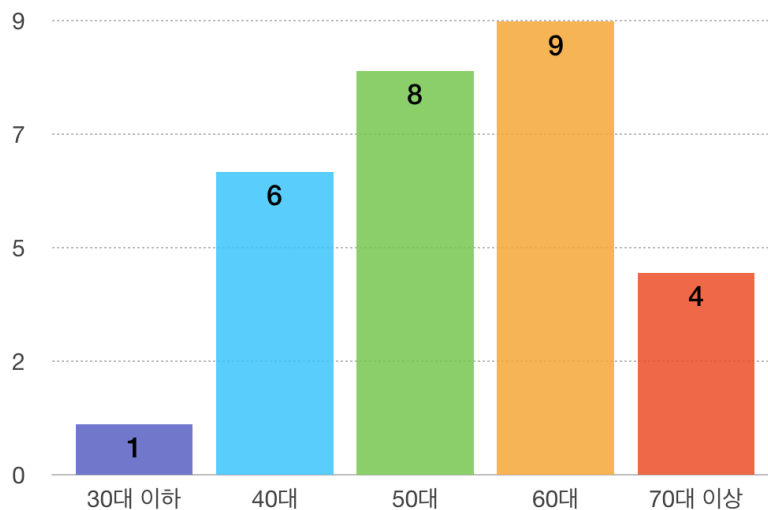
자료: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GAP 정보서비스(11월)

2. 친환경-GAP 병행인증 사례 분석

2.1.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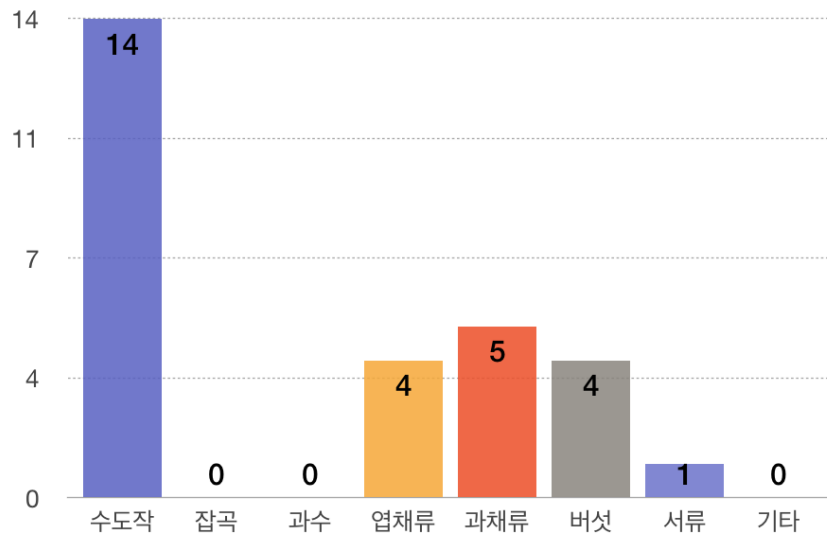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07명 중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28명(4.6%)에 그쳐, GAP에 대한 참여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분포는 60대,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설문에 응한 응답자 전체의 연령분포와 병행인증 농가의 연령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남
(표3-2 및 표3-24 참고)

그림 2-1.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연령 분포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작목은 수도작이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수도작의 경우 단체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
 - 그밖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엽채류, 과채류, 버섯은 잡곡 등 다른 작목에 비하여 GAP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잡곡과 과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낮은 작물들이므로 동시 인증 실적도 낮게 나타남

그림 2-2.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작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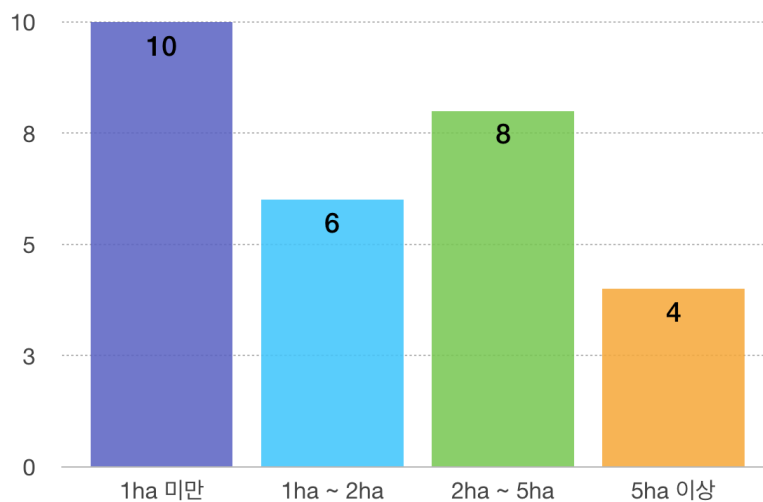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경작면적은 1ha 미만인 농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경작면적이 클수록 낮은 분포를 보임
 - 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 경작면적과 유사한 분포
1ha 미만 44%, 1~2ha 30%, 2~5ha 15%, 5ha 이상 11%
(표 3-6 참고)

- 친환경 농업인 중에 경작면적 분포가 높은 1ha 미만의 극소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사실상 경작면적과 친환경-GAP 병행인증 실천율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 여기서는 인증농가의 경작면적에 대한 기술통계(빈도분석)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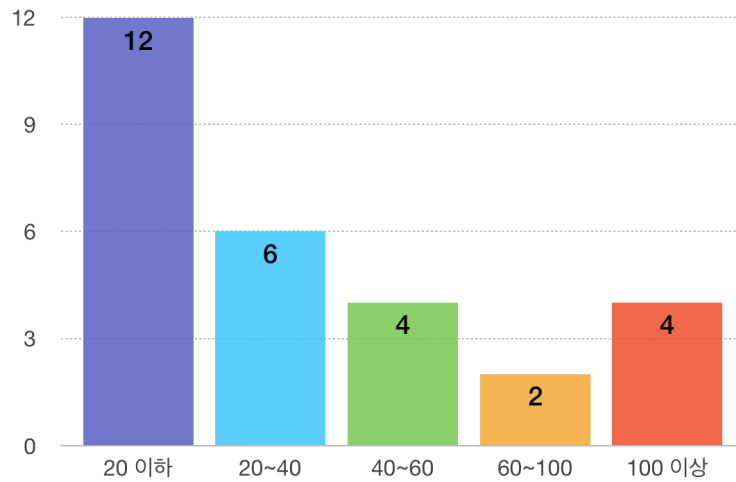
그림 2-3.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경작면적 분포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연간 농업소득) 분포는 2천만 원 이하 극소규모 농가가 12농가로서 42.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두 인증을 병행하여 받는 농가의 비중이 낮아짐

- 이는 작목반 등 단체인증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업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개별 농가보다는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GAP에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4.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농업소득 분포
(단위: 백만 원)



2.2.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 중 GAP 인증을 받은 농가들, 즉 두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들은 대규모 개인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들로 구성된 생산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인 것으로 분석됨
 - 친환경인증 받은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는 단체 구성을 통해 GAP 단체인증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 GAP 단체인증 추진 시 인증 및 심사 절차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수도작 농가가 많은 이유는 GAP 인증제 시행 초기부터 2014년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인증이 확대되면서 농업법인 등 대형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대부분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
 - 2014년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개정으로 GAP 시설 경유 의

- 무화 규정을 완화하여 농가 단위 수확 후 처리시설 이용을 허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RPC를 이용하는 단체에 소속된 농가들이 많고, 이들이 GAP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타 작목에 비해 높았다고 할 수 있음
- 연간 농업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극소농 생산자들이 많은 이유도 주로 수도작 생산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후, GAP 인증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
- 따라서, 친환경 인증농가의 GAP 인증 연계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임
 -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내부관리시스템(ICS)¹⁶⁾과 생산 관리자가 준비되어 있어 GAP 인증을 받는데 용이
 - 생산자는 단체의 생산관리(Internal Control)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GAP 기준 및 인증 조건에 따른 추가적 지침에 따르기만 하면 됨
 - 친환경 인증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는 개별 생산자보다 규모화된 생산시스템으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 마케팅 등에 유리

2.3.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 인터뷰

본 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은 생산자들을 인터뷰하여 얻어낸 구술 답변을 종합하여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인터뷰

16) Internal Control System

뷰 결과 병행인증 농가들의 답변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제3장의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를 주로 검토하고 본 항은 보조적 조사로 기술한 것임

□ 인터뷰 개요

-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가 외에 친환경-GAP 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30대 ~ 60대의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소재하는 생산자(또는 업체) 9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재배 품목은 수도작, 엽채류, 과채류, 과수류, 버섯임

표 2-9. 인터뷰 대상 농가

지역	품목	영농규모	연령대	인증종류
경기도	엽채류 (쌈채류)	0.6ha	50대	유기, GAP
경기도	엽채류 (쌈채류)	0.8ha	40대	유기, GAP
충청북도	수도작	0.6ha	60대	무농약, GAP
충청북도	과수류 (대추)	0.8ha	60대	무농약, GAP
충청남도	버섯류	0.3ha	50대	유기, GAP
경상남도	과채류 (파프리카)	0.5ha	50대	무농약, GAP, GLOBALG.A.P.
경상남도	버섯류	0.5ha	40대	무농약, GAP
경상남도	버섯류	1.2ha	60대	무농약, GAP, USAD NOP
제주도	과수류 (감귤)	2.1ha	40대	무농약, GAP

- 인터뷰는 국내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경험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 것임

□ 친환경 농가들의 GAP 인증에 대한 인식 (인터뷰 결과 요약)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에 대한 수직적 관계

인터뷰에 참여한 농가들은 주로 친환경인증을 우선 시행 후 GAP 인증을 받았으며 GAP 인증이 친환경인증보다 낮은 단계 인증이라는 인식이 있음

“친환경인증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GAP에서는 화학자재를 모두 허용하고 제초제와 GMO까지 허용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

○ GAP 표시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저하 우려

GAP 인증에 대한 홍보 시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GAP가 친환경인증 농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므로 친환경인증 농가들의 GAP 인증에 대한 반감 발생 우려

- 생산자들은 친환경농업과 GAP가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두 제도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여김
- 이는 친환경인증 농가들에게 두 제도의 목적과 실천 내용의 차이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친환경의 환경보존 기능과 GAP의 농산물 안전성 기능이 상호 보완 관계임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친환경-GAP 병행인증 시 추가 인증에 따른 비용과 생산자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나, 시장에서는 농산물의 가격에 가중치(프리미엄)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GAP 무용론에 빠져 있음
- 추가 인증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나 GAP 인증으로 인한 경제성 향상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GAP를 통하여 높일 경우 농산물의 가치 향상과 가격 프리미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생산자가 병행인증으로 인한 이중의 비용 및 이중의 행정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친환경농가의 GAP 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생산자들은 GAP 교육 시 교육 내용이 농약의 사용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때문에 GAP 인증을 받으면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GAP는 농약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 사용을 되도록 줄이는 것을 우선 실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합성농약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GAP 목적에 합치되는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시간과 비용의 중복 투입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심사 과정이 서로 비슷한데도, 인증 추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어 불편하다는 인식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에서 중복되는 부분 또는 유사한 요구사

항에 대해서는 심사, 문서제출 등을 상호 감면해 주는 방안이 필요

□ 병행인증 시 실무적 애로사항

○ 인증기관 섭외

기존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을 취급하지 않아 GAP 인증기관을 새로이 섭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됨

○ 인증비용의 증가

GAP 인증은 친환경인증을 병행하여 받을 때 심사, 분석, 인증의 과정이 반복되어 비용이 두 배로 소요됨

○ 인증심사의 횟수 증가

인증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기관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실제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에서 확인하는 심사내용은 유사함에도 각 인증에서 되풀이됨

○ 품목 등록 시스템의 불일치

GAP 인증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로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임.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이더라도 GAP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GAP 인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품목 등록 이후 인증이 가능함. GAP 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된 품목과 친환경인증정보관리시스템에 등

록된 품목과 일치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발생.

예컨대, 엄나무순은 친환경인증 품목으로 등록되었으나 GAP 인증 품목에는 등록되지 않아 GAP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¹⁷⁾

○ 포장지의 구분관리

친환경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지 못한 품목은 동일 필지에서 재배함에도 포장지를 별도 제작하여 구분 판매

⇒ 농가의 부자재 비용 증가

○ 병행 인증에 대한 혜택의 부재

병행 인증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약하고, 시장에서도 가격 프리미엄이 제공되지 않음

○ 선별시설 이용의 제한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농산물을 대부분 밭에서 포장하여 출하하는데 GAP 인증 시 선별시설이 요구됨. 농가가 자체적으로 포장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친환경농가의 인식 전환

GAP 교육 시 ‘GAP 인증=농약사용’이라는 인식이 강함. 친환경농가가 GAP 인증을 병행하여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GAP 교육을 실시해야 함

17) 본 예시는 김포시의 2016년 GAP 인증 시 실제 발생한 사례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GAP 인증 시 GAP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품목은 GAP 인증에서 제외되었음

□ 친환경농가의 GAP 인증 추가 획득을 통한 효과

○ 위생적인 친환경농산물의 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서는 위생관리 등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위생 부분은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GAP 인증을 받음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위생관리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

- 농식품부에서는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대형 마트와 급식업체(ECMD, 아워홈 등), 유통업체들과 2016년 업무협약을 맺음¹⁸⁾
- 계통출하의 경우 GAP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판매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
- GAP 활성화 홍보 활동¹⁹⁾으로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어 친환경-GAP 병행인증 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상승 및 가격프리미엄 기대

18) 자료: 농식품부 보도자료 참조(2017.04.27.)

19) 농식품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곳으로 ('15)홈플러스, 올가홀푸드, ('16)아워홈, ECMD이며, 2017년 농협, 롯데마트 등과 GAP 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하였음

□ 친환경-GAP 병행인증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희망사항

○ 판로확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

- 병행인증 농산물은 하나의 인증을 받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시장의 가격 프리미엄이 필요
- 정부의 친환경+GAP 병행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정부의 홍보 및 지원

-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한 소비자들의 소비촉진
- 친환경농가가 병행인증을 할 때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

○ 친환경+GAP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전문인력 양성

- 현재 GAP 전문 인력의(심사원, 강사 등) 경우 친환경농업 무용론 등 관행농업에 대한 인식이 편향되어 있음
- 친환경과 GAP 모두를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인증 절차의 간소화

- 친환경과 GAP 인증 절차 중 중복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절차에 대한 상호 호환성 강화
-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GAP 인증 시 친환경에 없는 기준, 예컨대 위해요소 관리, 작업자의 안전 및 복지 등에 대한 추가 심사만으로 GAP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3. 해외 유기농에서의 GAP 적용 사례

3.1. 주요국 GAP 운영 현황

□ 미국의 GAP 적용

○ 미국은 국가에서 GAP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GAP를 적용하도록 권유

- GAP(생산):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GHP(취급): Good Handling Practices

○ 미국의 GAP & GHP에 대한 지침서²⁰⁾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미생물 위해요소)

I. 정의

II. 용수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농업 용수

2.0 농산물 취급 시 사용하는 용수

III. 퇴비(가축분뇨와 유기성 폐기물)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유기성 폐기물에서 유래한 퇴비

2.0 GAP에서 가축분뇨 관리

20) 출처: US FDA(1998.10.)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https://www.ams.usda.gov/services/auditing/gap-ghp>)

IV. 작업자의 건강과 위생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작업자별 건강과 위생

2.0 교육

3.0 농장 직거래와 길거리 좌판 판매

V. 시설 위생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화장실과 손세척실

2.0 하수 처리

VI. 현장(Field) 위생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수확 시 주의사항

2.0 장비의 유지관리

VII. 포장 시설 위생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포장 시 주의사항

2.0 시설관리 주의사항

3.0 해충관리

VIII. 운송

A.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B. 잠재적 위해요소 관리

1.0 일반적인 주의사항

2.0 운송 시 주의사항

IX. 추적성

X. 결론

-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 또는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특별기준에 대한 GAP 운영
- USDA는 2015년 50주(States) 푸에르토리코 및 캐나다에 대한 GAP 감사(Audit)를 수행
 - 코넬 대학에서 1999년 CSREES-USDA와 US-FDA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GAP(National Good Agricultural Practice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GAP 교육과 교육 자료를 제작함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2012년부터 시행
 - 농산물 취급시설은 CGMP 적용시 HACCP과 동급으로 인정
CGMP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농산물 재배과정은 GAP 적용을 권고 : 의무 사항은 아
니나 USDA와 Cornell 대학이 공동으로 GAP 확대를 위
한 홍보활동
 - GAP 인증은 민간인증기관 등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용

○ 미국 사례 : 캘리포니아 Primus Labs 사의 GAP 기준 컨텐츠

(Local Farmer Basic GAP v13.04)

1. 자가 평가(Self Verification)
2. 추적성(Traceability)
3. 토양 이력(Ground History)
4. 인접한 관행지 관리(Adjacent Land)
5. 작물의 양분관리(Fertilizer/Crop Nutrition)
6. 관개/관수(Irrigation/Water Use)
7. 작물 병해충 관리(Crop Protection)
8. 작업자의 위생(Employee Hygiene)
9. 수확 관리(Harvesting Practices)

⇒ 대체로 우리나라 GAP 기준과 유사하나, 식품안전과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에 우선을 두고 있음

⇒ Primus Labs 사는 자체 GAP 기준에 따른 평가 (Assessment)만을 실시하고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음. 평가보고서를 농업인 및 농산물 유통업체(회원사)와 공유

□ 유럽연합의 GAP 적용

- 124개 국가에서 170,000명의 생산자가 4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390명의 생산자²¹⁾가 인증을 받고 있음
- 유럽연합은 GAP를 의무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 유통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유럽 소재의 대기업 소매업체 13개 기업이 공통기준을 제정 및 적용 : EURO GAP(현 글로벌갭(GLOBALG.A.P.))
 - 글로벌갭(GLOBALG.A.P.)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에도 적용
 - 글로벌갭(GLOBALG.A.P.)은 ‘식품안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표방하는 농업의 기본 준수요건으로 인식 : 아래에 주요 콘텐츠 (버전5.0)

공통기준(All Farm Base)

- AF.1. 필지의 이력과 관리
- AF.2. 자가 평가와 기록관리
- AF.3. 위생
- AF.4.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AF.5. 위탁업자
- AF.6. 폐기물과 오염 관리
- AF.7. 자연 보호
- AF.8. 컴플레인

21) 글로벌갭(GLOBALG.A.P.) 제공 자료 (2017.9)

AF.9. 회수조치

AF.10. 식품방어

AF.11. 인증 상태 표시

AF.12. 로고 사용

AF.13. 추적성과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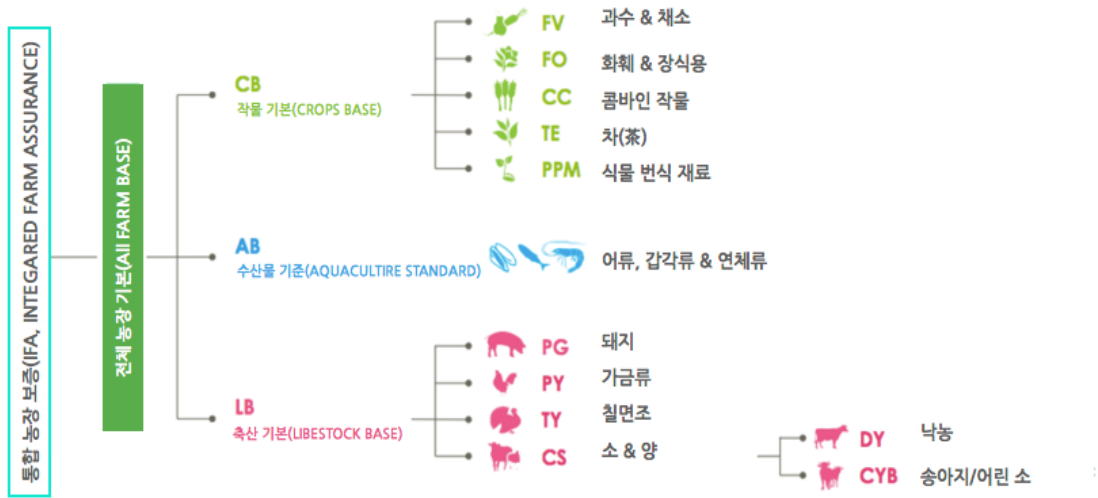
AF.14. 매스밸런스

AF.15. 식품 안전 정책

AF.16. 식품 사기 경감

- 글로벌갭(GLOBALG.A.P.) 농산물 기준은 총 218개의 기준으로 구성
 - o 식품안전(99), 환경보전(69),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28), 추적성(22)
- 글로벌갭(GLOBALG.A.P.)은 유기농업을 우대하며, 화학농약 사용을 최후수단으로 이용하도록 권고. 화학농약 사용 및 취급 시 강력한 주의를 기준으로 함
- 글로벌갭(GLOBALG.A.P.) 획득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
글로벌갭(GLOBALG.A.P.)은 필수, 준필수, 권장 3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o 필수: 필수에 해당하는 관리점(CP)은 100% 준수
 - o 준필수: 준필수 관리점(CP) 95% 준수
 - o 권장: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됨(준수비율 없음)
 단, 관리점이 업데이트 되는 경우 권장 사항이 준필수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권장에 대해서도 준수하는 방안이 필요함

그림 2-5.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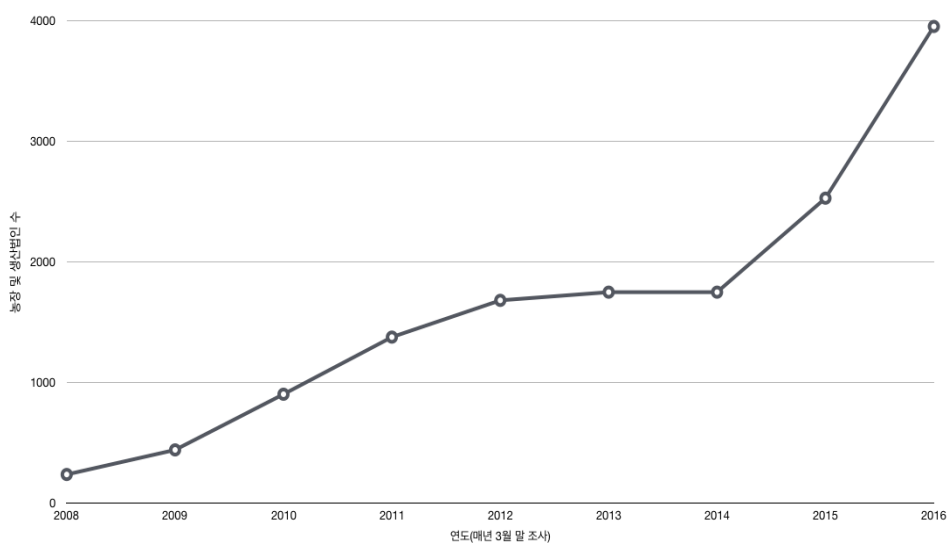


자료: 글로벌갭(GLOBALG.A.P.)(www.globalgap.org)

□ 일본의 적정농업규범(GAP)

- 2002년 유통업체와 농산물 공급자들이 농산물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GAP 기준을 운영
- 2007년 JGAP(과수 2.1버전)과 글로벌갭(GLOBALG.A.P.) 버전2와 동등성을 맺었으며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 2007년 JGAP에 대한 인증제도가 운영되었었으며 2009년 일본 정부에서 GAP 지침을 발표
 - 현재 JGAP은 일본 GAP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서에 대한 지침서 제공과 매년 4회 가량 JGAP 기술 뉴스레터를 발행
 - 2017년 JGAP 축산물에 대한 지침을 발표

그림 2-6. JGAP 인증 농장 수



자료: Asia GAP 조사 연구소(2017.01)

- JGAP 외에도 현(縣, prefecture)에서 자체 운영하는 현(縣) GAP (Prefecture GAP)기준이 있음. 일부 현(縣)에서는 제3자 인증을 실시
 - 경제단체연합회(Federation of Economic Organizations)에서는 JA Group GAP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 JGAP Basic-2016²²⁾

〈주요 관리점 및 준수기준-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

A. 기본 농장 관리

1. 농장관리 시각화
2. 최고 관리자의 책임
3. 계획과 평가
4. 재배와 수확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5. 취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6. 식품방어
7. 공급자 관리
8. 생산자 관리
9. 취급 시 컴플레인, 기준의 예외와 위반
10. 생산물의 식별과 추적성

B. 자원의 관리

11. 책임자와 교육
12. 인권, 복지, 작업자 관리
13. 작업자와 방문자의 위생관리
14. 작업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시 대응
15. 토양 관리

2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6.9.1.), JGAP 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for Farms)Basic - Fruits and Vegetables2016

16. 용수 사용과 폐수의 관리
17. 시설의 위생관리
18. 기기, 장비, 운송 수단, 수확 용기와 도구 포장지
(용기)의 관리
19. 에너지 관리와 지구온난화 예방
20. 폐기물 관리와 자원의 재활용
21. 비경작지의 관리와 지역 사회와의 조화
22. 생물다양성 보존

C. 재배과정 관리

23. 종묘(또는 번식재료)의 관리
24. 농약 관리
25. 비료 관리

D.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의 주요 관리점

E. 버섯의 주요 관리점

○ JGAP 인증 마크는 농장과 생산물에 대하여 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JGAP 마크 사용권 신청'을 해야 함

그림 2-7. JGAP 농장, 농축산물 사용 마크



자료: 일본 GAP 협회

- 2012년 일본 농림부에서 54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GAP 인증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GAP 인증품 구입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으며, GAP 인증품 구입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96.9%는 식품의 안전과 공급자의 신뢰 관리를 위함이라고 답함
- 일본은²³⁾ 다가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위하여 글로벌갭 (GLOBALG.A.P.) 인증에 대한 대응과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음. 올림픽 외에도 일본 내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 전문 농업 인력 양성이라는 분야에 있어 GAP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국제수준에 맞는 GAP를 운영하고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현장에서의 지도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GAP 인증 취득 확대를 위하여 인증체계를 강화하고 심사원의 증대, 단체 인증의 추진, GAP 기준에 따른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

23) 일본농림수산부(MAFF), 2017.08.31., GAP 확대 추진 방안

□ 중국의 양호농업규범(良好農業規範, GAP)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8년 11월 양호농업규범인증(CNCA-N-004:2007)이 시행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중국질량인증중심(CQC)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급, 2급으로 나누어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인증 범위는 작물(화훼류 포함), 가축 및 가금류, 어업, 꿀벌임
 - GAP 국가 표준
 - GB / T 20014.2 농장 기본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3 작물 기초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4 밭 작물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5 과수 및 채소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6 가축 및 가금류 기본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7 소 및 양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8 젖소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9 돼지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10 가금류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12 다(茶)류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14 수산 양식 기본 관리점 및 준수사항
 - GB / T 20014.15 양식장 관리점과 표준사육기준 준수사항

- GB / T 20014.16 양식장 관리점 및 윤리기준 준수사항
 GB / T 20014.17 수생태계 기본 관리점 및 준수사항
 GB / T 20014.18 갯벌 양식의 기본 관리점 및 준수사항
 GB / T 20014.25 화훼 및 관상 식물 관리점 및 준수사항
 담배 관리점 및 준수사항
 GB / T 20014.27 꿀벌 관리점 및 준수사항

그림 2-8. 중국 GAP 기준 구성

농장 기본	작물 기본	밭 작물	
		과수, 채소	
		다(茶)류	
		화훼, 관상 식물	
		담배	
	축산 기본	돼지	
		가금류	
		소, 양	젖소
	수산 양식 기본	실내 양식 기초	
		그물 양식 기초	
		가두리 양식 기초	
		갯벌 양식 등 기초	
		연못 양식 기초	
	꿀 벌		

자료: 良好农业规范认证实施规则, 编号: CNCA-N-004:2014

- 중국 GAP 인증의 점수는 1등급~3등급 3가지로 나눔. 1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등급~2등급 기준을 95% 준수해야 하며, 2급의 경우 1등급 기준만 95% 준수하면 됨. 3등급 기준의 경우는 국내의 권장 수

준으로 필수사항은 아님

- 중국은 2005년~2006년 FOODPLUS와 업무 협력을 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2월 24일 글로벌갭(GLOBALG.A.P.)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중국의 1급 GAP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획득

그림 2-9. 중국 GAP 인증 마크



자료: 글로벌갭(GLOBALG.A.P.)

- 중국²⁴⁾에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시에 타 국가보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 과도한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쳤으며 GAP 인증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음. 중국에서는 과도한 화학물질 사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유기농 비료(organic fertilizer) 사용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중국 정부는 농축산물에 사용하는 불법 약물/화학물질, 과다사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농산물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24) USDA(2017.01.15.), Gain Report: China Agricultural Situation

- 2017년 중국은 GAP 확대를 위하여 주요 농업 지역에서 GAP 인증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광둥성 공단에서는 공공 정보 서비스(“Three With“ Platform²⁵⁾)를 출범시킴. 농산물 생산에서 취급 전 과정에서의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GAP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²⁶⁾

□ 기타 아시아 국가의 GAP

- 대만(TGAP), 인도네시아(IndoGAP), 태국(ThaiGAP), 필리핀, 파키스탄, 피지 공화국, 몽고, 스리랑카, 베트남 등 전반적으로 GAP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대만(TGAP)²⁷⁾

- 안전한 식품 공급과 투명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추적성을 요구하고 있음. COA(농업협의회, Council Of Agriculture)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대만의 농업 및 식품 추적성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내외의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 추적 시스템 확보의 일환으로 TGAP과 유기농업 등 인증시스템을 적극 활용

25) 광둥성 검역 1단계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공

26) CNCA(2017.12.08.), <http://www.cnca.gov.cn/>

27) Council of Agriculture Executive Yuan R.O.C.

○ 인도네시아(IndoGAP)²⁸⁾

- 식품 법 NO 7/1996, 식품의 안전, 품질 및 영양에 관한 정부 규정 NO28/2004, NO 69/1999에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음. 때문에 농장에서부터 위생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으로 GAP를 도입
- 인도네시아는 GA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GAP관련 학교 설립, 홍보, 세미나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판매업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GAP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
- GAP 인증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지역의 식품 안전 관련 기관을 설립
- 현재까지는 GAP 농가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크지는 않으며, 시장에서 GAP 인증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GAP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음.
수출 농산물의 확대와 자국 내 식품안전을 위하여 GAP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태국(ThaiGAP)²⁹⁾

-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안전, 환경, 작업자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태국에서는 생산자들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을 통한 세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GAP 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또한, 태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시장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

28) Me.Tikno Budimuljono Widyatmadja 외(2017.04), Development of Good Agriculture Practices((NDOG.A.P) in Indonesia

29) Dr.PathomTaenkam(2016.12.07.),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aiGAP in Thailand

과 생산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

- 유통업체들 식품의 안전과 농업의 생물적 다양성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법의 위반 시 발생하는 위험(Risk)과 비용을 GAP 인증을 통하여 사전에 줄이고자 함
- 태국 농업 생산을 위한 품질시스템과 기준이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규모 생산자들을 교육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전체 농가들의 생산 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함

○ ASEAN 경제 커뮤니티

- ASEAN 국가들의 주요 무역과 잠재적인 무역을 위하여 GAP, GHP³⁰⁾, GMP 등 농업과 식품에 대한 ASEAN 경제 커뮤니티를 2012년에 설립
- 각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여 워킹 그룹을 운영. 워킹 그룹에서는 소속 국가의 GAP 프로그램과 글로벌갭(GLOBALG.A.P.)에 대한 검토 실시
- 또한, 각 분야별 GAP 가이드북을 만들어 GAP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ASEAN 지역에서 GAP를 운영하는 국가
 - 태국: Thailand Q GAP
 - 필리핀: Philippines GAP
 - 말레이시아: Malaysia SALM
 - 인도네시아: Indonesia GAP
 - 싱가포르: Singapore GAP-VF

○ 각국의 GAP 체도를 운영하면서도 글로벌갭(GLOBALG.A.P.)과의 동등성 추진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음

⇒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생산자의 계도와 권고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아시아생산성기구(APC,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GAP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매뉴얼을 2016년도에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30) GHP: Good Hygiene Practices

○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GAP 매뉴얼 콘텐츠³¹⁾

MODULE 1: GAP와 GAP 매뉴얼 소개

MODULE 2: 원예 생산 시스템에서의 GAP 발전

MODULE 3: 생산지 관리

3.1. 생산지 이력과 관리

3.2. 농장 기술자와 내부 심사(Inspection)

3.3. 기록 관리와 모니터링, 농장 관리 도구

3.4. 추적성

3.5. 리콜과 회수조치

3.6. 컴플레인 관리

MODULE 4: 식품 안전

4.1. 국제식품안전규격(IFS, International Food Safety standards)

4.2.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4.3. 생산자, 작업자 건강에 대한 GAP 적용

4.4. 생산지와 토양관리에 대한 GAP 안전성

4.5. 작물보호제(PPP, Plant Protection Products)

4.6. 비료

4.7. 관개/관비

MODULE 5: 환경 보존

5.1.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5.2. GAP 환경과 자원

5.3. 해충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5.4. 작물종합관리(ICM, Integrated Crop Management)

MODULE 6: 작업자의 건강, 안전과 복지

31) 자료: APO(2016), GAP 매뉴얼

6.1.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6.2. 작업자의 위생

6.3. 작업자의 복지

MODULE 7: 품질관리매뉴얼(QMS, Quality Management Systems)

7.1. 소속농가에 대한 QMS 개발

7.2. 내부 감사(Audit)

7.3. 교육과 농업 기술에 대한 조언

7.4. 추적성

7.5. 리콜과 회수조치

7.6. 컴플레인 관리

- 국내에서는 1961년 APO에 가입³²⁾하였으며, 주로 지식경영, 중소기업 강화 프로그램 등에 경제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활동은 저조한 실정임
- 국내에서도 GAP와 관련한 적극적인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GAP 관련 도구 개발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32)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음(<http://www.kpc.or.kr/>)

표 2-10. 주요국 GAP 비교

구분	한국	글로벌겝 (GLOBALG.A.P.)	미국	일본	중국
인증명	농산물우수 관리(GAP)	글로벌겝 (GLOBALG.A.P.)	규범	JGAP	1급/2급 GAP
시행연도	2006년	1997년	2002년	2006년	2008년
인증유효 기간	2년	1년	1년	2년	1년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
인정기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인정기구	주정부	JGAP 협회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 (CNCA)
인증 범위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농산물, 화훼류, 축산물, 수산물, 유통, 사료	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3.2. 국내 GAP와 글로벌갭(GLOBALG.A.P.) 비교

□ 인증 절차

○ 글로벌갭(GLOBALG.A.P.) 규정 구성

- 글로벌갭(GLOBALG.A.P.)은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다루는 일반규정 I, II 와 품목별 세부규정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음
- 품질관리매뉴얼을 운영하는 경우(단체 또는 한 생산자가 농장이 여러 곳인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규정집으로 제작하여 운영
- 국내 GAP 기준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품질관리매뉴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수요건 및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음

표 2-11. 글로벌갭(GLOBALG.A.P.) 규정 구성

구분	내용
일반규정I (GENERAL REGUATIONS PARTI - GENERAL RULES)	인증에 대한 일반규칙 ⇒ 문서관리, 등록절차, 인증 절차 등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음
일반규정II (GENERAL REGUATIONS PARTII - RULES FOR OPTION 2 AND OPTION 1 MULTISITES WITH QMS)	품질관리매뉴얼(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필수요건 ⇒ 단체의 구조, 조직관리, 문서관리, 내부 심사 등 단체 또는 품질관리매뉴얼을 운영하는 생산자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세부규정 (CPCC)	각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 ⇒ 품질관리매뉴얼(QMS)에 대한 체크리스트 ⇒ 공통기준 체크리스트 ⇒ 품목별 체크리스트

자료: 글로벌갭(GLOBALG.A.P.)

○ 서류검토

GAP의 경우 서류심사 시 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외에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에서 서류검토를 실시함. 글로벌갭(GLOBALG.A.P.)의 경우 인증신청서만 제출하므로 서류검토가 간단함. 단,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품질관리매뉴얼 등 현장에서 검토하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 할 수 있음

○ GGN(GLOBALG.A.P. Number)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심사 이전에 등록시스템에 농가 정보를 등록하고 인증번호 대신 글로벌갭(GLOBALG.A.P.) 고유번호(GGN, GLOBALG.A.P. Number) 발급을 받음. GAP의 경우 최종 인증 적격 후 인증번호가 발행 됨

○ 현장평가

현장평가의 경우 GAP와 글로벌갭(GLOBALG.A.P.) 두 인증이 유사하게 진행됨. 친환경의 경우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이 불가능한 반면 GAP는 기준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취득점수의 합계³³⁾가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 적합임. 글로벌갭(GLOBALG.A.P.)은 부적합사항(Non-Compliance)³⁴⁾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 내 해당 기준을 해소하면 적합

- GAP

제2절 인증심사³⁵⁾

제6조의2(심사결과보고)①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 글로벌갭(GLOBALG.A.P.)

6.3. 인증결정³⁶⁾

- a) 인증기관은 모든 부적합 사항이 해소된 후 최대 28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3) 취득 점수는 필수와 권장의 합계. 점수는 3점 양호, 2점 보통, 1점 미흡, 0 미이행

34) 체크리스트의 관리점(CP, Control Point)을 준수기준(CC, Compliance Criteria)에 따라 지키지 않았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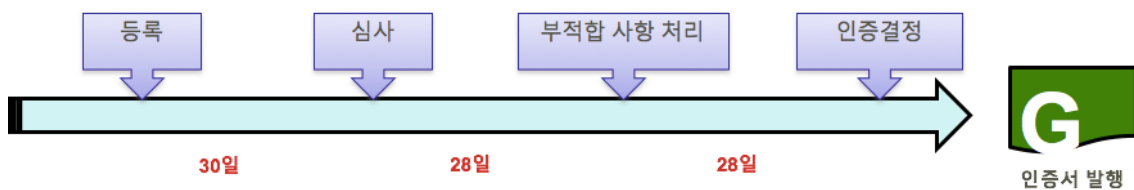
35) 고시 제2016-56호

36) GENERAL REGULATIONS PART I-GENERAL RULES

○ 분석

GAP에서는 최초 인증신청 시 토양, 용수, 농산물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함.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세부 기준에서 검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직접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함

그림 2-10.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절차



자료: 글로벌갭(GLOBALG.A.P.)Integrated Farm Assurance Version5.0-2

□ 주요 사항

○ 위험평가(Risk Assessment)³⁷⁾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1)식품안전, 2)작업자의 안전·복지·건강, 3)환경 보존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위험평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도록 함
- 국내 GAP의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함. 현재

37)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인에 대하여 농가단위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매년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미생물, 잔류농약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GAP에서는 HACCP에서 요구되는 위해요소관리(CCP)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현장 적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제3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GAP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31%)을 차지한 것이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작성’임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위험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며 평가 양식을 제공하지는 않음. 전문가를 통하여 위험평가에 대하여 지도받는 것을 권장함
- 위험평가에 따라 해당하지 않은 기준은 분석 및 적용이 제외되므로 유기농인증을 받은 경우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농가들에 비하여 유리함

○ 해충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 IPM은 종합적인 해충 통제 기술을 사용하여 해충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농약사용을 통하여 적절한 경제적 방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임
- GAP에서는 IPM과 유사한 내용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 6-1-6.에서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한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권장사항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에서 IPM은 필수 준수사항으로 지역

적 환경(기후, 지형), 생물학적(해충단지, 천적단지 등),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함. 기본적으로 IPM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 예방
 - 관찰 및 모니터링
 - 개입
- 글로벌갭(GLOBALG.A.P.)에서 IPM을 통하여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것이 아닌 예방-관찰-개입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이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인증을 받은 경우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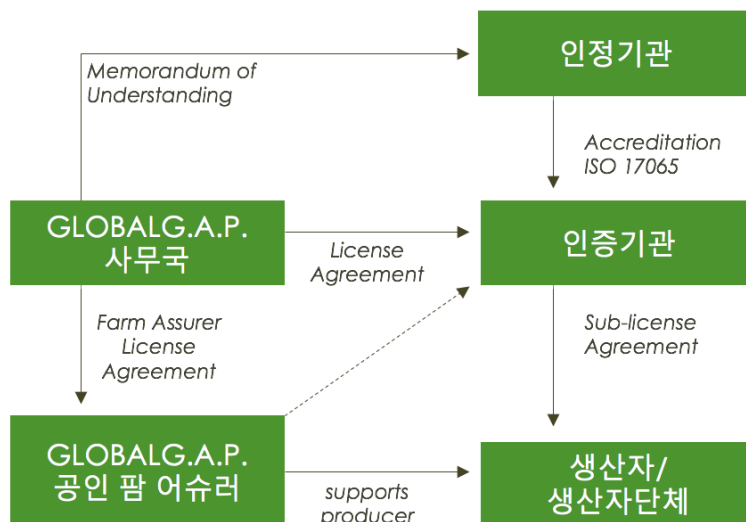
○ 전문 GAP지도사(Farm Assurers)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생산자를 위한 전문 GAP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음. 글로벌갭(GLOBALG.A.P.)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및 시험을 수료하게 되면 공식 전문 GAP지도사인 팜어슈러 자격을 부여함³⁸⁾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인증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산자가 직접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와 결합되어 인증을 받도록 함
- 특히 농약, 비료, 환경, 안전, IPM에 대해서는 전문적 교육과정

38) 글로벌갭(GLOBALG.A.P.) 공인 팜어슈러는 2013년부터 운영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72명의 팜어슈러가 있으며 국내에 공인받은 팜어슈러는 3명임

-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농약, 비료 등을 선택할 때는 전문 기술 지도사의 자문을 받도록 함
- 팜어슈어의 경우 높은 자격 수준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국내의 경우 농가 스스로가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시스템이 없음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전문 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아래 <그림 2-11> 글로벌갭(GLOBALG.A.P.) 운영 체계에서 'GLOBALG.A.P. 공인 팜어슈어'를 글로벌갭(GLOBALG.A.P.) 전문 인력으로 보고 인증기관과 생산자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 국내에도 각 농장의 특성에 따라 인증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Pool)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그림 2-11. 글로벌갭(GLOBALG.A.P.) 운영 체계



자료: 글로벌갭(GLOBALG.A.P.) Farm Assurers 교육 자료(Section 1 v170322)

- GAP의 경우 201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GAP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GAP 안전성 사업을 통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농가를 지도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교육 위주의 컨설팅에 그치는 문제점 발생
- 친환경과 GAP 인증을 같이 받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갭(GLOBALG.A.P.)에서 팜어슈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친환경-GAP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

표 2-12. 친환경인증, GAP, 글로벌갭(GLOBALG.A.P.) 관리 시스템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글로벌갭(GLOBALG.A.P.)
특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태계의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강조 - 인증품 생산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강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농산물 우수관리팀, 품목설명서 작성, 재배흐름도,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현장에서 해충종합관리(IPM), 위험평가(Risk Assessment), 환경보전, 추적성, 작업자 복리후생 등에 대해 강조함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사료, 양봉, 취급자,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 (1차 생산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화훼, 수산물 - (1차 생산물 대상)
인증마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품목에 대해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품목에 대해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제품에 인증마크 사용할 수 없음
인증기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7065(인증기관 국제기준) 인정. - 글로벌갭(GLOBALG.A.P.)과 MOU 맺은 인정기관(AB) 으로부터 인정
심사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교육 수료, 심사원 자격 테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경력, 교육 수료, 심사원 자격 테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경력, 트레이닝 수료, 심사원 자격 테스트 등
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농, 축, 식품 등의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농업인, 취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농업인, 축산업인, 양식생산자, 취급자
추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에 대한 생산 및 출하 정보를 통하여 추적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에 대한 생산 및 출하 정보를 통하여 추적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에 대한 생산 및 출하 정보를 통하여 추적성 확보 - 저장, 운송, 재포장, 세척,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유통인증(CoC)

3.3. 유기농 생산자의 GAP 적용 사례

3.3.1. USDA NOP 동시인증 사례는 희박

○ 조사 방법: NOP 인증사업자 리스트에 있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GAP 인증에 대한 홍보 현황을 조사

(organic.ams.usda.gov/Integrity/)

- USDA는 유기인증 받은 생산자의 목록을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음³⁹⁾
- 본 조사는 검색되는 생산자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여 GAP가 홍보되고 있는지를 검색한 것임
 - ⇒ 따라서 GAP를 홍보하지 않는 경우에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홍보하지 않는 GAP 생산자에게 GAP 인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검색조건: 생산 국가별, 품목별 정렬
- 생산 국가(검색건수): 미국(259), 독일(11), 영국(0), 프랑스(7), 스페인(0), 스위스(0), 일본(0), 캐나다(0), 페루(727)
 - ※ 검색 건이 “0”인 국가들은 미국과 유기농인증 상호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NOP 사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검색 대상 사업자: NOP 인증을 받은 사업자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일본, 캐나다, 페루에 소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 가공, 축산 분야는 제외하고 농산물 생산자만 검색

○ 검색한 1,004건의 NOP 사례 중 글로벌갭(GLOBALG.A.P.) 등 GAP 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하는 경우는 2곳이 검색되었음. 해외의 경우 한국과 달리 GAP 또는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는 것을 홍보

3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과 유사한 검색 프로그램인데, 농관원의 시스템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반면 미국 농무부의 시스템은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페이지 등에 홍보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미국유기농(USDA NOP) 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홍보하는 경우는 희박함

- 해외 대부분의 GAP 제도에서는 상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도록 함. 이는 GAP를 소비자대상(B to C)이 아닌 기업대상(B to B) 인증으로 규정하기 때문. 즉 기업 간의 거래(매출 또는 매입)에서 협력사(공급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소비자에게 GAP 인증 여부를 홍보할 수 없음
- 농산물에 GAP 인증표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태국과 필리핀이 있음. 그밖에 대부분의 GAP에서는 인증표시를 허용하지 않음

⇒ GAP 인증을 홍보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USDA NOP 관련 사례를 검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유기농인증 사업자 중에 GAP 인증을 받고 이를 홍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GAP 인증이 사업자 간의 거래(B to B)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2-13. 유기농-GAP 병행인증 사례 (1,004건의 생산자 정보 확인 결과에 한함)

소재 국가	사업자명	인증기관	인증작물	필지면적	보유인증
미국	PPC Farms LLC	Kiwa BCS Oko Garante GmbH	알로에, 비트 등	2,500acre	1) USDA NOP 2)글로벌갭 (GLOBALG.A.P.) 3) Primus GFS
페루	Inka Fresh S.A.C.	Kiwa BCS Oko Garante GmbH	아마란스 등	-	1) USDA NOP 2)글로벌갭 (GLOBALG.A.P.) 3) EU Organic 4) Biosuisse

출처: organic.ams.usda.gov/Integrity

3.3.2. Dole사의 유기농과 GAP 병행 추진

- Dole은 세계 최대의 유기농 과일 생산자이면서 농산물 유통업체로서 주로 품목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 Dole은 포장된 과일 및 냉동 과일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양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생산 업계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으로 유기농업과 GAP에 대한 선도적 역할
 - Dole 산하의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기구(Corporate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의 Sylvain Cuperlier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포럼을 도입하고 살충제 사용,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및 수자원과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
- Dole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GAP는 Dole의 친환경적인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임

“Dole은 자체적인 환경 정책에 따라 GAP를 실천해 왔다. GAP는 작물보호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GAP는 농업 과정에서 ICM과 IPM을 적용함에 따라 작물보호제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GAP는 적절한 수준으로 병해충을 통제함으로써 수확을 최대화하고 생산자, 인근의 주민, 소비자,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Dole이 수행하는 연구 분야의 목적은 생산기술을 발전시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기술을 찾아내는 것이다. GAP는 Dole 소속의 생산자들과 공유되어 농업 분야에서 최적의 생산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Dole의 환경정책〉 중 GAP 소개문⁴⁰⁾

40) In support of its environmental policy, Dole has implemented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 guidelines for conserving the environment through limited use of crop protection products. GAP ensures that the scope of Dole's agricultural practices

○ Dole사의 인증 현황

- Dole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전 생산지에 대하여 다음 인증을 모두 받도록 하고 있음

- USDA NOP, EC 834/2007, JAS⁴¹⁾

Dole사는 세계 최대의 유기농산물 생산 회사로서, 각지에 유기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유기농 과일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 농무부의 유기농인증, 유럽연합 정부의 유기농인증, 일본 정부의 유기농인증을 받았음.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페루의 농장은 유기농 바나나 농장이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농장은 유기농 파인애플 농장임

- 글로벌갭(GLOBALG.A.P.)

국제적 시장에서 통용되는 GAP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ISO 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⁴²⁾에서 정한 국제환경경영기준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친환경적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 Dole사는 농업 분야에서 ISO 14001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업체임

- SA 8000

SA는 사회적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Social Accountability의 앞글자임. 사회적 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⁴³⁾의 노동자 인권, 국제연합(UN)의 인권 및 아동복지 규정을 반영한 기준으로서, 아동노동 금지, 강제 노동 금지, 노동자 건강과 안전, 노동자 연대의 자유, 차별 금지, 교육의 기회 제공, 노동 시간, 적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is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Crop Management (ICM) and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in order to apply crop protection products on an “as necessary” basis. GAP also confirms that the desired degree of pest and disease control is implemented for maximum crop yields and minimum hazards to operators, nearby individuals,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

One of the goals of Dole’s research department is to discover sustainable, environmentally-friendly, healthy and safe technologies that may improve production methods. GAP programs are shared with Dole’s independent growers to further all best practices in the industry.

41)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42)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4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Rainforest Alliance
생물다양성과 토착민의 터전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으로, 유럽과 미국의 유통업체들 중에 ISO 14000 인증보다 이 인증을 선호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인증을 받게 되었음
 - Fairtrade
공정무역 인증은 농업인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인증으로 1997년 설립된 공정무역표시기구(FLO. 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에 의하여 인증기준이 마련됨
- Dole사의 창립 정신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 생산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농인증뿐만 아니라 글로벌갭(GLOBALG.A.P.) 등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련된 인증을 동시에 획득
- 유기농과 GAP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인증으로 여기고 있음
 - Dole사는 품질관리 방침으로서 자사의 전 세계 농장에 GLOBAL G.A.P. 인증을 기본적으로 적용
⇒ 유기인증 등은 유통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
- USDA NOP, EC834/2007, 글로벌갭(GLOBALG.A.P.) 등 8종의 다양한 인증서는 하나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한 번의 심사로 처리되어 인증비용과 관리비용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인증기관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본사가 네덜란드에 소재)
- 유기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의 관리 매뉴얼(품질관리절차서 등) 및 기록물은 인증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 : Dole Quality Procedure가 전 세계의 농장에 공통으로 적용됨
- Walmart, WholeFood 등 주요 바이어가 유기인증(NOP 등), 식품안전인증(GAP), 환경보호인증(Rainforest Alliance)을 동시에 요구함에 따라 각 주제별로 담당자를 지정

⇒ 동일한 농장에 적용

- 유기농으로서 토양·생태환경 관리 담당자와 위생·안전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관리는 사무국에서 실시, 영농작업은 지역 농업인 고용)

3.3.3. 유럽 농산물 시장에서의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⁴⁴⁾

- 유럽 도소매 유통업자들은 주로 신선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특히 먼 나라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에 관심이 높음
 -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유기농산물의 경우라면 잔류농약을 문제시 하지 않음
-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은 글로벌갭(GLOBALG.A.P.) 기준이 소농들이 실천하기에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농산물 매입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
 - 네덜란드, 영국,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소매업체들은 글로벌갭(GLOBALG.A.P.)이 농산물의 매입 정책으로서, 기본적 실천 기준이 됨
 - 영국의 슈퍼마켓(소매업체)인 Sainsbury 사는 글로벌갭(GLOBALG.A.P.)을 기본적 매입 정책으로 하면서도, 충분한 인증농가를 찾기 어려우면 자체적으로 농가를 심사하는 체계를 갖추었음
 - 유통업체와 생산자의 거래관계가 빈번하고 신뢰할 만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음
 -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의 유통 업체들은 글로벌갭(GLOBALG.A.P.)을 농가 자율에 맡김
 - 유럽의 소매업체들 중에는 생산자에게 유기농 인증서가 있는 경우 글로벌갭(GLOBALG.A.P.)을 면제하는 경우와, 유기농 인증

44) UN 무역개발회의, 2009. “글로벌갭과 유럽연합 유기농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에 기술된 유기농과 GLOBALG.A.P.에 대한 도소매업자 인터뷰 결과를 본 절에 재인용 및 요약함

서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서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뉨

- 소매업체 중에는 유기농 인증서가 있으면 이미 글로벌갭(GLOBALG.A.P.)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글로벌갭(GLOBALG.A.P.) 기준이 과도하고 성가신 요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영국 Sainsbury사의 농산물 매입 정책 사례

“세인스베리사가 취급하는 모든 농산물은 GLOBALG.A.P. 기준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이다.

GLOBALG.A.P.은 GAP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시행하는 세계적인 인증이다. 주요 목적은 소비자들이 농장 생산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고, 작업자 후생과 동물복지를 실천하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약천후로 기존 생산자의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같이, GLOBAL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3자 심사 또는 세인스베리 자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It is a Sainsbury's requirement that all of our fresh produce is sourced from suppliers who are certified to GLOBALG.A.P. standards.

GLOBALG.A.P. is a private sector body that sets voluntary standards for the cert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world wide by use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The main aim of the GLOBALG.A.P. standard is to reassure consumers about the quality of food production at farm level by minimizing detrimental environmental impacts, reducing the use of chemicals and ensuring a responsible approach to worker and animal welfare.

There are some instances where our producers are unable to obtain certification to the GLOBALG.A.P. standard. For example, when we source produce from additional suppliers due to adverse weather conditions at our regular sources. In this case, an audit will be carried out by a third party body, or by a representative of Sainsbury to ensure our standards are not compromised.”

- 유럽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형 소매업체(마트류)들이고 소형 소매업체나 도매업체는 글로벌갭(GLOBALG.A.P.)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
 - 도매업체 중에는 소농 단체들을 직접 관리하여,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서가 없이도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를 인증서에 대체 활용하여 소매업체에 공급하기도 함

- 유기인증과 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생산자의 수는 유통업체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인증기관의 실적이 불일치
 - ※ 관련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유통업체 중에는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받은 60개 생산자 단체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관련 인증기관에 추적 확인하였을 때 훨씬 낮은 동시인증 실적을 보였음
 - 유통업체가 홍보하는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실적이 낮을 것이라고 추정됨

3.3.4. Kadoka 파인애플 생산자단체 사례

- EU 유기농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동시 인증 생산자
 - 생산지: 우간다 및 탄자니아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
 - 품목: 파인애플은 유럽으로 항공 운송
파인애플 가공품은 선박 운송
 - 생산자수: 134농가 (농가당 2~10 acre)
 - 생산량: 1,000톤/연간

-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식물추출물과 목재를 소각한 재를 활용하여 재배
 - 양분 공급은 초생재배로 질소고정 및 초생재배 작물은 수확하여 판매하기도 함
 - 고랑에는 우분과 계분을 소량 사용

- 그밖에 EU 유기농 허용물질 목록에 있는 자재를 사용
-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식 재배(Contour planting) 방법 사용
 - 글로벌갭(GLOBALG.A.P.) 기준에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재배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함
- 생산지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며, 1시간 이동하여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는 마을에 생산관리자의 사무실이 있음(가공시설은 1시간 더 이동하여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에서 실시)
 - 생산관리자는 상근자로서 모든 생산자의 기준이 유럽연합 유기 기준과 글로벌갭(GLOBALG.A.P.) 기준에 적합한지를 관리
 - 인증기관은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심사를 동시에 실시, 생산관리자의 활동 내용과 내부관리시스템(ICS)⁴⁵⁾의 운용에 대해 심사. 생산자는 표본만 심사함
- Kadoka 생산자단체는 유기농 생산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유럽의 소매업체들이 유기농 인증서와는 별도로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요구하여 유기농과 GAP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음
 -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모두 생산자단체를 인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둘의 심사 방법은 매우 유사함
 - 유럽연합 유기농에서는 독립된 생산관리자가 모든 농가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부관리시스템(ICS)를 요구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독립된 내부심사원(Internal Inspector)이 모든 농가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품질관리시스템(QMS)⁴⁶⁾를 요구

45) Internal Control System

46) Quality Management System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1.1. 조사의 목적

-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의 GAP 인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국내 친환경 인증기준 및 절차 개선 방향 설정에 참고
-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추가로 받으려 할 때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파악
- 친환경인증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 및 비교 분석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도출

1.2. 조사 방법

○ 친환경 농업인 설문조사

- 대상: 전국의 친환경인증 농업인 607인
- 품목: 수도작, 엽채류, 과채류, 과수 등 전 품목
- 조사기간: 2017년 9월 ~ 10월
- 조사방법: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설문지 인쇄본을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및 회수*

*당초 온라인 설문 및 전화조사로 설계되었으나, 온라인 배포처와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로 조사 방법을 변경한 것임

○ 설문조사 내용

- 친환경인증농가의 GAP 인증 추가 획득의 필요성: 소득에 대한 기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기대 등
- 친환경인증농가의 GAP에 대한 인식: 기준에 대한 이해, 식품안전 관련성 등
- 친환경인증농가가 GAP 인증을 추가 획득할 때에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부담사항, 선호 인증기관, 실무적 개선사항 등
- 설문지 양식 : 부록3 참조

2. 응답자 통계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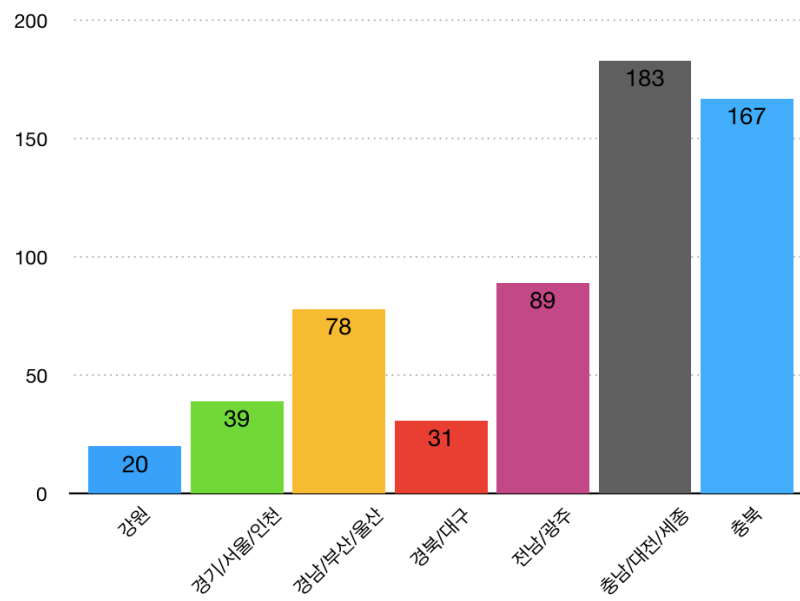
2.1. 거주 지역

- 설문지에 응답한 농가 중 ‘충남/대전/세종’에 거주하는 농가가 약 30.1%, ‘충북’에 거주하는 농가가 27.5%, ‘전남/광주’가 14.7%, ‘경남/부산/울산’이 12.9% 순으로 많음
- 응답자 분포가 충남, 대전, 세종, 충북 지역에 다소 편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지역 조사 시에 친환경농업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다수 농업인에게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가 용이한 조건이었기 때문

표 3-1. 거주 지역

구 분	응답 수	비율(%)
강원	20	3.3
경기/서울/인천	39	6.4
경남/부산/울산	78	12.9
경북/대구	31	5.1
전남/광주	89	14.7
제주	0	0.0
충남/대전/세종	183	30.1
충북	167	27.5
합계	607	100.0

그림 3-1. 거주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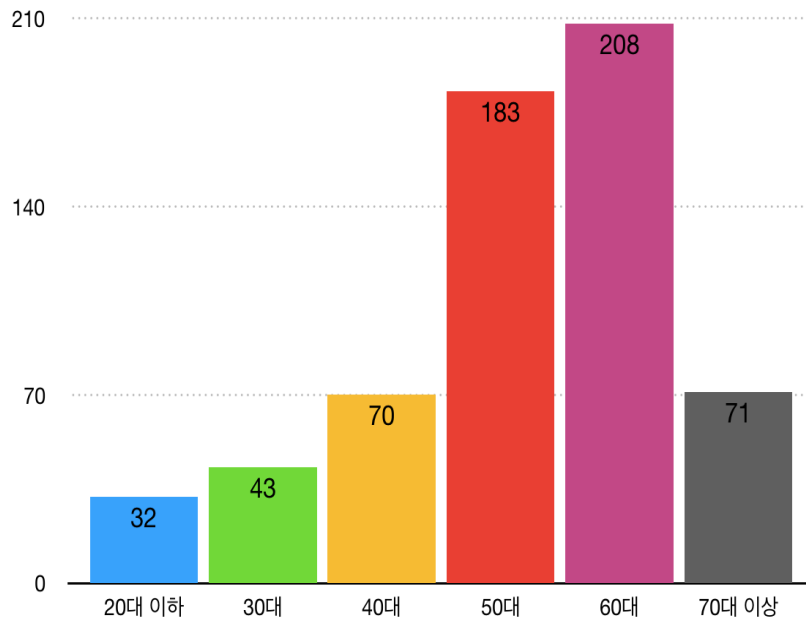
2.2. 연령

- 연령은 60대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약 30.1%, 70대 이상이 11.8% 순으로 차지함

표 3-2. 연령

구분	응답 수	비율(%)
20대 이하	32	5.2
30대	43	7.1
40대	70	11.5
50대	183	30.1
60대	208	34.3
70대 이상	71	11.8
합계	607	100.0

그림 3-2.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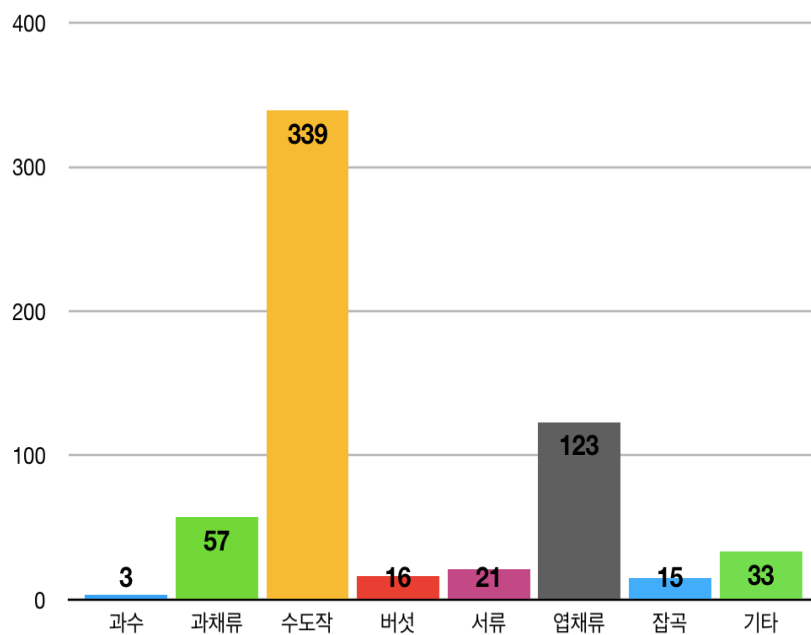
2.3. 대표 작목

-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작물로 ‘수도작’이 약 55.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엽채류’가 20.3%를 차지함

표 3-3. 대표 작목

구 분	응답 수	비율(%)
과수	3	0.5
과채류	57	9.4
수도작	339	55.8
버섯	16	2.6
서류	21	3.5
엽채류	123	20.3
잡곡	15	2.5
기타	33	5.4
합계	607	100.0

그림 3-3. 대표 작목 분포



2.4. 인증 종류

- 응답자들의 인증 종류는 무농약만 인증 받은 경우(59.5%), 유기만 인증 받은 경우(34.4%)로 한 가지 종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93.9%)이었고,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6.1%에 불과함
- 응답자들은 모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로서, 응답자 중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28명으로 4.6%에 해당됨

표 3-4. 인증 종류

구 분	응답 수	비율(%)
유기	209	34.4
무농약	361	59.5
유기+무농약	7	1.1
유기+GAP	9	1.5
무농약+GAP	18	3.0
유기+무농약+GAP	1	0.2
기타	2	0.3
합계	607	100.0

2.5. 생산지 유형

- 576개의 응답 중 재배 방식에 따른 비중은 ‘노지’가 68.4%, ‘시설’이 31.6%를 차지함

표 3-5. 재배 방식

구 분	응답 수	비율(%)
노지	394	68.4
시설	182	31.6
합계	576	100.0

2.6. 농사 규모

- 농사 규모는 '1ha 미만'이 약 44%로 가장 많았으며, '1ha 이상 ~ 2ha 미만'이 30%, '2ha 이상 ~ 5ha 미만'이 15%, '5ha 이상' 11% 순으로 차지함

표 3-6. 농사 규모

구 분	응답 수	비율(%)
1ha 미만	260	44
1ha 이상 2ha 이상	173	30
2ha 이상 5ha 미만	87	15
5ha 이상	66	11
합계	586	100

2.7. 연간 농사 소득

- 농가 소득이 '2,000만원 미만'에 응답한 농가가 약 37%로 가장 많았으며, '2,000~4,000만원'이 30%, '4,000~6,000만원'이 16%를 차지함
- 농가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친환경인증 농가가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계청⁴⁷⁾에 따르면 2016년 농가 연 소득 평균은 3,719만원이며 농가 순 소득 평균은 2,531만원임. 경지 면적이 0.5~1.0ha인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3,353만원(순 소득 평균 2,261만원)이며 1.0~1.5ha인 농가들의 평균 소득은 3,545만원(순 소득 평균 2,378만원)임

표 3-7. 연간 농가 소득

구 분	응답 수	비율(%)
2,000만원 미만	215	37
2,000 ~ 4,000만원	178	30
4,000 ~ 6,000만원	93	16
6,000만원 ~ 1억원	56	10
1억원 이상	44	7
합계	586	100

2.8. 농사 경력

- 농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농가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5년~ 10년 미만'이 약 20%, '3년 미만'인 농가가 8%, '3년~5년 미만'인 농가가 7% 순으로 차지함

표 3-8. 농사 경력

구 분	응답 수	비율(%)
3년 미만	52	8
3년 ~ 5년 미만	45	7
5년 ~ 10년 미만	113	20
10년 이상	397	65
합계	607	100

47)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 통계청, 농가경제조사(2016)

3. 친환경 농업인의 GAP 인식

3.1. GAP 추가인증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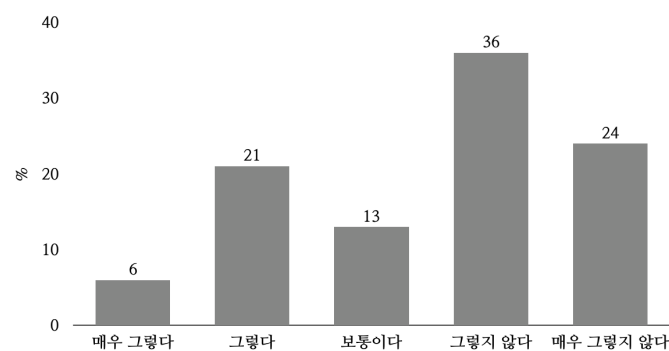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 귀하께서는 추가로 GAP 인증이 필요하십니까?”

-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36%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24%, ‘그렇다’ 21%, ‘보통이다’ 약 13%, ‘매우 그렇다’에 약 6%로 응답함

표 3-9. 친환경 농업인의 GAP 인증 필요성 인식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매우 그렇다	37	6	5
그렇다	118	21	3
보통이다	76	13	4
그렇지 않다	205	36	1
매우 그렇지 않다	136	24	2
합계	572	100	

그림 3-4. 친환경 농업인의 GAP 인증 필요성 인식



3.2.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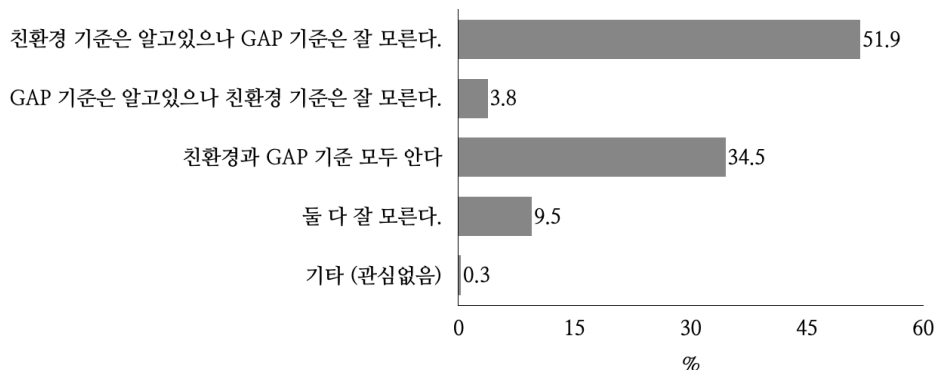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과 GAP 인증기준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친환경인증기준과 GAP 인증기준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친환경 기준은 잘 아는데, GAP 기준은 잘 모른다’에 약 52%, ‘친환경과 GAP기준 모두 잘 안다’에 약 35%, ‘둘 다 잘 모른다’에 약 9%, ‘GAP기준은 잘 아는데, 친환경 기준은 잘 모른다’에 약 4%로 응답함
- 친환경인증 농가의 과반수가 GAP 인증기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1/3이 친환경인증기준과 GAP 인증기준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함

표 3-10. 친환경 및 GAP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친환경 기준은 잘 아는데, GAP 기준은 잘 모른다.	308	51.9	1
GAP 기준은 잘 아는데, 친환경 기준은 잘 모른다.	23	3.8	4
친환경과 GAP 기준 모두 잘 안다.	204	34.5	2
둘 다 잘 모른다.	56	9.5	3
기타 (관심 없음)	2	0.3	5
합계	593	100	

그림 3-5. 친환경 및 GAP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수준



3.3.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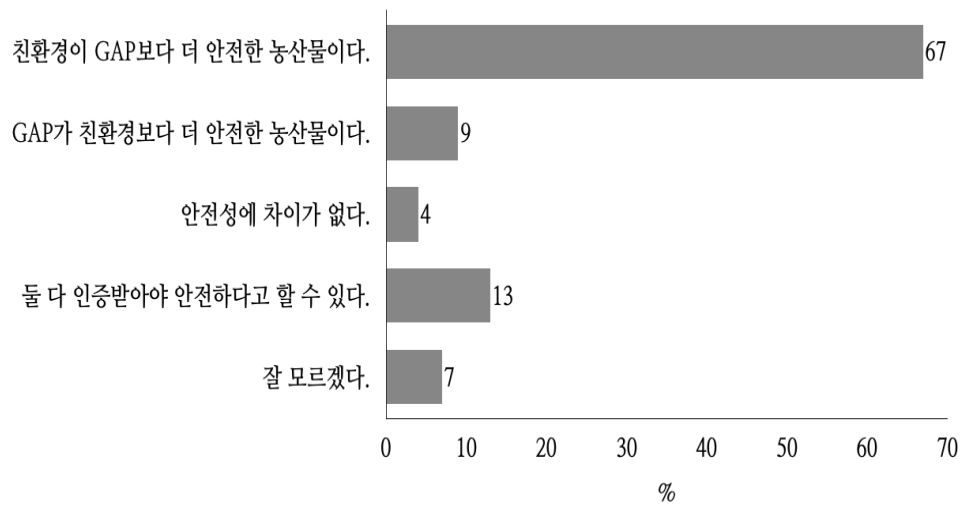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 중 무엇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응답자 중 67%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친환경이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농약사용 여부가 농산물 안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그 외 ‘둘 다 인정받아야 안전하다’에 약 13%가 응답, ‘위생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GAP가 친환경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가 약 9% 응답함

표 3-11.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친환경이 GAP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	405	67	1
위생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GAP가 친환경보다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	50	9	3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	27	4	5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78	13	2
잘 모르겠다.	43	7	4
합계	603	100	

그림 3-6.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3.4.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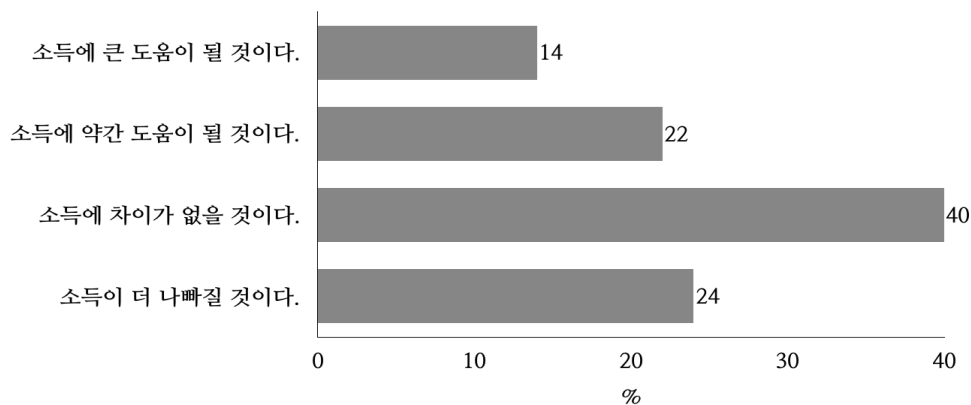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귀하의 소득에 도움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로 GAP 인증을 받으면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소득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에 40%가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더 나빠질 것이다’가 24%, ‘소득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가 22%,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에 약 14%가 응답함

표 3-12.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3	14	4
소득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136	22	3
소득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237	40	1
소득이 더 나빠질 것이다.	140	24	2
합계	596	100	

그림 3-7.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



3.5. 생산자의 인증마크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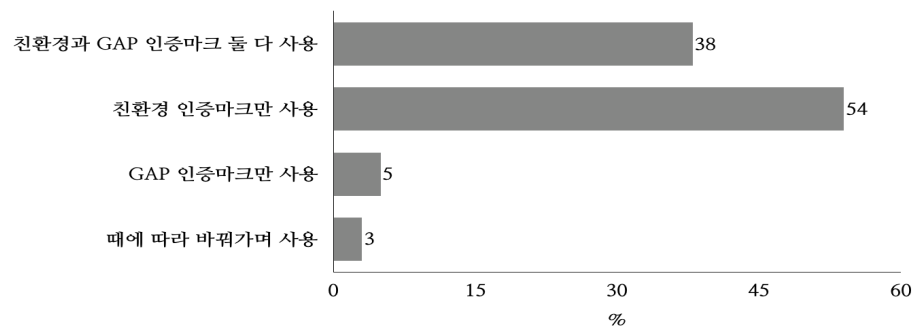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어떤 인증마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 인증마크만 사용’한다는 응답이 약 54%로 가장 많았음 → 이는 자신의 친환경농산물에 GAP 인증 표시를 할 때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가치 하락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친환경과 GAP 인증마크 둘 다 사용’에 38%가 응답하였으며, ‘GAP 인증마크만 사용’이 약 5%, ‘때에 따라 바뀌가며 사용’이 약 3%를 차지함

표 3-13. 생산자의 인증마크 선호도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친환경과 GAP 인증마크 둘 다 사용	233	38	2
친환경 인증마크만 사용	328	54	1
GAP 인증마크만 사용	29	5	3
때에 따라 바뀌가며 사용	17	3	4
합계	607	100	

그림 3-8. 생산자의 인증마크 선호도



3.6. 소비자 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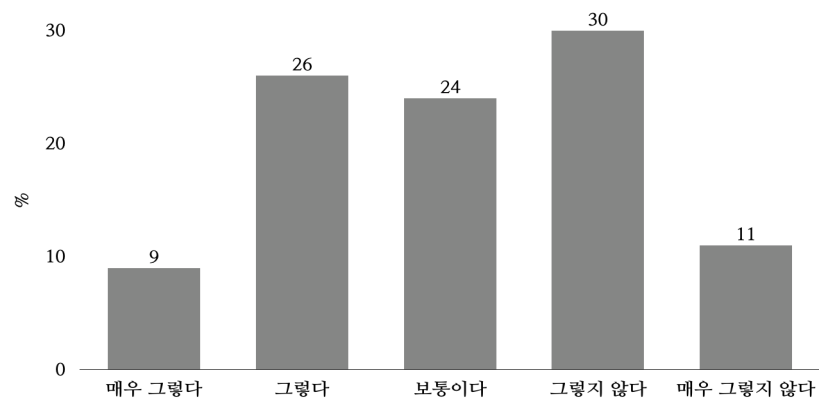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가 41%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가 35%로 응답함. ‘보통이다’에 24%가 응답함

표 3-14. 소비자 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매우 그렇다	52	9	5
그렇다	155	26	2
보통이다	144	24	3
그렇지 않다	180	30	1
매우 그렇지 않다	72	11	4
합계	603	100	

그림 3-9. 소비자 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



3.7. 인증 난이도 인식

“인증을 받는 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중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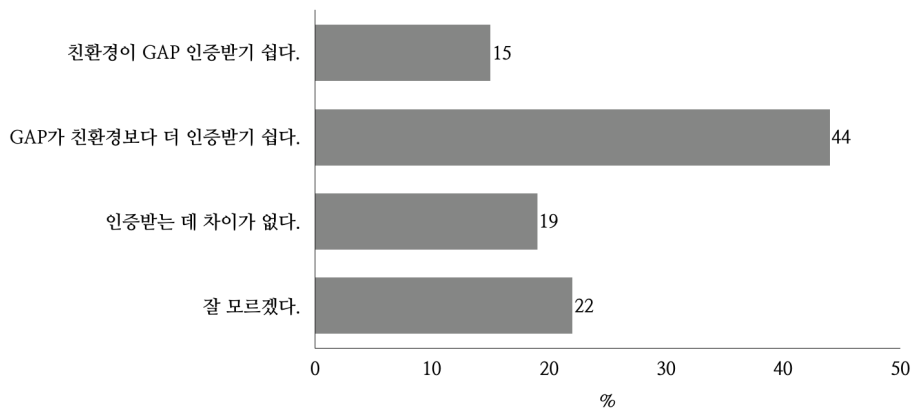
○ ‘GAP가 친환경보다 더 인증받기 쉽다’가 44%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가 22%, ‘인증 받는 데 차이가 없다’가 19%, ‘친환경이 GAP보다 더 인증받기 쉽다’가 약 15% 순으로 응답함

○ 현재 응답자 중 GAP인증을 받은 농가는 전체 4.6%(27명)

표 3-15. 인증 난이도 인식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친환경이 GAP보다 더 인증받기 쉽다.	85	15	4
GAP가 친환경보다 더 인증받기 쉽다.	258	44	1
인증 받는 데 차이가 없다.	111	19	3
잘 모르겠다.	126	22	2
합계	580	100	

그림 3-10. 인증 난이도 인식



3.8. GAP 인증 추진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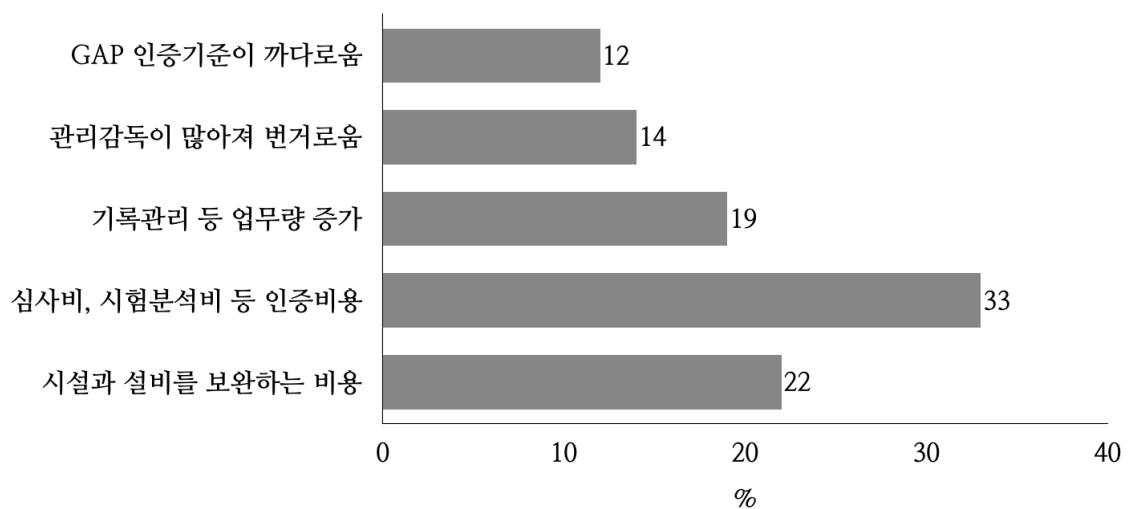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부담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보기 중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설문조사 결과, ‘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인증비용’이 부담되는 농가가 3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시설과 설비를 보완하는 비용’이 22%, ‘기록관리 등 업무량 증가’가 약 19%, ‘관리감독의 번거로움’이 14%, ‘인증기준의 까다로움’이 12% 순으로 응답함

표 3-16. GAP 인증 추진 시 애로사항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GAP 인증기준이 까다로움	91	12	5
인증심사원이 더 자주 오고, 관리감독이 많아져 번거로움	110	14	4
기록관리 등 업무량 증가	144	19	3
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인증비용	251	33	1
시설과 설비를 보완하는 비용	170	22	2
합계	766	100	

그림 3-11. GAP 인증 추진 시 애로사항



3.9. 선호 인증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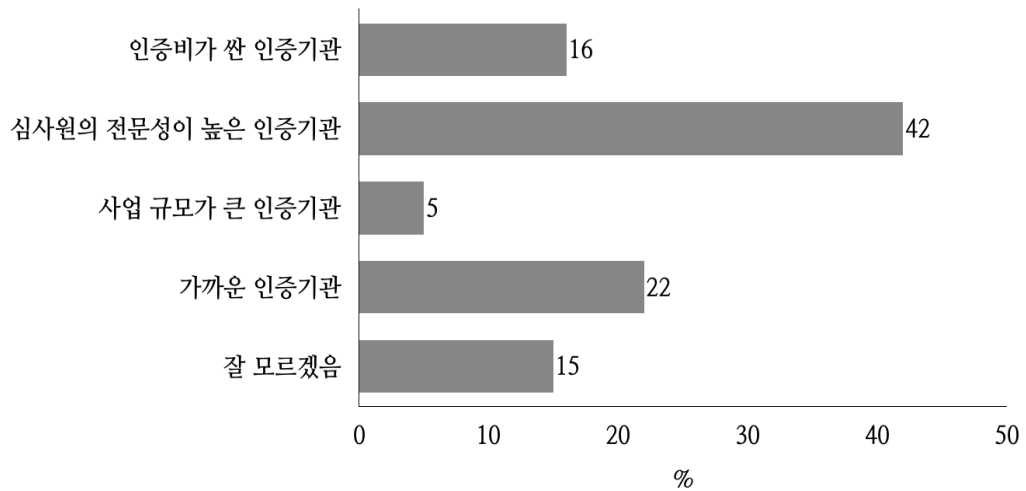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어떤 인증기관과 하고 싶습니까?”

- 설문조사 결과, ‘심사원의 전문성이 높은 인증기관’이 약 42%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가까운 인증기관’이 22%, ‘인증비가 싼 인증기관’이 약 16%, ‘잘 모르겠음’이 약 15%, ‘사업 규모가 큰 인증기관’이 5% 순으로 응답함
- 인증기관을 선택할 때 ‘심사원의 전문성’을 가장 높게 보았으며 반면 인증기관의 사업 규모는 인증기관 선택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3-17. 선호 인증기관 유형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인증비가 싼 인증기관	91	16	3
심사원의 전문성이 높은 인증기관	231	42	1
사업 규모가 큰 인증기관	25	5	5
가까운 인증기관	124	22	2
잘 모르겠음	83	15	4
합계	554	100	

그림 3-12. 선호 인증기관 유형



3.10. 현 인증기관의 GAP로 인증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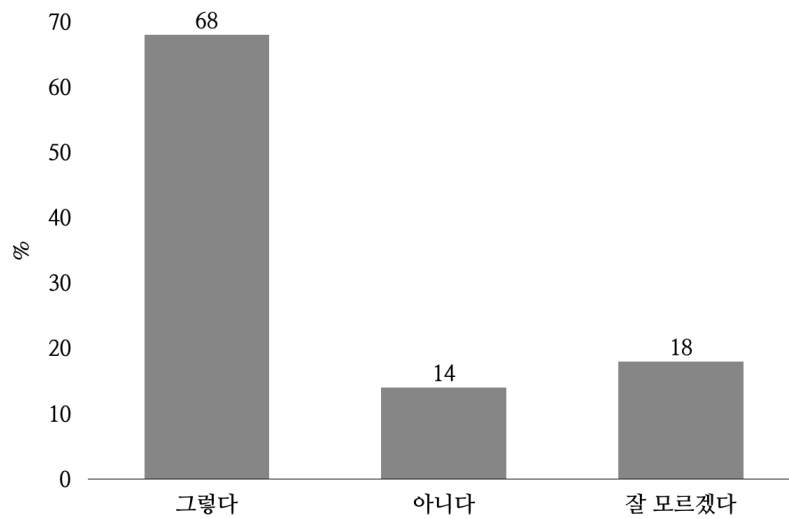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받고 싶습니까?”

- 설문조사 결과, ‘그렇다’가 6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잘 모르겠다’가 약 18%, ‘아니다’가 약 14% 순으로 응답함

표 3-18. 현 인증기관의 GAP로 인증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그렇다	376	68	1
아니다	78	14	3
잘 모르겠다	97	18	2
합계	551	100	

그림 3-13. 현 인증기관의 GAP로 인증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



3.11.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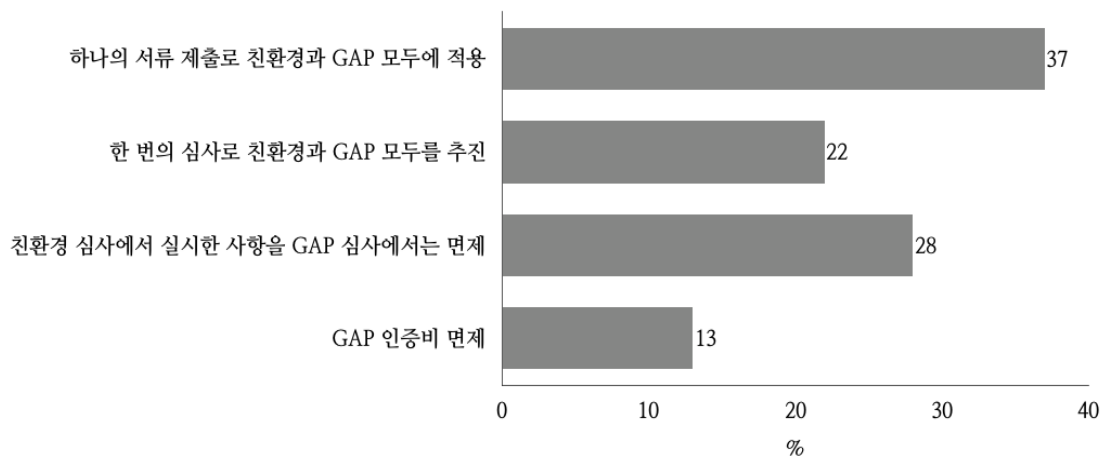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 인증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으로 ‘하나의 서류로 친환경과 GAP 모두에 적용’이 37%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친환경 심사에서 실시한 사항을 GAP 심사에서는 면제’가 약 28%, ‘한 번의 심사로 친환경과 GAP 모두 추진’이 22%, ‘GAP 인증비 면제’가 13% 순으로 응답

표 3-19.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하나의 서류 제출로 친환경과 GAP 모두에 적용	196	37	1
한 번의 심사로 친환경과 GAP 모두를 추진	116	22	3
친환경 심사에서 실시한 사항을 GAP 심사에서는 면제	144	28	2
GAP 인증비 면제	70	13	4
합계	526	100	

그림 3-14. 인증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



3.12.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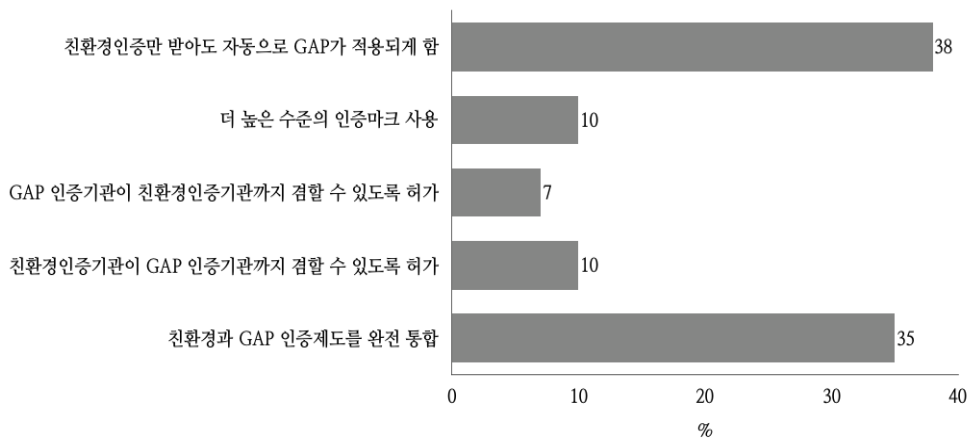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 ‘위생기준 등 GAP 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GAP 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인증만 받아도 자동으로 GAP가 적용되게 함’에 38%, ‘친환경과 GAP 인증 제도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에 약 35%가 응답함

표 3-20.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사항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위생기준 등 GAP 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GAP 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인증만 받아도 자동으로 GAP가 적용되게 함	192	38	1
친환경과 GAP를 동시 획득한 농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마크 사용	52	10	3
GAP 인증기관이 친환경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35	7	5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52	10	3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	182	35	2
합계	513	100	

그림 3-15.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사항



3.13. GAP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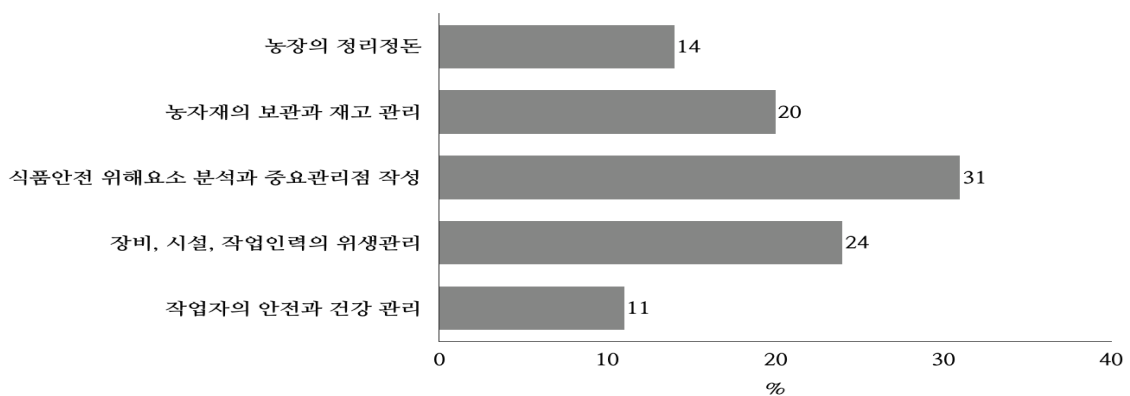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없는 GAP 인증기준들입니다. 이 중 귀하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을 두 개 선택해 주십시오”

- 설문분석 결과, ‘식품안전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작성’에 31%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장비, 시설, 작업인력의 위생관리’가 24%, ‘농자재의 보관과 재고 관리’가 20% 순으로 차지함

표 3-21. GAP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농장의 정리정돈	108	14	4
농자재의 보관과 재고 관리	163	20	3
식품안전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작성	247	31	1
장비, 시설, 작업인력의 위생관리	193	24	2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관리	85	11	5
합계	796	100	

그림 3-16. GAP 기준에 대한 애로사항



3.14. GAP 추가 인증 시의 기대 효과(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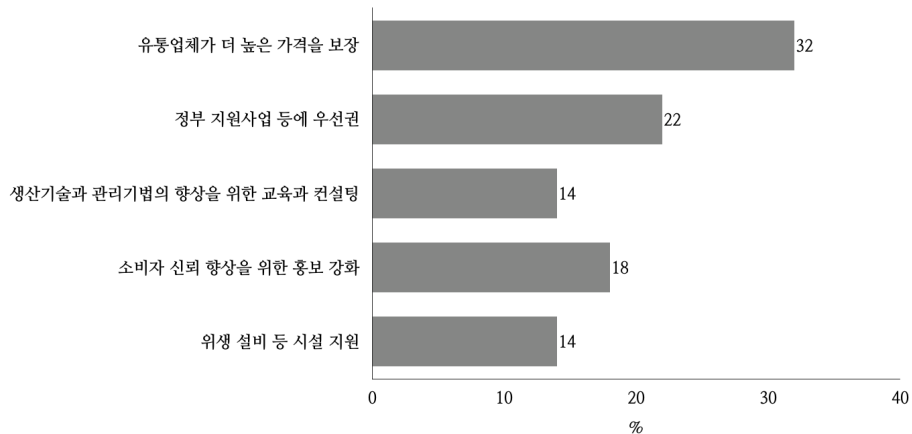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희망하시는 점을 다음 보기 중 두 개 선택해 주십시오”

- 설문 분석 결과 ‘유통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보장’에 3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정부 지원사업 등에 우선권’이 22%,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에 18% 순으로 응답함

표 3-22. GAP 추가 인증 시의 기대 효과

구 분	응답 수	비율(%)	순위
유통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보장	306	32	1
정부 지원사업 등에 우선권	204	22	2
생산기술과 관리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134	14	4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167	18	3
위생 설비 등 시설 지원	134	14	4
합계	945	100	

그림 3-17. GAP 추가 인증 시의 기대 효과



4. 병행인증 생산자의 통계적 성격

4.1. 거주지역

- 설문지에 응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을 병행하는 농가 중 ‘충남/대전/세종’에 거주하는 농가가 39.3%,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농가가 17.9%, ‘충북’에 거주하는 농가가 14.3%, ‘경남/부산/울산’과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농가가 10.7%, ‘경북/대구’에 거주하는 농가가 7.1% 순으로 차지함

표 3-23. 거주 지역 빈도분석

구 분	응답 수	비율(%)
강원	0	0.0
경기/서울/인천	5	17.9
경남/부산/울산	3	10.7
경북/대구	2	7.1
전남/광주	3	10.7
제주	0	0.0
충남/대전/세종	11	39.3
충북	4	14.3
합계	28	100.0

4.2. 연령

- 연령은 '60대'가 32.1%로 많았으며 '50대'가 28.6%, '40대'가 21.4% 순으로 차지함

표 3-24. 응답자의 연령 분포

구 분	응답 수	비율(%)
30대 이하	1	3.6
40대	6	21.4
50대	8	28.6
60대	9	32.1
70대 이상	4	14.3
합계	28	100.0

4.3. 대표 작목

-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작물로 '수도작'이 약 50.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과채류' 17.9%, '엽채류'와 '버섯'이 14.3%를 차지함

표 3-25. 응답자의 대표 작목 현황

구 분	응답 수	비율(%)
수도작	14	50.0
잡곡	0	0.0
과수	0	0.0
엽채류	4	14.3
과채류	5	17.9
버섯	4	14.3
서류	1	3.5
기타	0	0.0
합계	28	100.0

4.4. 인증 종류

- 무농약인증과 GAP 인증을 병행하고 있는 농가는 64.3%, 유기인증과 GAP 인증을 병행하고 있는 농가는 32.1%, 유기 및 무농약인증과 GAP를 병행하는 농가는 3.6%를 차지함

표 3-26. 인증 종류

구 분	응답 수	비율(%)
유기, GAP	9	32.1
무농약, GAP	18	64.3
유기, 무농약, GAP	1	3.6
합계	28	100.0

4.5. 생산지 유형

- 28명의 응답자 중 재배 방식에 따른 비중은 ‘노지’가 67.9%, ‘시설’이 32.1%를 차지함

표 3-27. 재배 방식 현황

구 분	응답 수	비율(%)
노지	19	67.9
시설	9	32.1
합계	28	100.0

4.6. 농사 규모

- 농사 규모는 ‘1ha미만’이 약 35.7%로 많았으며, ‘2ha 이상 ~5ha 미만’이 28.6%, ‘1ha 이상 ~ 2ha미만’이 21.5%, ‘5ha 이상’이 14.2%를 차지함

표 3-28. 농사 규모

구 분	응답 수	비율(%)
1ha 미만	10	35.7
1ha 이상 2ha 미만	6	21.5
2ha 이상 5ha 미만	8	28.6
5ha 이상	4	14.2
합계	28	100.0

4.7. 연간 농사 소득

- 농가 소득이 ‘2,000만원 미만’에 응답한 농가가 약 42.8%로 많았으며, ‘2,000 ~ 4,000만원 미만’이 21.5%, ‘4,000 ~ 6,000만원’과 ‘1억 원’이 14.3%를 차지함

표 3-29. 연간 농가 소득

구 분	응답 수	비율(%)
2,000만원 미만	12	42.8
2,000 ~ 4,000만원 미만	6	21.5
4,000 ~ 6,000만원 미만	4	14.3
6,000만원 ~ 1억 원 미만	2	7.1
1억 원	4	14.3
합계	28	100.0

4.8. 농사 경력

- 농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농가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5년~ 10년 미만'이 28.6%를 차지함. 친환경농업과 GAP를 병행하는 농가는 농사 경력이 5년 미만인 농가 중에는 없음

표 3-30. 농사 경력

구 분	응답 수	비율(%)
3년 미만	0	0.0
3 ~ 5년	0	0.0
5년 ~ 10년	8	28.6
10년 이상	20	71.4
합계	0	0.0

5. 응답자 특성에 따른 GAP 인식 분석

5.1. 친환경인증 종류별 GAP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유기 농가들이 무농약 농가들보다 GAP에 대한 필요성을 다소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 607명 중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들(GAP농가 포함)과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들(GAP농가 포함)의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유기 농가들의 경우 55.0%, 무농약 농가들의 경우 47.6%를 나타냄
 - 5가지 응답을 5점 척도법으로 변환하여 평균을 구한 결과 5.00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유기 농가들의 답변은 2.75, 무농약 농가들은 2.38로 나타남
 - 5점 척도법으로 변환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음

표 3-31. 친환경 인증 농가 종류별 GAP 추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 인식

구분	응답자수	필요성 인식 수준 (5점 척도법)	필요성 인식 수준 (백분율)
유기농가 (GAP인증농가 포함)	218	2.75	55%
무농약농가 (GAP인증농가 포함)	379	2.38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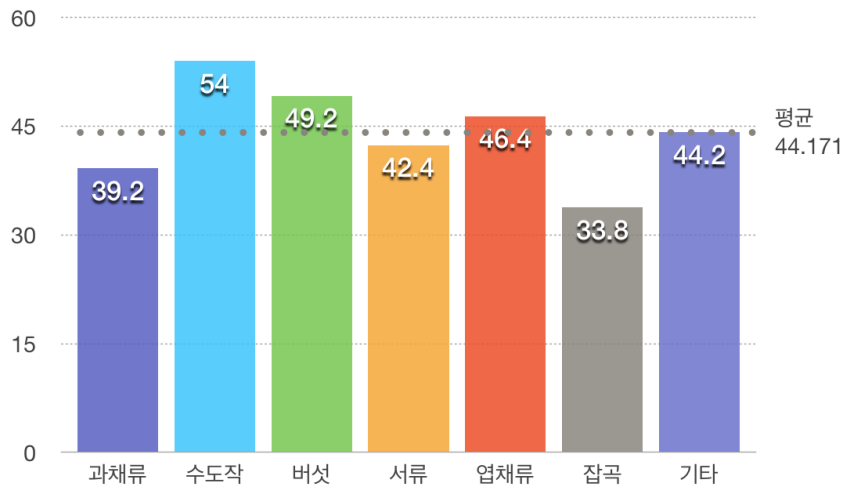
5.2.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GAP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재배 품목별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을 5.1과 같은 방법(5점 척도법)으로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이 수도작 생산자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추가인증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과수는 유효한 응답이 2건으로 저조하여 본 표에서 제외
 - 수도작, 벼짓 등 시장 수요에 비하여 공급 과잉이 빚어지는 품목일수록 GAP 등 신규 영업수단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됨

표 3-32. 품목별 GAP 추가 인증 필요성 인식

구분	응답자수	필요성 인식 수준 (5점 척도법)	필요성 인식 수준 (백분율)
과채류	57	1.96	39.2
수도작	294	2.70	54.0
벼짓	13	2.46	49.2
서류	17	2.12	42.4
엽채류	113	2.32	46.4
잡곡	13	1.69	33.8
기타	33	2.21	44.2

그림 3-18. 품목별 GAP 추가인증 필요성 인식 (단위: %)



5.3. 응답자 특성과 GAP 인식의 상관관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응답자의 특성(연령, 영농규모, 소득)이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 추가 인증 시 소득에 대한 기대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
 - 응답 607건 중 해당 질문에 ‘무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543건의 응답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 (IBM SPSS 프로그램 사용)
 - 응답자의 **연령**과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나,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는 연령과 무관함. 응답자 연령과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은 양(+)**의 상관관계**로서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음
 - 응답자의 **영농규모(재배면적)**와 관련해서는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5% 유의수준),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1% 유의수준),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5% 유의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음. 응답자의 영농규모가 클수록 추가 인증이 필요하고, 소득 및 신뢰성 향상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소득**은 GAP 추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친환경 농가들은 연령이 높고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GAP 추가 인증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GAP 추가 인증으로 인한 소득향상과 신뢰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 친환경농업과 GAP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보다는 큰 농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 될 것임
 - 연령이 높을수록 GAP 추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시장정보에 대응이 빠른 젊은 농업인에 비하여 고령의 농업인이 마케팅 기술 등 판로 개척의 수단을 인증 등 외부 힘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표 3-33. 응답자 특성과 GAP 인식의 상관관계

		연령대	ha	소득	GAP 필요성	소득 기대	신뢰성 기대
연령대	Pearson 상관	1	.029	-.185**	.137**	.013	.083
	유의확률 (양측)		.507	.000	.001	.754	.055
	N	542	542	542	542	542	542
ha	Pearson 상관	.029	1	.259**	.088*	.122**	.089*
	유의확률 (양측)	.507		.000	.040	.005	.039
	N	542	542	542	542	542	542
소득	Pearson 상관	-.185**	.259**	1	-.071	.080	-.02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101	.064	.626
	N	542	542	542	542	542	542
GAP 필요성	Pearson 상관	.137**	.088*	-.071	1	.530**	.671**
	유의확률 (양측)	.001	.040	.101		.000	.000
	N	542	542	542	542	542	542
소득 기대	Pearson 상관	.013	.122**	.080	.530**	1	.645**
	유의확률 (양측)	.754	.005	.064	.000		.000
	N	542	542	542	542	542	542
신뢰성 기대	Pearson 상관	.083	.089*	-.021	.671**	.645**	1
	유의확률 (양측)	.055	.039	.626	.000	.000	
	N	542	542	542	542	542	542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6. 친환경 농업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6.1. GAP 가치에 대한 오해

-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GAP 인증은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 인증으로 인식하고 친환경농산물이 GAP에 대해 우월한 것으로 인식
 - GAP 추가 인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답변은 60% (그렇지 않다 36%, 매우 그렇지 않다 24%)
 - 인증마크 선호에 대해서도 GAP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인증 마크만을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54%
 - GAP 추가 인증 시 소비자 신뢰 향상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 답변이 41%(그렇지 않다 30%, 매우 그렇지 않다 11%)로서 긍정적 답변 35%(매우 그렇다 9%, 그렇다 26%)에 비해 높음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비하여, GAP 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 인식
 - 친환경농산물이 GAP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응답률이 67%로서 GAP가 친환경보다 안전하다는 응답률 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모두 받아야 안전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침
 -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화학적 위해요소(잔류농약)에 편중되어 있고,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편

- 생산자들에게 GAP 제도의 목적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이 해결할 수 없는 식품안전의 분야가 GAP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의 필요
 - 친환경농업과 GAP는 서로 목적이 다르고, 어느 것이 상위의 개념이 되지 않음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의 필요

6.2. GAP 추진에 따른 부담감

- 친환경인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들은 GAP 인증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
 - GAP 인증이 친환경인증에 비해 쉬울 것이라는 응답(44%)이 친환경인증이 GAP 인증에 비해 쉬울 것이라는 응답(15%)에 비해 월등히 높음(약 2.5배)
 - 하지만 친환경 생산자가 GAP 인증을 추가로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심사비, 시험분석비 등의 인증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인증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33%, 시설·설비의 보완 비용에 대한 부담 22%, 기록관리 등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부담 19%,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이 빈번해 지는데 대한 부담 14%)
- 친환경 농가가 GAP를 추가로 추진할 때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2중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를 기대
 - 하나의 서류 제출로 친환경과 GAP 모두에 적용(37.0%), 친환경 심사에서 실시한 사항을 GAP 심사에서는 면제(28%), 한 번의 심사로 친환경과 GAP 모두를 추진(22%)

- GAP를 추가로 추진할 때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 GAP 추가 인증으로 유인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임
-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이 GAP를 함께 추진하는 구조를 가장 선호
-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받고 싶다는 응답(68%)이 새로운 인증기관에게 받고 싶다는 응답(14%)에 비해 월등히 높음(약 5배)
- 친환경인증 농가는 GAP 인증기준 중 식품안전 관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이론에 대해 추가로 적용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 GAP 인증기준 중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점은 ‘식품안전 위해요소 분석과(RA)⁴⁸⁾ 중요관리점(CCP)⁴⁹⁾ 작성’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장비, 시설, 작업 인력의 위생관리’가 24%
 - 농장의 정리정돈(14%), 농자재의 보관과 재고 관리(20%),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관리(11%)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끼고 있음
-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GAP 인증을 별도로 적용함에 따른 업무량 등 농가의 투입노력량을 감축하고, 인증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GAP 추가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
-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 ⇒ GAP에서 요구되는 생물학적 식품안전 기준의 이론을 농업인 수준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 및 친환경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익숙해지도록 기준의 재정비

48) Risk Assessment

49) Critical Control Point

6.3. 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 기대

- 친환경과 GAP 인증을 따로 받기보다는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호
 - 위생기준 등 GAP 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친환경 인증만으로 GAP의 기능과 목적이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38%)
 - 또는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두 번째로 선호(35%)

- 친환경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을 때에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편익의 증가를 희망
 - 농산물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보장받기를 원함(32%)
 - 정부 지원사업 등에 우선권을 얻기를 원함(22%)

- 친환경 생산자가 GAP를 추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 등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1. 조사 개요

-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대한 인식과 농산물 신뢰도 개선에 대한 의견, 구매 선호도 등을 조사

- 설문조사
 - 대상: 소비자
 - 인원: 300명
 - 지역: 전국 모든 지역
 - 설문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시행사: 주식회사 피엠아이(PMI)⁵⁰⁾

○ 설문조사 기간

- 설문지 설계 및 보안: 2017년 10월 1일 ~ 2017년 10월 15일
- 설문조사 기간: 2017년 10월 16일 ~ 2017년 10월 30일
- 분석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1월 15일

표 4-1. 응답 소비자들의 기초 통계

구분		명(%)
거주지역	전남·광주	32(10.7)
	전북	8(2.7)
	강원	14(4.7)
	충북	14(4.7)
	충남·대전·세종	26(8.7)
	제주	3(1.0)
	경남·부산·울산	46(15.3)
	경북·대구	29(9.7)
	경기·서울·인천	128(42.7)
연령	20대	64(21.3)
	30대	70(23.3)
	40대	84(28.0)
	50대	82(27.3)
성별	여성	146(48.7)
	남성	154(51.3)
가족 수 (본인포함)	1명	35(11.7)
	2명	52(17.3)
	3명	86(28.7)
	4명	101(33.7)
	5명	24(8.0)
	6명 이상	2(0.7)
친환경 제품 구매처	대형마트	192(64.0)
	가까운 상점	25(8.3)
	생활협동조합	36(12.0)
	온라인	46(15.3)
	기타	1(0.3)

2. 친환경농산물과 GAP 인증에 관한 일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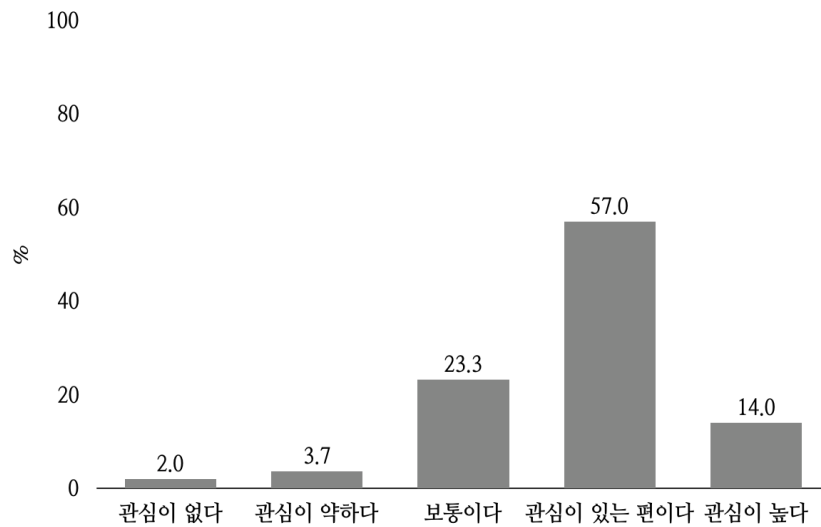
2.1.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 정도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제품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정도를 알아본 결과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1%임
(“관심이 있는 편” 또는 “관심이 높음”으로 응답)

표 4-2.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 정도

구 분	응답 수	비율(%)
관심이 없다	6	2.0
관심이 약하다	11	3.7
보통이다	70	23.3
관심이 있는 편이다	171	57.0
관심이 높다	42	14.0
합계	300	100

그림 4-1.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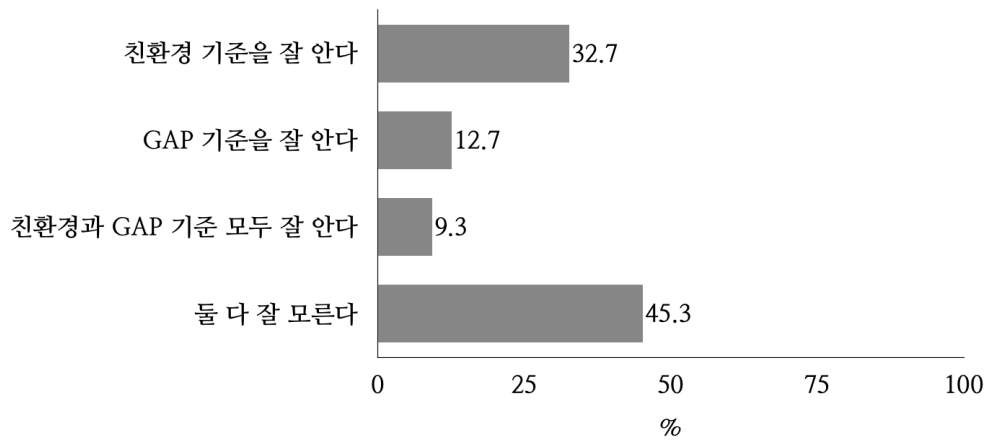
2.2.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 인지 수준

-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에 대해 잘 모르거나 친환경 기준만 잘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둘다 잘 모른다’가 약 45%
 - 친환경 기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2%
(“친환경 기준은 알지만, GAP 기준은 잘 모른다”와 “친환경과 GAP 기준 모두 잘 안다”로 응답)
 - 소비자들은 GAP 인증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GAP 기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2%
(“GAP 기준은 알지만, 친환경 기준은 잘 모른다”와 “친환경과 GAP 기준 모두 잘안다”로 응답)

표 4-3.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 인지 수준

구 분	응답 수	비율(%)
친환경 기준은 알지만, GAP 기준은 잘 모른다	98	32.7
GAP 기준은 잘 알지만, 친환경 기준은 잘 모른다.	38	12.7
친환경과 GAP 기준 모두 잘 안다	28	9.3
둘 다 잘 모른다	136	45.3
합계	300	100

그림 4-2.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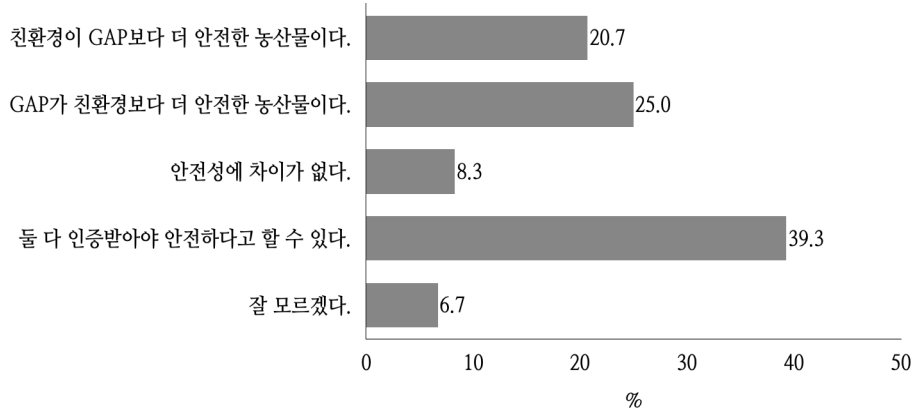
2.3.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 친환경과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두 가지 다 받은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인지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음
 - 친환경과 GAP 인증 둘 다 받아야 안전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약 39%, ‘GAP가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가 25%, ‘친환경이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가 약 21%,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가 약 8% 순으로 차지함
- 소비자들은 농산물 안전성을 위하여 농약사용에 대한 중요성(20.7%)보다 위생적인 관리의 중요성(25%)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음

표 4-4.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구 분	응답 수	비율(%)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친환경이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	62	20.7
위생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GAP가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	75	25.0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	25	8.3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118	39.3
잘 모르겠다	20	6.7
합계	300	100

그림 4-3.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



- 친환경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나 GAP 인증기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친환경 기준만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보다 GAP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 높다고 인식함
 -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가 약 35%, ‘GAP가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가 약 31%, ‘친환경이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가 약 23% 순으로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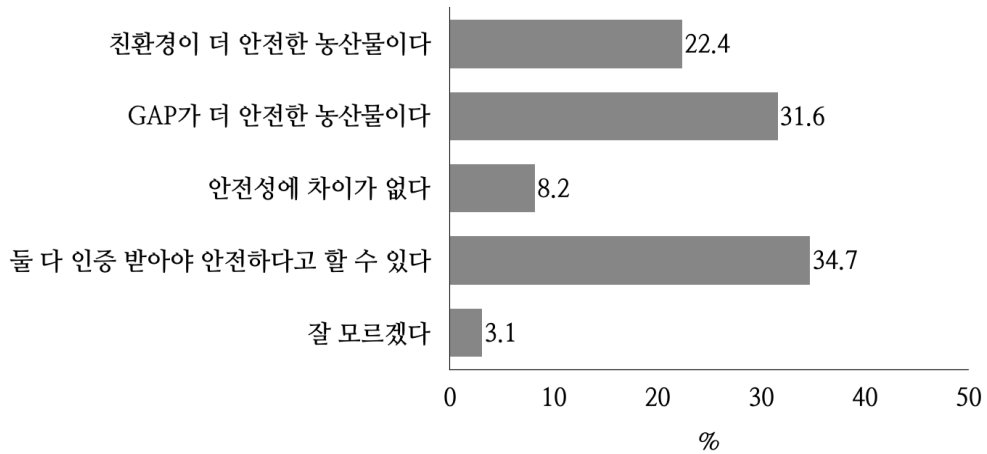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위생 관리 등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위생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산물 안전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응답
 - ⇒ 친환경농산물의 생태학적 가치 및 후생(厚生) 가치에 더하여, 보건(保健)학적 가치에 대한 요구로 풀이됨

표 4-5. 친환경 기준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농산물 안전성 인식

단위: 명, %

구 분	친환경 기준은 잘 아는데, GAP 기준은 잘 모른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친환경이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	22(22.4)
위생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GAP가 더 안전한 농산물이다	31(31.6)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	8(8.2)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34(34.7)
잘 모르겠다	3(3.1)
합계	98(100)

그림 4-4. 친환경 기준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농산물 안전성 인식



2.4. 친환경농업과 GAP의 목적

-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과 GAP의 목적이라 인식
 -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 응답 비율을 친환경농업과 GAP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음
 - 친환경농업의 목적을 다중선택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34% 가장 많았으며,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이 23%, ‘생태 환경 보전’이 약 21% 순으로 차지함. ‘우리 농산업 보호’와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는 각각 9%, 10% 정도에 그침
 - GAP의 목적을 다중선택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약 35%,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이 약 25%임. ‘생태 환경 보전’이 약 14%, ‘우리 농산업 보호’가 약 12%,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약 11% 순으로 비율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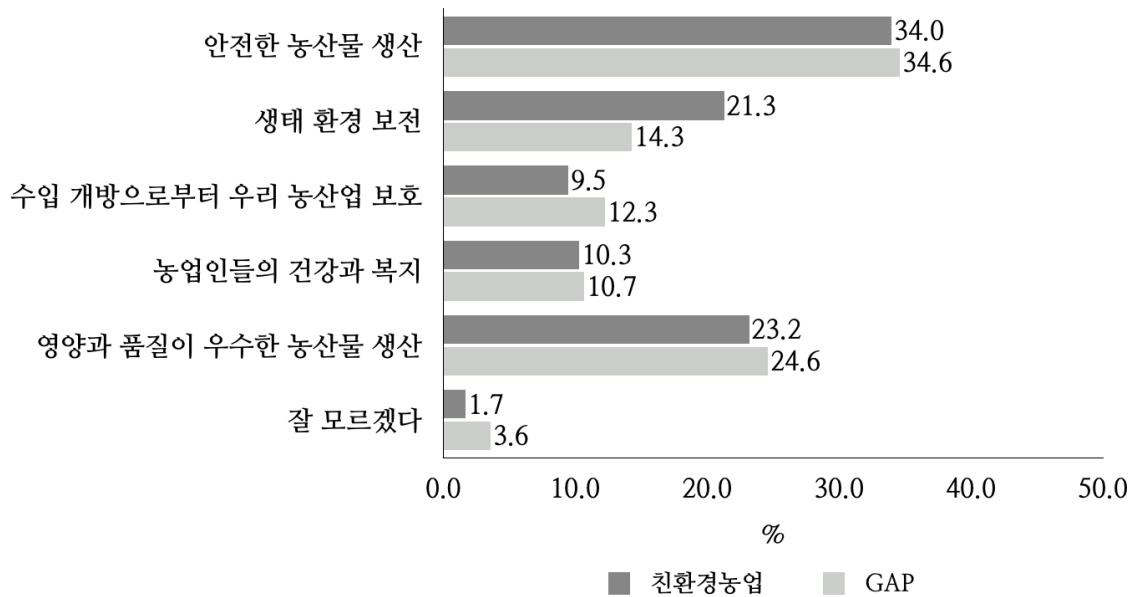
-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농산물의 안전성(친환경: 34%, GAP: 35%)으로 친환경농산물과 GAP를 차별하지 않고 안전성의 가치(보건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음

표 4-6. 친환경농업과 GAP의 목적

단위: 명(%)

구 분	친환경농업	GAP
안전한 농산물 생산	215(34.0)	194(34.6)
생태 환경 보전	135(21.3)	80(14.3)
수입 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업 보호	60(9.5)	69(12.3)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	65(10.3)	60(10.7)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	147(23.2)	138(24.6)
잘 모르겠다	11(1.7)	20(3.6)
합계	633(100)	561(100)

그림 4-5. 친환경농업과 GAP의 목적



2.5.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신뢰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에 대한 신뢰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54~55%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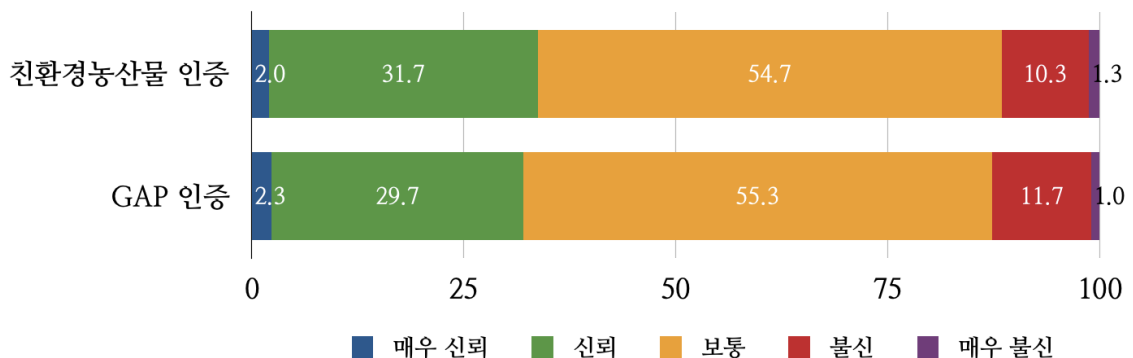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뢰하는 소비자는 33.7%, GAP 인증을 신뢰하는 소비자는 32%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불신하는 소비자는 11.6%, GAP 인증을 불신하는 소비자는 약 12.7%임

표 4-7.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신뢰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신뢰	신뢰	보통	불신	매우 불신	합계
친환경농산물 인증	6(2.0)	95(31.7)	164(54.7)	31(10.3)	4(1.3)	300(100)
GAP 인증	7(2.3)	89(29.7)	166(55.3)	35(11.7)	3(1.0)	300(100)

그림 4-6.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신뢰도



- 이는 선행연구⁵¹⁾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근 살충제계란 사건⁵²⁾ 후에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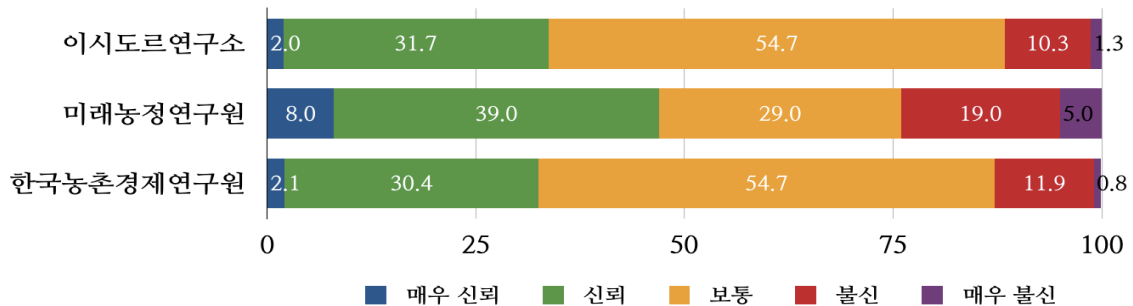
표 4-8.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미래농정연구원, 2007)

구 분	빈도(명)	비중(%)
매우 신뢰한다	8	8.0
약간 신뢰한다	39	39.0
보통이다	29	29.0
약간 신뢰하지 않는다	19	19.0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5	5.0
계	100	100.0

표 4-9. 친환경농산물 신뢰정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구 분	응답 수	비중(%)
매우 높음	21	2.1
높음	302	30.4
보통	542	54.7
낮음	118	11.9
매우 낮음	8	0.8
계	991	100.0

그림 4-7. 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도 조사



51) 미래농정연구원(2007).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친환경농산물 구매행태 및 시장 전망
 52) 2017년 8월 국내 유통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의 살충제가 검출되었는데,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다수 검출되어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을 말함

2.6.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가능성 측정

○ 소비자들은 농산물이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모두 받는다면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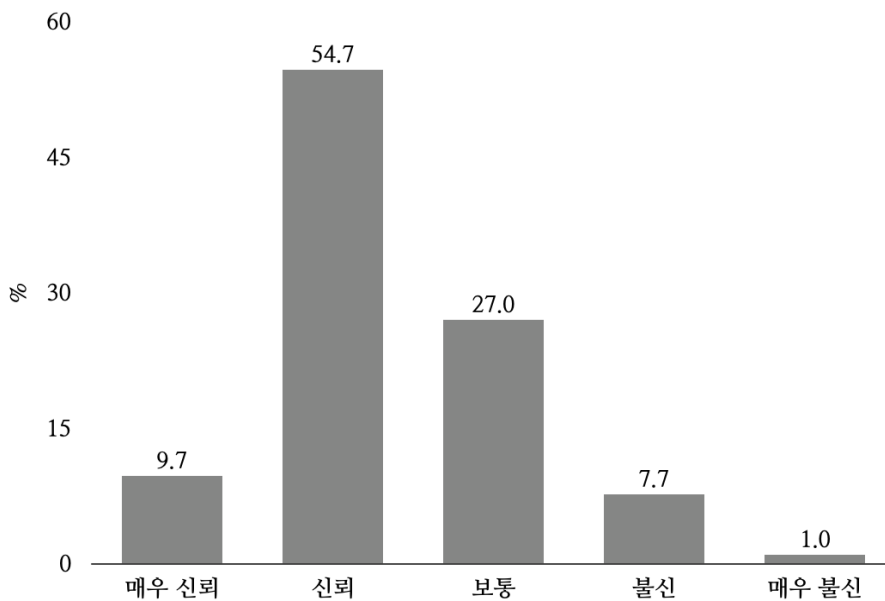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모두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약 64.4%

표 4-10.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가능성 측정

단위: 명, %

구 분	매우 신뢰	신뢰	보통	불신	매우 불신	합계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을 모두 받은 농산물	29(9.7)	164(54.7)	81(27.0)	23(7.7)	3(1.0)	300(100)

그림 4-8.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가능성 측정



2.7.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설정

-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의 제고를 위하여 개선 방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함
 -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가 약 3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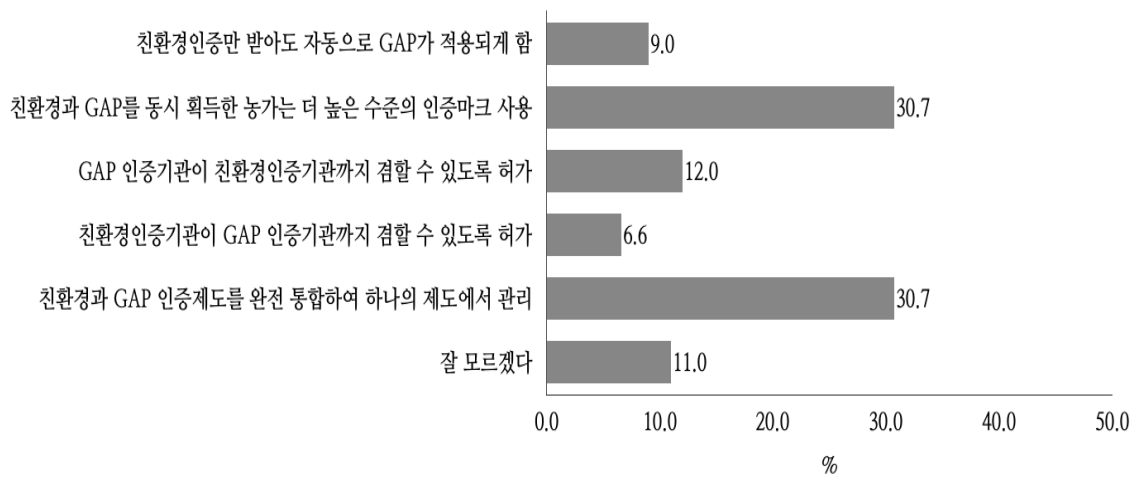
- 또한 친환경과 GAP 인증을 동시 획득한 농가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친환경과 GAP를 동시 획득한 농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마크 사용’이 약 31%를 차지함

- 이는 소비자의 선택 편의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후생가치와 GAP 농산물의 보건가치를 동시에 획득하고자 하는 의향으로 보이나, 표시 방법은 국제적 규범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함
 - 국제적으로 유기농과 GAP를 통합 운영하는 사례는 없음

표 4-11.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설정

구 분	응답 수	비율(%)
위생기준 등 GAP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GAP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인증만 받아도 자동으로 GAP가 적용되게 함	27	9.0
친환경과 GAP를 동시 획득한 농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마크 사용	92	30.7
GAP 인증기관이 친환경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36	12.0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20	6.6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	92	30.7
잘 모르겠다	33	11.0
합계	300	100

그림 4-9.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의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설정



3. 토마토를 통해 추정된 농산물 인증의 가치

3.1. 컨조인트와 헤도닉 모형을 이용한 농산물 인증에 대한 가치 추정

-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지불의사액은 인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인증 종류별 가치 추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가치를 추정
- 앞서 제1절에서 소개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각 인증제도에 대한 농산물 가격(가치) 증가의 적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실험법⁵³⁾을 사용함
 - 농산물의 가격에는 여러 속성이 작용할 것이나, 여기서는 속성 구성을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으로 분류하였음
 - 농산물 중 토마토를 선정하여 1kg 당 가격을 인증 여부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음
- 토마토(농산물)의 인증에 대한 속성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Waugh(1928)가 제안한 헤도닉 가격 모형을 사용
 - 본 조사에서는 인증에 대한 농산물의 가치 상승 모델로 다음과 같은 추정 함수를 사용

53) 선택실험법은 컨조인트 분석의 일종으로, 본 조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과 GAP 인증의 여부로 선택대안을 구성하였음

$$\hat{P}_i = \beta_0 + \sum_{j=1}^m \beta_j D_{j,i} + \sum_{k=1}^n \beta_k D_{k,i} \dots\dots\dots (1)$$

\hat{P}_i i 상품의 단위 가격 (토마토 1kg)

$D_{j,i}$ i 상품이 j 의 속성을 가질 때의 더미변수
(j 는 유기, 무농약임)

$D_{k,i}$ i 상품이 k 의 속성을 가질 때의 더미변수
(k 는 GAP 인증임)

3.2. 토마토의 속성과 수준

- 개별 소비자의 토마토 소비에 대한 선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토마토의 속성별 선호도를 선택실험법으로 조사 분석함. 선택실험에서 사용한 속성과 수준은 <표 4-12>와 같음

표 4-12. 선택실험에 사용한 토마토의 속성 및 수준

속성	수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유기농, 무농약, 관행*)
GAP 인증	GAP 인증 여부(받음, 안받음)
가격(1Kg당)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주. * : 각 속성의 기준(Baseline)이 되는 수준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속성 수준은 “유기농”, “무농약”, “관행”의 3 종류로 하고, GAP 속성의 수준은 “받음”과 “안받음”의 2 종류로 하였음

- 가격은 시중에 판매되는 큰 토마토 1Kg 당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의 4수준으로 구분하였음
- 표본 수는 전국 300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3>와 같음

표 4-13. 표본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표본 수
나이	41	11	20	59	300
성별	.51	.50	0	1	
가족 수	3	1	1	6	

3.3. 추정 결과

- <표 4-14>는 조건부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냄. 추정계수는 모두 1%수준에서 0과의 유의차가 인정됨
-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생산방식보다는 유기농과 무농약의 생산방식을 선호했으며 그 중에서 유기농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이 무농약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GAP 인증 토마토는 인증하지 않은 것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가 인정됨. 유기농, 무농약, 관행 토마토 모두 GAP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받지 않은 것보다 가치가 증가하고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됨

- 가격의 부호는 마이너스로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선호가 낮아지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행위와 일치함

표 4-14.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속성	수준	변수명	추정계수	표준오차
대안상수		ASC	20.8560578 ***	1.96603895
친환경	유기농	ORGA	1.0549533 ***	0.09893267
	무농약	PESTF	1.2944123 ***	0.10445912
	관행*	(Baseline)		
GAP	인증	LEAF	.8613988 ***	.06854266
	인증 안함	(Baseline)		
로그 가격(1kg)		LPRICE	-2.33523569 ***	0.22570503
Sample			1800	
Log-Likelihood Function			-1235.210	
<i>Pseudo-R</i> ²			.19804	

- 주. 1) ***는 유의수준 1%에서 영과의 유의차가 통계적으로 인정됨을 의미
 2) log-likelihood ratio 통계량에 대한 귀무가설은 모든 추정계수가 0이라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p-value가 제시되어 있음
 3) 조건부로짓모형 추정에 사용된 상대적 기준(Baseline)이 되는 수준을 각 해당 속성마다 표기하였음

3.4. 각 속성의 한계지불의사액(MWTP)⁵⁴의 비교

- 소비자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속성의 한계지불의사액을 비교한 결과,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농토마토의 한계지불의사액은 일반 관행 토마토보다 2,125원 높음. 무농약은 일반 관행 토마토보다 1,732원 높았음. GAP 인증 토마토의 한계지불의사액은 인증 안한 일반 토마토보다 1,414원 높았음
- 유기인증과 동시에 GAP 인증을 받은 토마토는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은 토마토에 비하여 3,539원의 한계지불의사액이 더 높음
 - 이는 유기인증만 받을 때보다 유기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을 때 농산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함께 GAP 인증표시를 병기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됨을 뜻함. 이는 소비자가 토마토의 안전성(보건가치)과 건강성(후생가치)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존의 조사 결과들과 일치함
- 소비자가 GAP 인증에 대한 선호가 인증 받지 않은 토마토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GAP 인증의 정책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은 토마토가 GAP 인증을 받을 경우 한계가치가 증가하고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54) Marginal Willingness To Pay(MWTP); 소비자가 기준대안(Baseline)에서 선택대안으로 구매여건이 변화(예를 들어, 관행-유기농)하였을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임

표 4-15. 속성수준의 한계 지불의사액

속성	속성수준	한계 가격 (토마토100g당)	상대 기준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2,125 원	관행농산물
	무농약	1,731 원	
친환경농산물 + GAP	유기농 + GAP	3,539 원	
	무농약 + GAP	3,145 원	
GAP	GAP 인증	1,414 원	무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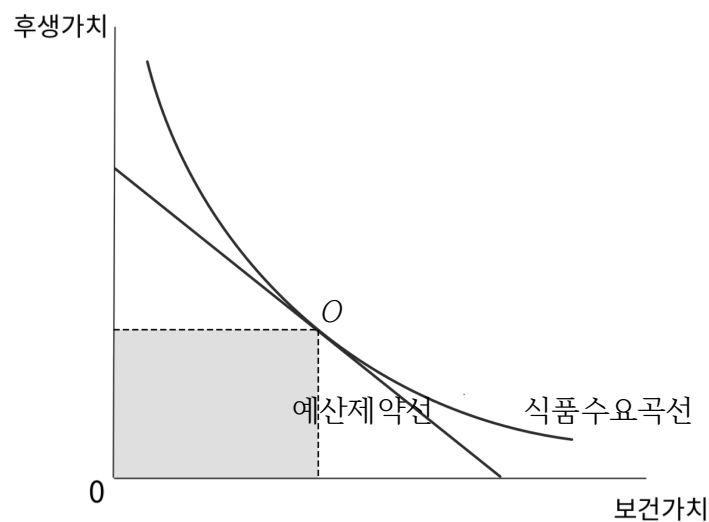
4. 소비자 인식 조사의 결과

4.1.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GAP 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

- 응답자들은 GAP보다 친환경인증에 더 익숙한데, GAP를 통해 농산물의 위생 등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함
 - 농산물의 안전성은 친환경과 GAP를 모두 인증받아야 안전하다고 인식(39.3%)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GAP를 모르고 친환경인증만 알고 있는 소비자들도 위생 기준을 강화한 GAP를 친환경과 함께 받아야 안전하다고 인식(34.7%)
 - ⇒ 이는 소비자의 후생(厚生)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농산물과 보건(保健) 가치를 높이는 GAP 농산물의 병행추진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방안임을 시사함

- 소비자의 예산제약 하에서 농산물 구매 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그림 4-10>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수요곡선의 접점(O)에서 형성
-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을 후생가치(건강증진의 가치), GAP 농산물이 주는 효용을 보건가치(질병예방의 가치)라 한다면 두 가치의 합이 최대화되는 지점은 접점(O)이 됨⁵⁵⁾
 - 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만으로 완전히 구현할 수 없는 식품안전의 속성을 GAP 인증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 농산물의 가치와 소비자 효용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 ⇒ 소비자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과 위생적으로 관리한 GAP 농산물이 각각의 가치로 나타나기보다는, 두 인증을 동시에 받을 때 효용이 가장 높다고 인식함을 보여줌

그림 4-10. 농산물의 후생가치와 보건가치의 효용극대 소비점



55) 김호탁 외(2016). 농산물 가격론, 이론과 정책. 제2장 수요이론

- 토마토의 가치 추정을 위해 실시한 선택실험법에서도 관행농업에 대한 가치 증가분이 1kg 당 유기농(2,125원), 무농약(1,731원), GAP(1,414원) 순으로 추가지불 의사가 나타나 GAP 인증 농산물의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
 - 컨조인트 선택 시 GAP는 친환경농산물과 다른 속성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가치 증가분의 차이로 친환경농산물이 GAP의 상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GAP의 추가 가치 1,414원은 그 자체로 가치 증가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GAP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 토마토 1kg 당 1,414원의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2.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조사와 유사

- 본 조사는 2017년 8월 살충제계란 파동 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어떠한지 분석할 수 있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선행 연구(2005, 2007)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살충제 계란 파동 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음

표 4-1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변화 (단위: 명(%))

조사기관 (연도)	매우 신뢰	신뢰	보통	불신	매우 불신	합계	신뢰도	
							5점 척도	백분율
이시도르연구소 (2017)	6 (2.0)	95 (31.7)	164 (54.7)	31 (10.3)	4 (1.3)	300 (100.0)	3.23	64.6
미래농정연구원 (2007)	8 (8.0)	39 (39.0)	29 (29.0)	19 (19.0)	5 (5.0)	100 (100.0)	3.46	6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21 (2.1)	302 (30.4)	542 (54.7)	118 (11.9)	8 (0.8)	991 (100.0)	3.28	65.6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도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영향이 없었지만, 여전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경쟁력 향상 등 인증제 자체의 신뢰도 제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
 -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GAP 병행 추진 방안 도입하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줌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1. 친환경인증과 GAP 연계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1.1.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

- 소비자가 인식하는 식품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안전성으로, 농산물의 가격 결정 요인으로 가장 큰 부분이 안전성이라 할 수 있음 (표 1-1 참고)
- 친환경농산물과 GAP에 대한 인식에서도 안전성 면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한 GAP가 더 안전하다고 인식 (표 4-4 참고). 이는 친환경을 GAP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소비자

에게도 같은 결과를 보임 (표 4-5 참고)

→ 가장 안전한 농산물은 친환경과 GAP를 동시에 받은 농산물로 인식

-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농산물은 잔류농약에 대한 리스크(화학적 위해요소)와 생물학적 위해요소가 모두 관리된 농산물임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GAP(12.7%)보다는 친환경농산물(32.7%)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으므로(표 4-3)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속성과 가치인 건강증진 및 후생가치에 농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성 및 보건가치를 보완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친환경농산물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GAP 인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계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선행 조건으로 GAP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
 - 두 번째 방법은 현행 제도와 같이 GAP와 친환경농산물을 분리하여 적용하되, GAP 기준의 일부인 위생 관련 기준을 친환경농산물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
- 친환경농업과 GAP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없이 GAP 인증의 기준 중 친환경농산물 기준에 없는 사항을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이 추가로 추진하여야 함
 - 친환경 농업인은 GAP 인증을 추가 획득함으로써 GAP 요건을 충족

- 친환경농업과 GAP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GAP 인증이 선행 조건이 아니므로 친환경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GAP의 위생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농업인은 보완된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와 연계하는 방안은 결국 친환경농산물과 GAP의 구조적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로서 각 방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함

1.2. 친환경과 GAP의 구조적 관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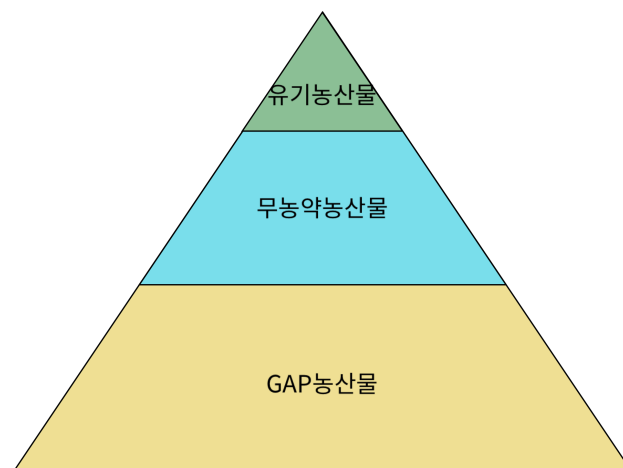
□ 친환경과 GAP의 통합적 연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친환경농산물과 GAP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을 단일화하거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서로 인증의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GAP 인증을 우선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

⇒ 두 인증 제도의 통합은 법률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GAP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 구조가 됨

- 친환경농산물 근거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GAP 근거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그림 5-1. 친환경농산물과 GAP 통합적 연계 개념도



-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과 GAP를 동시에 인증 받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표 4-11), 이에 대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이해관계자(농업인)들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문제
 - 국제적 동향 및 규범에 관한 문제
 - 인증 표시 운용의 문제

- 이해관계자(농업인)들의 수용가능성은 GAP 인증 추가 획득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이 GAP 인증을 얻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노력보다 클 경우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36% 수준으로, GAP 인증을 받더라도 소득이 같거나 나빠질 것으로 보는 생산자(64%)보다 낮음 (표 3-12)
 -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음으로써 소비자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농업인이 35% 수준으로, 오히려 신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생산자(41%)보다 낮음
 - 또한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더라도 두 인증표시를 동시에 사용하기보다(38%) 친환경인증 표시만 사용하겠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음(54%)
 - 이러한 결과들의 원인은 GAP가 친환경보다 낮은 단계로 인식되고 있어 GAP 인증 표시를 하면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친환경농업인들이 갖는 GAP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GAP 인증과의 병행이 가능할 것
 - 이에 비해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시설과 장비를 보완해야 하며,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 기록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GAP를 추가 인증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산출량)과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과 노력(투입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얻는 프리미엄 효과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GAP 인증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 경향과 규범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기인증과 GAP 인증의 제도가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된 사례를 검색한 결과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방법으로 적용

- 두 인증을 모두 획득한 생산자로서 PPC Farms LLC(미국), Inka Fresh S.A.C.(페루), Dole Pineapple(코스타리카) 등의 생산자는 유기인증(USDA NOP)과 GAP(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각각 획득
 - 두 인증제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제도의 목적과 기준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통합적 연계에 무리가 따르고, 통합적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유기농업의 목적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농업생태계와 환경보전을 통해 건강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GAP는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농약 사용 시에 적정사용과 수확·취급 시에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 기준
-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에서도 구분되는 것인데 농산물

의 안전성(Food Safety)은 GAP를 통하여 제공하는데 이는 모든 농산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되며, 유기농은 특수한 생산방법으로서 소비자에게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건강성(유기적 순수성, Organic Integrity)을 제공하는 것

- 두 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인증의 성격으로 유기인증은 소비자를 위한 표시를 사용하는 대소비자 인증(B to C)⁵⁶⁾이라면,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GAP 인증은 대부분 인증표시를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⁵⁷⁾ 사업자 간 소통에만 이용되는 대사업자 인증(B to B)⁵⁸⁾으로 성격이 크게 다름
 - 우리나라의 GAP는 대소비자 인증으로 인증마크를 소비자가 식별하여 비인증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GAP 중에서도 예외적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국제적 사례들로 볼 때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이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고 인증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인증 표시 운용의 문제는 생산자들에게 현실적 사안으로, 친환경농산물과 GAP가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된다는 의미는 GAP가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 PRP)으로 간주되는 것임. 이는 SSOP⁵⁹⁾와 GMP⁶⁰⁾가 HACCP의 선행요건(PRP)이 되는 구조와 유사함

56) Business to Consumer

57) 현재까지 파악된 GAP 프로그램 중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한국, 필리핀, 태국이며, 태국의 GAP는 민간이 설립한 인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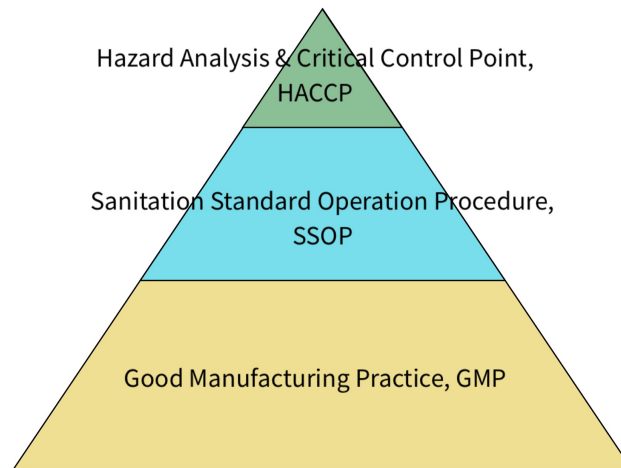
58) Business to Business

59) 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표준위생운영지침

60) 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서 농업에서 GAP가 제조업에서 GMP와 동등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을 위해서는 시설의 위생(GMP)과 운영자의 위생 및 안전의식(SSOP)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SSOP와 GMP는 HACCP보다 낮은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됨

그림 5-2. HACCP의 선행요건프로그램(PRП)



-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GAP가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이 되는 구조는 GAP가 친환경농업보다 낮은 단계로 인식될 수 있음
 - 현재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은 GAP가 친환경보다 낮은 단계의 인증으로 인식 (표 3-15 등 참고)
 - GAP를 친환경인증의 선행요건으로 간주하는 경우, GAP가 친환경인증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실제로 GAP가 하위 인증으로 공식화 될 것임
- 친환경농산물보다 낮은 단계로 인식된다면 친환경 농업인은 GAP 인증 표시를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됨
 - 이는 유기농산물 생산자가 무농약 표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맥락

- 하위 카테고리의 인증이라도 인증된 범위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생산자가 하위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음
- GAP가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이 되어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GAP 인증표시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요건을 갖추고도 인증의 프리미엄을 제공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의 표시와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 생산자의 역량 투입만 가중되는 결과가 우려됨. 즉, GAP에서 요구되고 있는 자재의 관리, 농작업자의 안전 관리, 토양중금속 검사 등 의무 이행사항이 확대
 - GAP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증비, 시험분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 결론적으로 GAP를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으로 하는 구조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현행과 같이 두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제고하여 가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을 GAP 보다 높은 단계의 인증으로 인식하여 GAP 인증의 추가 획득에 대한 부담과 프리미엄 확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
 - 국제적 규범으로 볼 때 유기농은 농업생태계와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후생의 목적으로 대소비자(B to C) 인증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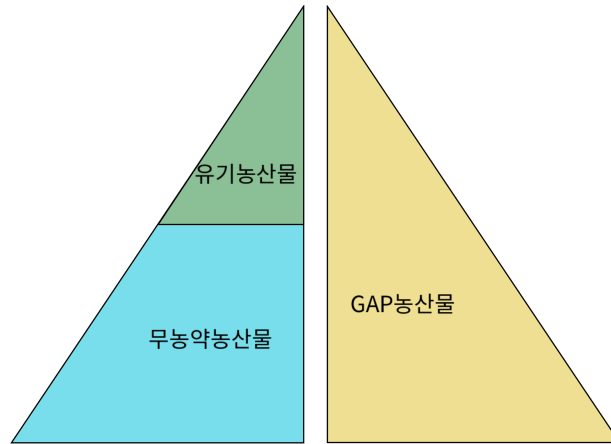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보건의 목적으로 대사업자 (B to B) 인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합된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기가 어려움

- GAP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GAP가 친환경의 하위 수준으로 인정되며, 그 경우 GAP 인증표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생산자에게는 동일한 친환경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효과만 발생

□ 친환경과 GAP의 독립적 연계 방안

-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음(39.3%, 표 4-4 및 4-5 참고)
 - 소비자는 화학적 위해요소(잔류농약 등)에 대한 위험(Risk)과 생물학적 위해요소(세균 등)에 대한 위험을 모두 중요시하고 있으며, 두 위해요소가 모두 관리되는 농산물이 더 안전하다고 인식
 - 안전성에 관해서는 생물학적 리스크(25.0%)를 화학적 리스크(20.7%)보다 다소 더 강하게 인식
-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서는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기준이 대부분이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억제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약함
 - 농산물 세척 용수의 수질, 취급 작업이 실시되는 장소, 운송수단의 청결이 요구되는 수준
 - 그밖에 작업자의 개인위생, 수확장비와 도구 등의 청결 등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미흡

그림 5-3. 친환경과 GAP의 독립적 연계 개념도



- 친환경과 GAP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에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상호 독립적인 구조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타당
 - 친환경은 농업생태계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운영
 - GAP는 농산물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의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식품안전을 기본 목적으로 하여 운영
- 다만, 현재 인증기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농산물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서 통합적 연계 방안에서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이해관계자(농업인)들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문제
 - 국제적 동향 및 규범에 관한 문제

- 인증 표시 운용의 문제
- GAP 인증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선행요건이 아니므로, 기존의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획득하는 일은 선택적이므로 생산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생산자에 따라서는 친환경과 GAP를 모두 표시하는 것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36%, 표 3-12 참고)하며, 친환경과 GAP 인증표시를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38%, 표 3-13 참고)
- GAP 인증을 자율에 맡길 경우 친환경인증에 선호도가 더 높은 생산자들은 위생관리 등 GAP가 가진 인증기준을 실천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위한 기준을 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및 신뢰성 향상
- 앞서 통합적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와 같이 유기농과 GAP는 목적과 인증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
 - 독립적 연계는 현행과 같이 두 제도가 분리 운영되도록 하되, GAP에서 요구하는 위생, 자재관리, 자연·자원의 관리, 농작업자의 보건안전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에게 GAP 인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 인증기관이 GAP 인증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면, 친환경과 GAP를 동시에 인증받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인증비용과 투입 역량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해외 인증기관들의 경우에도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두 인증을 모두 받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심사업무의 통합적 적용이 가능 ⇒ 인증비용과 투입시간의 절감
 -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증기관은 AB Cert(독일), Agrar-Control(독일), Agrocolor(스페인), Bio-agricert(이탈리아), CCOF(미국), CCPB(이탈리아), CUC(네덜란드), CQC(중국) 등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
 -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받은 생산자로서 PPC Farms(미국)와 Inka Fresh(페루)는 인증기관 BCS를 통해 USDA NOP와 GLOBAL G.A.P.을 동시에 획득하였고, Dole Pineapple은 인증기관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로부터 USDA NOP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획득

-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GAP의 가치를 각각의 인증표시로 나타낼 수 있음
 - GAP가 친환경의 하위 인증이 아니므로 두 개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생산자는 자신의 농산물에 인증표시를 동시에 또는 각각 부착하여 필요와 조건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은 통합적 연계보다는 독립적으로 연계하여 GAP가 친환경인증의 선행요건으로 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 연계 운영이 타당

1.3.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독립적 연계의 수준에 대한 검토

□ A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만을 강화하는 방안

○ GAP 인증기준에는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수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비하여 강화되어 있음

- 수확 작업 시 개인위생
- 기구·장비의 청결
- 수확물의 위생 관리
- 취급시설의 위생 기준
- 취급시설에서 개인위생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수준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학적 안전성에 더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로서 인식을 강화하고 신뢰도 제고가 가능

○ 다만, 친환경 생산자가 GA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기준 외 GAP 필수기준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함

□ B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인증의 필수기준을 모두 보완

○ GAP 인증기준에는 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친환경 인증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농경지 토양의 침식 방지,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환경 개선
- 비료의 보관 조건을 양호하게 유지(유기질 비료에도 해당)
- 폐비닐 분리수거, 생활쓰레기 소각 금지, 농경지 생물군 관리 등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기준
-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필수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비료의 보관은 유기질 비료에도 해당되는 기준으로, 농업 자원의 관리와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에서도 필요한 사항
- 생활쓰레기 소각, 농작업자의 안전 문제 등은 친환경농업에서도 개선해야 할 과제

○ GAP 인증을 위한 필수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모두 포함시키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음으로써 GA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음

- 이는 친환경과 GAP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때 GAP 인증을 선행요건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다름
- GAP를 친환경의 선행요건으로 하는 경우 GAP는 친환경보다

낮은 수준의 인증으로 간주되지만, 여기서는 두 제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환경 인증기준에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구조임

- 이 경우 GAP의 필수기준뿐만 아니라 권장기준은 여전히 실천과제가 되며, 권장기준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은 GAP의 독립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2.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보완 방안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경우 GAP 인증 추진여부는 생산자 자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GAP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2.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중 식품안전 관련 조항 분석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 토양 내 유해물질

(법⁶¹) 시행규칙 별표3의 2항 나.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업용지에서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등 21개 유해물질의 허용기준(단위: mg/kg) 제시
- 이는 유기농업에 특화된 기준이 아닌 일반 농지의 기준으로, GAP 기준과 차별이 없음
- 다만, 친환경농업의 경우 이미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용지라면,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GAP에서는 반드시 토양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GAP 인증 추진 시, 이 기준에 대해 부적합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토양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데 따른 비용과 노력의 추가 투입이 요구됨

6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으로 작성.

(인증요령 고시⁶²⁾ 별표1의 2항 나1))

-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유기합성농약 검출 0.01ppm 이하
- 일반 토양에서는 토양 내 잔류농약에 대한 제한이 없는 데 비하여 유기농산물 재배 토양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잔류농약을 관리하고 있어, 식품안전의 화학적 리스크는 0(영)에 가까움 (인위적 투입 화학물의 경우)

○ 재배용수의 수질

(법 시행규칙 별표3의 2항 나.3))

-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이어야 함
- 이는 유기농업용에 특화된 기준이 아닌 일반 농업용수 기준으로, GAP 기준과 차별이 없음
- 농업용수는 스프링클, 관주, 점적, 작물보호제 및 양분 살포 등에 이용되고 작물의 특성과 재배 방법에 따라 농업용수로 인한 생물학적 오염의 우려가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에서 용수로 인한 생물학적 오염을 우려하는 경우⁶³⁾
 -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산물 (딸기 등)
 - 용수가 가식부위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상추 등)
 - 가식부위가 껍질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토마토 등)
 - 용수의 수질 관리가 취약한 경우
- 우리나라 농업용수 기준에서는 총대장균군 5,000군수/100mL 이하
- 생물학적 오염 우려(Risk)가 높은 작물(딸기, 상추 등)의 경우

6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이하 '인증요령 고시'로 작성

63) 글로벌갭(GLOBALG.A.P.)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 Fruit and Vegetable Module, Annex 1

농업용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총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도록 추가적 관리가 필요⁶⁴⁾ (현재, 어린잎채소 등 일부 품목은 먹는물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인증요령 고시)

○ 농산물 세척 용수의 수질

(법 시행규칙 별표3의 2항 나.3))

-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이는 농산물 세척 후, 조리하지 않고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을 가정한 것으로, 생물학적 오염 우려를 고려할 때 타당한 기준임

○ 화학 자재의 잔류 리스크

(법 시행규칙 별표3의 2항 다.1))

- 유기농산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리스크는 0(영)에 가까움
- GAP 인증기준에서는 화학농약,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친환경농산물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높음
- GAP 기준에서 화학자재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경우’ 과다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GAP 농산물은 무조건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가축분뇨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 리스크

(법 시행규칙 별표3의 2항 다.3))

64)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관리를 언급하는 내용임.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농업용수 기준으로 충분함. 다만, 대장균군 등 생물학적 오염에 대한 요건을 오염리스크가 높은 작물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

-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자재는 ‘완전히 부숙’하여 사용하도록 하므로 생물학적 오염의 우려를 현저히 낮추게 됨
- GAP를 포함한 관행농업에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 자재의 경우 대장균 O157:H7과 살모넬라가 불검출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어 생물학적 오염의 리스크는 관리됨⁶⁵⁾
- 다만, 관행농업에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자재를 자가제조 또는 등록 자재가 아닌 경우에는 생물학적 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기농산물이 더 생물학적 리스크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유기합성농약의 잔류 리스크

(법 시행규칙 별표3의 2항 라.2))

- 유기합성농약의 검출은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단,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1항에 따른 잔류 허용기준의 1/20을 적용
⇒ 잔류농약에 따른 식품안전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짐 (0(영)에 가까움)

○ 저장, 수송 등 취급시의 오염 리스크

(인증요령 고시 별표1의 2항 라.1) 및 5항 라.3))

-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시 해당 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 작업장 시설과 장비의 청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의 개인 위생 등 일반적 위생기준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음

65)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의 설정 및 지정」 별표3의 1. 부숙유기질비료 01.가축분퇴비

2.2. 유기농산물 기준에서 취약한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 기준

GAP 기준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주요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으로, 농산물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⁶⁶⁾

○ 수확 작업 시 개인위생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준으로서, 농산물의 생물학적 오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기구·장비의 청결

“수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는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취급자 기준 포함)에는 농산물의 취급 장소와 수송수단에 대하여 청결을 요구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중 취급 장소와 수송수단 외에도, 농산물 취급에 이용되는 기구·장비의 청결을 포함하도록 보완이 필요

○ 수확물의 위생 관리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66)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별표1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농산물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 방지를 위하여 변질된 농산물과 이물질을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함
- ⇒ 유기농산물도 변질과 이물질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기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취급시설의 위생 기준

- 1)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교차오염 우려 시설과 구분
 - 2) 화장실, 세면 시설, 손 건조 시설의 비치
 - 3) 농산물이 접촉하는 작업장 바닥의 위생(되도록 바닥에 접촉하지 않도록 팔레트, 작업대 등을 사용)
 - 4)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
 - 5) 폐기물 및 폐수 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
 - 6) 지하수 사용 시 취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 유지
 - 7)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 소독, 건조
 - 8) 용수 저장 탱크는 덮개로 밀폐, 정기적 청소·소독
 - 9)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 : 유기농산물 기준과 동일
 - 11) 재순환된 물을 세척수로 사용하는 경우, 여과 및 수질 관리
 - 12) 여과 장치는 주기적 청소·관리
- ⇒ 제9항을 제외한 시설의 위생 기준은 유기농산물 기준에서 요구되지 않고 있어, 유기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시설의 전반적인 위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취급시설에서 개인위생

- 수확 작업 전 및 용변 후, 오염물질 취급 후에 손세척 및 건조
 -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예: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위생 장갑 등)
 -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
 - 작업장 사용 전후 청소, 청결 유지
 - 작업장 위생 관리 상황 기록
- ⇒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준으로, 농산물의 생물학적 오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개인위생 관리를 위한 최소 실천사항 다섯 가지를 요구(표 5-1)

표 5-1. 글로벌갭(GLOBALG.A.P.) 개인위생 수칙

위생수칙	요구 사항
손 세척	병원균이 식품에 옮지 않도록 작업 전에 손을 씻고 소독하기. 화장실 사용 후, 휴식 후, 식품·음료 섭취후, 흡연 후, 작업장 출입 전 실시
피부 상처 보호	피부에 난 상처가 있으면 상처 부위를 덮은 후 작업을 실시
흡연과 음식물 섭취 장소 이격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 음식물 섭취 가능. 작업장과 격리된 공간이어야 함
질병 증상이 있으면 작업에서 제외	고열, 구토, 황달,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작업에서 빠지고 관리자에게 보고
위생복 착용	규정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입은 채 작업장 밖으로 이탈 금지

2.3.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기준 보완 사항

-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련된 기준을 보완 -

- 친환경농산물은 식품안전 위해요소 중 화학적 위해요소(잔류농약 등)에 의한 리스크를 현저히 낮추었으나,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추가적 관리가 필요
 - 기존의 인증기준에 더하여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억제하면 보다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인증기준 중 청결이 요구되는 시설의 범위를 취급장소와 수송수단 외에도 관련 설비와 용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의 위생관리에 대한 요구를 담아, 다음 표와 같이 인증기준 개정을 제안함

표 5-2. 유기농산물에서 위생 관리 기준 보완을 위한 개정안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67)	별표1의 2. 라.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별표1의 2. 라. 1) 유기농산물의 <u>수확</u> ,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 <u>관련 설비, 용기, 운반 장비</u> ,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농관원고시	(없음)	별표1의 2. 라. 1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농관원고시	(없음)	별표1의 2. 라. 12)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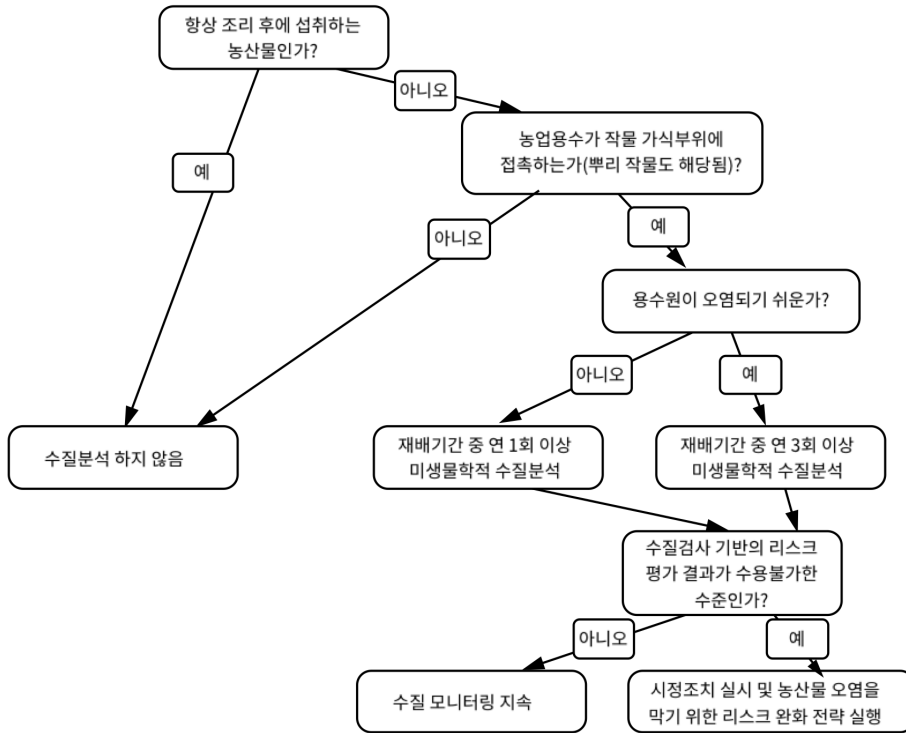
2.4. 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기준 도입 시기

-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물학적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보완하더라도, 안전성 관리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자 등의 준비가 필요

-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화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
 - ⇒ 생산자들은 개인위생 등 생물학적 리스크 관련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신규 기준 적용 시 예비 기간이 필요

- 따라서, 농산물의 유형에 따른 생물학적 리스크 분류를 통하여 기존의 단계적 적용을 제안함

그림 5-4. 글로벌갭(GLOBALG.A.P.)의 농업용수 수질검사 여부 결정 순서도



자료: 글로벌갭(GLOBALG.A.P.) Control Point & Compliance Criteria, Fruit & Vegetables

표 5-3. 생물학적 리스크 평가 예시 (GLOBALG.A.P. 팜어슈어, 이시도르연구소)

농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리스크 평가 주제	평가 내용
(1) 농장 내에 동물이 출입하거나 사육되는가?	질병의 매개가 되는 동물의 출입으로 인한 생물학적 오염 리스크
(2)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인가?	농산물 섭취 방법에 따른 식품안전 리스크
(3) 농업용수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는가?	생산 과정에서 식중독균 등에 오염된 용수 사용으로 인한 농산물의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4) 가식부위가 바닥의 오염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작물인가?	식품의 가식부위가 흙에 접촉되는지에 따라 생물학적 리스크가 변함. 예컨대, 사과, 배 등에 비하여 상추, 감자 등은 흙에 접해 있고, 생물학적 위험이 높은 불량 퇴비를 사용할 시 농산물이 오염될 리스크가 높음
(5) 농장 내에서 최종 포장되어 완제품이 되는가?	농산물이 최종 포장되는 곳이 농가라면, 농가의 포장 시스템에 위생 관련 규정이 요구되며, 농가 외 APC 등 전문 포장시설이라면 그에 따른 위생 규정이 요구됨
(6)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섭취가 가능한 농산물인가?	벼, 밤 등 껍질을 벗겨 섭취하는 농산물에 비하여, 딸기, 상추, 토마토 등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산물이 생물학적 리스크가 더 높음
(7) 수확 및 포장에 관계된 작업자들이 수확절차와 위생수칙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수확 및 포장 시설에 따라(농가 포함) 위생 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다르고, 식품안전 리스크가 달라짐
(8) 얼음이나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이나 식품의 오염우려가 있는가?	얼음 등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 냉매가 오염원이 될 수 있음

- 농산물의 생물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인증 프로그램인 글로벌겍(GLOBALG.A.P.)의 경우 그림 5-4와 같이 농업용수의 생물학적 수질 분석 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
 - ⇒ 리스크 분석 순서도 내용 중 농산물의 유형에 관련된 생물학적 리스크는 다음 두 사항이 있음
 - 조리하지 않는 농산물이라면 농업용수의 리스크 관리 필요
 - 관수, 농약살포, 액비살포 등 농업용수 사용 시 용수가 가식부위에 접촉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 필요

- 국내의 글로벌겍(GLOBALG.A.P.) 공인 컨설팅기관⁶⁸⁾인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는 농산물의 생물학적 오염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로 8가지 점검 사항을 적용 (표 5-3)
 - ⇒ 생물학적 리스크 평가지표 중 농산물의 유형에 관련된 생물학적 리스크는 (2), (4), (6)에서 언급
 -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인가?”
 - “가식부위가 바닥의 오염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작물인가?”
 -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섭취가 가능한 농산물인가?”

- 글로벌겍(GLOBALG.A.P.)과 이시도르연구소의 생물학적 리스크 분류 방법에 따라 농산물의 유형을 오염원이 가식부위에 일상적으로 접촉하는지와 섭취 전에 가열조리를 하는지에 따라 리스크 상, 중, 하로 분류 (표 5-4)

68) 글로벌겍(GLOBALG.A.P.)은 국제적으로 역량이 높은 컨설팅 기관을 공인하여 Farm Assurer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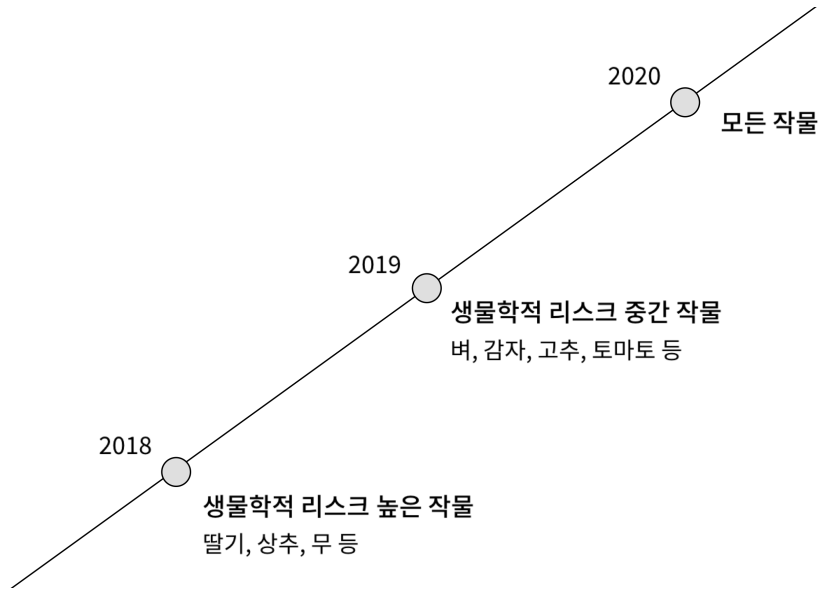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도입하는 시기를 리스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리스크 下: 콩, 옥수수 등 리스크가 낮은 작물까지 포함한 모든 작물은 2020년부터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 적용
- 리스크 中: 벼, 감자, 토마토, 사과 등 리스크가 중간 수준인 작물은 2019년부터 적용
- 리스크 上: 딸기, 상추, 무 등 리스크가 높은 작물은 2018년부터 적용

표 5-4. 작물 유형에 따른 생물학적 리스크 분류

리스크 수준	작물 유형	예시
리스크 상(上)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는 농산물 중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	딸기, 상추, 배추, 무
리스크 중(中)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는 농산물 중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농산물	벼, 감자, 고구마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지 않는 농산물 중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사과, 배
리스크 하(下)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지 않는 농산물 중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농산물	콩, 옥수수

그림 5-5. 친환경농산물에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 단계적 도입안



3. GAP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

- 생물학적 식품안전 관련 기준 외의 사항들 -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호 연계하게 되면 GAP 인증의 추진 여부는 생산자 자율에 따르게 되나, 친환경농산물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GAP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절에서는 친환경인증 생산자가 GAP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제시함

3.1. 친환경 인증기준이 GAP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도출

- 제1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련된 기준 외에, 본 절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전문을 검토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통해 충족되는 기준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없거나 다른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파악함
- 본 절에서 도출된 사항은 (1) 친환경 인증기준에 반영하는 방안과 (2) 생산자 자율에 따라 보완 후 GAP 인증을 추진하게 하는 방안이 있음
- 제4절에서 친환경 인증기준 개정안을 제안할 때에는 (1)안에 따라 친환경 인증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절의 2.2에서 요약된 사항들을 제안하였음

1)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충족

- 인증 대상 농산물의 추적성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요구되는 경영관련 자료를 통해 충족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농산물·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를 기록하여야 함
 -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의 추적성을 평가
- 인증 대상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하는 일은 친환경농산물과 GAP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 GAP에 관한 기록은 보존 기간이 1년(출하일 이후)이나,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여, GAP 적용에 문제가 없음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충족

- GAP에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른 시중 유통 종자를 사용하거나, 자가채종시에는 종자 생산정보를 기록하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서 종자는 유기종자 또는 건강한 종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게 하므로 GAP 기준과 차별되지 않음

3) 농경지 토양 관리⁶⁹⁾ : 친환경농산물 재배 토양의 토양침식 방지, 토양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토양의 유해물질 등의 기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과 동일

○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우수관리기준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에서도 토양의 입단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므로 친환경 인증기준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4) 비료 및 양분 관리 : 유기질 비료의 보관 기준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유기질 비료를 중심으로 투입하고 과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GAP보다 높으므로, 토양 양분의 분석, 비료의 사용 및 그 기록에 관한 기준은 충족됨

○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우수관리기준 4-2)

69) 밑줄 그은 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보다 높은 요구 사항을 뜻함

“비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비료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물 관리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충족

-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은 동일한 법령⁷⁰⁾이 적용되어 차별이 없음
 - 질소, 인 성분을 적용 예외로 하는 방안도 동일
- 다만, 농업용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용수원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예컨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 천공 주변에 퇴비사 등 오염원이 지하수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이는 9)항에서 언급됨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충족

- 화학농약이 사용되지 않는 친환경농업에서 농약의 사용, 살포장비, 잔류농약, 농약의 보관 및 관리 등 전반적 사항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자재라 할지라도 인체 독성 등의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인증 농가를 지도할 필요는 있음

7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 7) 수확작업 및 보관 : 제1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추가적 기술은 생략함
(생물학적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준)
-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 제1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추가적 기술은 생략함 (생물학적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준)
-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 환경과 농업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세부 실천이 요구됨
- 친환경농업의 주요 목적은 환경과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임에도⁷¹⁾ 구체적인 인증기준으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비해 GAP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관리, 용수원 보호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인증기준에 반영하였음
-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우수관리기준 9)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농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

71)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농장 및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염원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농경지에 서식하는 생물군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재배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농작업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이 요구됨

○ 친환경농업의 주요 목적에는 농업인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⁷²⁾ 구체적인 인증기준으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비해 GAP는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사고 등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인증기준에 반영하였음

○ GAP 인증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농산물우수관리기준 10)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72) 친환경농어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고, 모든 농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응급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휴식과 근로시간, 농업인의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교육 : 농업인이 GAP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인증이 가능

3.2. 친환경농가의 추가 GAP 인증을 위한 ‘필수’ 요건 요약

- GAP 인증기준은 ‘필수’와 ‘권장’으로 등급이 나뉘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3.1.에서 GAP 인증기준에 미흡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분석하였고(밑줄이 그인 항), 이 중 ‘필수’ 기준에 해당하는 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보완해야 함
- 가. 비료의 적치 및 보관 : 유기질 비료, 퇴비 등 비료를 보관할 때(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 포함), 농산물, 포장재, 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소를 지정하고 구분 관리할 것
- 나. 비료의 유출 방지 : 유기질 비료, 퇴비 등 비료가 강우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다. 수확 및 취급 작업자의 개인위생 : 개인위생 및 질병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물학적 오염 방지
- 라. 취급 시설 및 도구의 청결 : 수확 후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설비, 용기, 운반 장비 등 전반적인 시설의 청결 유지 (농가 내 시설을 포함)

- 마. 농업용수원의 오염 방지 :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농업용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 바. 폐기물 분리수거 : 폐비닐 등을 분리수거하여 폐기물 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
 - 사.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제거 또는 효과적으로 제어
 - 아. 교육 : 가~아 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GAP 기준을 숙지
(2년에 1회 교육)
- 이상과 같이 요약된 필수 GAP 기준에 대한 보완 사항(가~아)만을 심사 포함시킴으로써 GAP 인증기준 전부를 평가할 필요가 없음
 - 나머지 GAP 기준들은 친환경인증을 통해 충족되었으므로, 요약된 추가요건만을 심사하도록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음
 - GAP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농가)이 친환경인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요약된 추가요건만을 심사하도록 절차 간소화 정책이 필요

4. 인증 절차 간소화 방안

4.1.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GAP 인증추진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 제3장에서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GAP 인증을 추가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심사 및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GAP 인증기준 중에서 식품안전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CCP)⁷³⁾ 작성, 시설 및 작업인력의 위생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친환경인증 농가가 GAP 인증을 추가로 받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면 GAP 인증으로 유도가 가능. 이에 대한 방안으로:
 - (1)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신청하여 한 번의 절차로(인증신청서류 및 기록관리 포함) 두 인증을 동시 추진,
 - (2) 한 사람의 심사원이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GAP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 친환경과 GAP는 인증기준이 유사한 항목들이 있어, 친환경인증 심사 과정에서 GAP 인증기준의 다수가 두 기준에 중복되므로 해당 기준들은 이미 심사가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인증기관은 중복되지 않은 사항들만 추가로 체크하여 GAP 심사

73) Critical Control Point

와 평가가 가능하므로 심사원과 심의관의 투입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생산자는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GAP 인증을 위한 추가 심사 사항만을 준비하면 되므로 심사비용과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4.2. 친환경인증기관을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친환경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비교

친환경 인증기관과 GAP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열거한 기준서의 콘텐츠와 구성(콘텐츠의 순서)이 같음. 본 절에서는 각 콘텐츠별로 두 지정기준을 비교하였음. 본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두 기준이 완전히 같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비교가 의미 없는 경우임 (예컨대, 인증업무의 일반 원칙,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수수료 등)

표 5-5.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비교

비교 사항*	세부 기준		친환경인증기관의 보완 필요성
	친환경인증기관	GAP 인증기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직접적 규정 없음	불필요
운영자금	3개월	6개월	필요
심사원 겸직	불가능	가능	불필요
상근심사원 수	5명	2명	불필요
심사원 최대 관리 농가수	400명/연	1,000명/연	필요 ⁷⁴⁾
사무실 건축 유형	제한 없음	주택은 불가	불필요
심의관 자격기준	자격증 및 업무경력	없음	불필요
심의관 최대 심의 건수	15건/일	제한 없음	불필요
심의관 준수사항	준수사항 7개항	없음	불필요
업무 독립성	신청인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규정 없음	불필요
기타	인증품 포장재 검토 필수	규정 없음	불필요

*비교사항은 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두 기준이 완전히 같거나 비교의 의미가 없는 기준들을 제외하고, 친환경인증기관이 유의해야하는 사항만을 포함시켰음. 두 지정기준의 모든 사항을 비교하려면 부록1 참조

74) 심사원당 최대 관리 농가 수에 대한 요건은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에 비해 사실상 더 강화되어 있으나, 한 심사원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최대 관리 농가 수의 보완이 필요함

1.가. 조직

-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금지 ⇒ 두 기준 동일
- 친환경인증기관은 3개월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 GAP 인증기관은 6개월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 ⇒ 친환경인증기관의 보완 필요
- GAP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의관이 인증심사원과 겸직할 수 있으나, 친환경인증기관에서는 금지
- 친환경인증기관에서는 인증 관련 컨설팅 또는 서비스 제공 금지하고 있으나, GAP 인증에는 해당 조항은 없음 ⇒ GAP 인증기관 기준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ISO 17065에 준하여 인증기관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두 기준 동등

1.나. 인력

- 친환경인증기관의 상근심사원 보유수는 5명, GAP 인증기관은 2명
- 상근심사원의 1인당 연간 관리 농가 수는 친환경인증은 400농가 이하, GAP 인증은 1,000농가 이하로 관리를 해야 함
- ⇒ 친환경인증기관의 요건이 GAP 인증기관에 비해 2.5배 더 높으나, 기존 친환경 심사원이 GAP 심사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심사원의 농가 관리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친환경인증기관의 보완 필요

2.가. 사무실 등

- GAP 인증기관으로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음
- ⇒ 친환경인증기관 기준에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두 기준 동등

3.다. 인증심의회 운영 방법

- 친환경인증 심의회는 관련분야(농업분야)의 기사 자격과 관련 업무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GAP 인증기관 기준에서는 심의회 자격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친환경인증의 심의회는 1인 1일 15건으로(또는 150사업자) 제한되어있음. GAP 인증심의 1일 제한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인증기관 자율에 따름

3.사. 인증심사원·인증심의회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 친환경인증기관 기준에서는 심의회의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등 7개항의 심의회 준수사항 제시). GAP 인증기관 기준에서는 심의회 준수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3.차. 인증업무의 독립적 수행체계

- 친환경인증 접수 시 신청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함. GAP 인증기관에게는 요구되지 않음

3.카. 기타

- 친환경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도록 함. GAP 인증기관에게는 요구되지 않음

□ 친환경인증기관의 GAP 인증 권한 부여의 타당성

4.2항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인증기관의 운영자금 관련) 외 모든 기준에 대해 친환경인증기관의 요건이 GAP 인증기관보다 높거나 동등하고, 심사원 1인당 최대 관리농가수에 대한 영향은 보완이 필요. 따라서 현 친환경인증기관이 다음 두 가지를 보완하면 GAP 인증기관 지정이 가능

○ 1.가.4) 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친환경인증기관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의 운영자금이 확보된 친환경인증기관에게 자격 부여 가능
- 또는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6개월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

○ 1.나.1)가) 상근심사원 1인당 연간 400사업자 이하를 심사

- 심사원 1인당 연간 최대 관리 농가수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우 400농가, GAP 인증농가의 경우 1,000농가이므로 GAP 농가 2.5명이 친환경농가 1명으로 대치(代置)하는 규정을 설정
⇒ GAP 2.5농가를 친환경 1농가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법 도입

결론 :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 권한을 부여하여도 지정기준에 적합
다만, 인증기관이 6개월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심사원당 관리농가 수를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개정이 필요

4.3. 친환경인증 심사원에게 GAP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방안 검토

- 두 인증을 동시 추진할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 명의 심사원이 친환경, GAP 심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의 경우 하나의 인증기관에서 농식품 관련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으며, 심사원이 해당 인증 프로그램 자격들을 다중 획득 시 동시에 심사가 가능
 -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QAI 등) 유기심사원이 글로벌갭(GLOBALG.A.P.) 심사원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1회의 심사로 유기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처리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경우에도 같은 심사원이 두 제도에 대한 심사원 자격을 동시에 획득 가능
- 본 절에서는 GAP 인증심사원 자격과 친환경인증 심사원 자격을 비교 검토하여, 친환경 심사원이 GAP 심사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표 5-6>에서 GAP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모든 경우에 대해 친환경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보다 낮거나 같음
 - 친환경심사원 자격기준으로 요구되는 기사자격증은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제 이상의 산업대학 등을 졸업 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획득이 가능하므로, GAP 심사원의 학력기준을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됨

- 이밖에 심사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GAP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현 친환경인증심사원이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GAP 심사원의 자격을 획득 가능
 - GAP 심사원 교육 기관 : 농촌진흥청, 농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GAP협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표 5-6. 친환경 및 GAP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비교

GAP 인증심사원	친환경인증 심사원	기준 비교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p> <p>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친환경심사원 자격기준이 더 강함</p> <p>주)기사이상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학과 4년제 학위 또는 2년제+2년의 경력이 요구되므로 75)</p>
<p>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p> <p>가)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동등함</p>
<p>라)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마)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16년 3월 24일까지 경력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정한다)</p>	<p>친환경심사원 자격기준이 더 강함</p>

7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2

5.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5.1. 친환경 인증기준 개정 방안 요약

제2절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친환경 인증기준에서 미흡한 식품안전 관련 기준, 제3절에서 분석된 GAP에 미달하는 주요 기준, 제4절에서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보완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제안을 요약함

여기서 생물학적 안전성 보완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 사항이며, 그밖에 보완 사항들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GAP 인증기준의 ‘필수’ 기준들 중 친환경 인증기준에 미흡한 점들을 개선 제안하는 것임

생물학적 안전성과 그밖에 GAP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반영하도록 개정한다면, 친환경인증을 받을 경우 GAP 인증기준에 충족되어 한 번의 심사으로써 GAP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가능

□ 인증기준 개선 제안

○ 생물학적 안전성의 보완 : 취급시설 및 도구의 청결

현 기준에서는 취급 장소와 수송 수단에 대한 청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설비, 용기, 운반 장비 등 시설 전반에 청결이 유지되도록 개선

- 생물학적 안전성의 보완 : 수확 및 취급 작업자의 위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서 강조되는 화학적 위해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수확작업 및 수확 후 작업 시에 개인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비료의 적치 및 보관
유기질비료 및 화학비료(무농약 인증)의 보관 시, 농산물, 포장재, 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 비료의 유출 방지
유기질비료 및 화학비료가 강우 등으로 유출되면 수질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농업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적정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개선
- 농업용수원의 오염 방지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수는 사용 시의 수질뿐만 아니라, 그 용수원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생산자의 주의와 관리를 요구
- 폐기물 분리수거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투기, 방치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분리수거하여 농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함
-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농기계, 전기사용,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요소의 관리를 통하여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도록 개선

□ 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제안

- 인증기관 운영자금 확보 : 현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상향 조정
- 심사원 1인당 관리 사업자 수의 한계 조정 : 친환경 인증심사원이 GAP 심사원을 겸직하는 경우 2.5명의 GAP 농가를 1명의 친환경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5.2. 개선 제안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 5.1절에서 요약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구체적 개정안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 표의 내용 중 인증기준은 유기농산물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는 개정안으로, 무농약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5-7.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개정안 제안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7-32 76)	별표1의 2. 라.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별표1의 2. 라. 1) 유기농산물의 <u>수확,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 관련 설비, 용기, 운반 장비, 수송수단의 청결</u> 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라. 1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7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7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1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라. 12)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별표1의 2. 마. 8)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의 2. 마. 8)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농산물, 포장재, 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마. 11)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나. 14)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나. 15) 농업 자재의 용기, 페비닐 등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고,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 31 77)	(없음)	별표1의 1. 나. 1) 라) 심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심사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자 2.5인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사업자 1인으로 환원하여 계산한다.

- 4절에서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GAP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토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은 모든 요건에서 친환경인증이 GAP 인증보다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현 인증기관과 심사원은 모두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
 - 유일하게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친환경인증기관보다 강한 기준은 6개월 이상의 인증기관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친환경인증기관은 3개월 이상)이므로 이에 대한 요건으로 GAP 인증기관과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 심사원 1인당 관리 농가 수는 친환경인증기관의 기준(400농가/연)이 GAP 인증기관(1,000농가/연)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한 심사원이 두 역할을 하는 경우 친환경 관리 농가 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보완 방법을 제시하였음
 - 친환경 1농가를 GAP 2.5농가로 대치하여 계산하도록 함

- 표 5-7의 개정안과 같이 친환경 인증기준이 보완된다면, 친환경 생산자는 GAP 인증기준의 모든 요건에 맞게 되는 것이므로, GAP 인증 절차에서만 수용된다면 GAP 인증을 친환경 생산자에게 발급할 수 있음

- GAP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친환경인증기관들이 GAP 인증기관 지정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령과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의 개정의 추진이 필요함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6.1.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 운영자금에 대한 요건을 제외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보다 모든 요건이 강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3개월의 기관 운영자금 확보,
GAP 인증기관은 6개월의 기관 운영자금 확보를 요구
-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GAP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에서 수용 여부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표 5-8과 같이 요약
- GAP 인증기관 지정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관과 동일 ⇒ 지정 세부 절차는 농관원 고시에 따라 진행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심사, 결정은 농관원 고시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심사에서 이미 실시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방문은 GAP 인증기관 지정심사 시 같은 요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2중의 심사가 됨
 -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이 더 강하므로 GAP 인증기관 기준에 미흡한 점이 없음 (단, 운영자금 6개월분 확보 요건은 예외)

- GAP 인증기관 지정절차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심사의 결과를 인정한다면, 인증기관 지정 절차는 매우 간소화됨

표 5-8.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법령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②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령 제42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시행규칙 제19조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제19조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p>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제4조</p>	<p>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현지 방문 심사 시 인증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p>
---	--

○ 따라서,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친환경인증기관이라면 GAP 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함

표 5-9.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p>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⑨ (없음)</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⑨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제26조제1항, 「<u>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29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⑤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제4조	(없음)	⑤ <u>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⑨에 따라 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제5조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또는 <u>심사를 생략한 사유에 따라</u>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별표1의 1. 나. 1) 나)	(1) 인증심사원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 다음의 인증심사원 확보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본문 생략) (나) (본문 생략) (다) (본문 생략) (라) (없음)	<u>(라) 심사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사업자 1인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자 2.5인으로 환원하여 계산한다.</u>

7. 친환경인증농가의 글로벌갭(GLOBALG.A.P.) 연계 및 수출 활성화 방안

7.1. 국내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현황

- 국내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는 390농가 /30건으로 생산자 단체 16건과 독립생산자(개인농가) 14건이 있음
- 인증 품목은 감귤, 배, 포도, 사과 등 과수가 13건, 버섯류가 7건, 인삼 4건, 파프리카 3건순이며, 상대적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이 인증을 받고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은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가 수출을 계획할 때 인증을 추진
 - 글로벌갭(GLOBALG.A.P.)은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본적인 실천 사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 시장에서는 유기농업 여부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6건으로 그 중에 5건은 버섯, 1건은 파프리카임
 - 가장 비중이 큰 과수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가 희박함
 - 버섯은 과잉생산으로 국내 시장보다 수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친환경농산물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경우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및 USDA NOP, EC834/2007, JAS 등의 선진국 유기인증을 획득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산 과수, 버섯, 인삼, 파프리카의 품질이 우수하므로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표 5-10. 국내 글로벌갭(GLOBALG.A.P.) 인증현황
(2017년 9월. 자료: 글로벌갭(GLOBALG.A.P.) 제공)

GGN ⁷⁸⁾	생산자명	지역	품목	친환경인증	농가수
4050373642211	젝스코리아	제주	감귤	X	138
4050373624040	나주배생산자연합	전남	배	X	15
4050373930073	화성포도생산자협회	경기	포도	X	14
4050373981310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	대구	사과	X	55
4052852303750	충북원협APC	충북	사과	X	9
4052852411745	천안배생산자협회	충남	배	X	14
4056186381712	청송사과APC	경북	사과	X	24
4056186825193	김포파주인삼생산자협회	경기	인삼	X	19
4056186431738	탐진교역	전남	파프리카	X	4
4056186806581	서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북	포도	X	30
4056186811080	참배수출(주)	경북	배	X	12
4056186850447	경북능금농협 안동APC	경북	사과	X	10
4059883070835	조은그린	강원	파프리카	X	2
4056186831798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	충남	배	X	4
4056186869173	글로벌단감생산자협회	경남	단감	X	8
4049928606754	그린합명	경북	버섯	무농약	18
4050373572754	QKC	서울	버섯	X	1
4050373595029	놀이인삼	충남	인삼	X	1
4056186372901	한사랑	경남	인삼	X	1
4056186885159	주재성	강원	파프리카	무농약	1
4056186751706	남경오가닉팜	경남	버섯	무농약	1
4056186839190	영농조합법인 KOREA FARM Engaging	경북	버섯	무농약	1
4056186948441	문산버섯생산자조합	경남	버섯	X	1
4056186842411	삼드림	충남	인삼	X	1
4059883114768	참농부	경기	취급자 ⁷⁹⁾	X	1
4056186885142	경남딸기생산자협동조합	경남	딸기	X	1
4059883125191	대홍농장	경남	버섯	무농약	1
4056186983794	연우	충북	버섯	유기	1
4059883114782	한스농업	강원	상추	X	1
4056186758354	이상진	경북	사과	X	1
합계					390

7.2. 친환경농업과 글로벌갭(GLOBALG.A.P.) 연계 방안

- 친환경농업과 글로벌갭(GLOBALG.A.P.)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으로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주로 수출 생산자들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인증서가 요구되어 인증을 추진
 - 친환경농산물 여부에 관계없이 글로벌갭(GLOBALG.A.P.)은 수출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
 - * 모든 수입업자가 글로벌갭(GLOBALG.A.P.)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품질의 기본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빈번히 요구되는 인증임

-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200개의 기준에 대해 95%이상 충족해야 인증됨⁸⁰⁾

- 200개의 글로벌갭(GLOBALG.A.P.) 기준 중에는 화학농약, 화학비료에 관계된 기준이 있어, 유기농을 실천하는 경우에 화학자재에 관련된 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음
 - 유기농을 실천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총 80개로, 200개 중 120개의 기준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
 ⇒ 따라서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는 것이 관행농산물 생산자에 비해 용이

- 적용되는 글로벌갭(GLOBALG.A.P.) 기준들 중에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미 충족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음
 - 예컨대, 추적성, 종묘관리, 토양관리, 영농기록 등은 친환경 인증 기준에서도 요구되는 바, 친환경인증 농가는 이미 충족

78) 글로벌갭(GLOBALG.A.P.) Number

79)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취급자를 CoC(Chain of Custody)로 부름

80) 정확히 말하자면, 글로벌갭(GLOBALG.A.P.) 기준 중 필수기준(Major Must)은 100%, 준 필수기준(minor must)은 95% 이상 적합하여야 함. 200개 기준 외에도 권장기준(Recommendation)이 약 20개 있으나 인증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

표 5-11. 유기농가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적용 시 적용되는 기준
(권장기준 제외)

구분	글로벌갭(GLOBALG.A.P.) 기준(V5.1)	유기농에 해당 여부	기준 수
AF1.생산지	AF1.1. 생산지 이력	적용	2
	AF1.2. 생산지 관리	적용	2
AF2.기록	AF2. 기록 및 자가점검	적용	3
AF3.위생	AF3. 위생	적용	4
AF4.작업자	AF4.1. 건강과 안전	적용	3
	AF4.2. 교육	적용	2
	AF4.3. 안전시설	적용	5
	AF4.4. 보호장구	적용	2
	AF4.5. 작업자 복지	적용	5
AF5.위탁	AF5. 위탁사업자	적용	1
AF6.폐기물	AF6.1. 오염원의 식별	적용	1
	AF6.2. 폐기물/오염원 처리	적용	3
AF7.환경	AF7.1. 생태계 영향	적용	1
	AF7.2. 비생산 지역 보호	적용	0
	AF7.3. 에너지 효율	적용	1
	AF7.4. 용수의 수집 및 순환	적용	0
AF8.불만	AF8.1. 불만 처리	적용	1
AF9.리콜	AF9.1. 리콜 절차	적용	1
AF10. 식품보안	AF10. 식품보안	적용	1
AF11.표시	AF11. 글로벌갭(GLOBALG.A.P.) 표시	적용	1
AF12.로고	AF12. 로고 사용	적용	1
AF13.추적성	AF13. 추적성 및 구분관리	적용	4
AF14. 매스밸런스	AF14. 투입/산출 분석	적용	3
AF15. 식품안전정책	AF15. 식품안전정책 선언	적용	1
AF16. 식품기만	AF16. 식품기만의 방지	적용	0
CB1.추적성	CB1. 추적성	적용	1
CB2.종묘	CB2.1. 종묘의 품질	적용	3
	CB2.2. 화학적 처리	NA ⁸¹⁾	2
	CB2.3. GMO 사용	NA	5
CB3.토양	CB3. 토양 관리	적용	6
CB4.비료	CB4.1. 비료의 전문가 자문	NA	1
	CB4.2. 사용 기록	NA	6

구분	글로벌갭(GLOBALG.A.P.) 기준(V5.1)	유기농에 해당 여부	기준 수
	CB4.3. 비료 보관	NA	7
	CB4.4. 유기질 비료	적용	3
	CB4.5. 비료의 성분	NA	1
CB5.용수	CB5.1. 관개 수요 측정	적용	1
	CB5.2. 관개 관리	적용	3
	CB5.3. 수질	적용	5
	CB5.4. 용수의 공급	적용	2
	CB5.5. 용수 탱크	적용	0
CB6.IPM	CB6. 종합적 해충 관리	적용	5
CB7. 작물보호제	CB7.1. 작물보호제의 선택	NA	4
	CB7.2. 작물보호제의 전문가 자문	NA	1
	CB7.3. 사용기록	NA	8
	CB7.4. 수확 전 안전사용기간	NA	1
	CB7.5. 남은 혼합액	NA	1
	CB7.6. 작물보호제의 잔류 분석	NA	7
	CB7.7. 작물보호제 보관	NA	15
	CB7.8. 작물보호제 취급	NA	4
	CB7.9. 빈 작물보호제 용기 관리	NA	6
	CB7.10. 오래 된 약제	NA	1
	CB7.11. 자가 제조	적용	1
CB8.장비	CB8. 장비 관리	적용	3
FV1.생산지	FV1.1. 리스크 관리	적용	2
FV2.토양	FV2.1. 토양 관리	적용	2
FV3.상토	FV3. 상토	적용	2
FV4.수확전	FV4.1. 수확 전 작업용수의 수질	적용	4
	FV4.2. 가축 분뇨	적용	1
	FV4.3. 수확 전 점검	적용	1
FV5.수확(후)	FV5.1. 위생의 원칙	적용	6
	FV5.2. 위생 시설	적용	5
	FV5.3. 수질	적용	1
	FV5.4. 포장/저장 시설	적용	9
	FV5.5. 온도/습도 관리	적용	1
	FV5.6. 해충 관리	적용	3
	FV5.7. 세척	적용	2
	FV5.8. 수확 후 화학 처리	NA	10
합계			200
적용되는 기준의 합계			120

- 게다가, 버섯은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재배하므로 토양에 관계된 기준은 추가적으로 면제됨
 - 친환경인증을 받은 버섯에 대해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을 때, 다른 작물에 비하여 매우 수월하게 추진 가능

-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기관들 중에는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이 가능한 기관들이 있어, 친환경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사업을 동시에 허가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추진한다면 농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국내 소재 인증기관들 중에 친환경농산물과 글로벌갭(GLOBALG.A.P.)을 동시 인증할 수 있는 기관: 컨트롤유니온, 건국에코서트, BCS 등
 -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이 가능한 친환경인증기관들에게 충분한 인원의 심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갭(GLOBALG.A.P.)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

- 글로벌갭(GLOBALG.A.P.) 독일 본부에서는 전문 컨설턴트(팜어슈러, Farm Assurer)를 심의하여 공인하고 있고, 국내에 3인의 팜어슈러가 활동 중
 - 팜어슈러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자가점검(Self-Assessment),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 종합적해충관리(IPM), 위생시스템 설계 등을 지도하고, 현장심사 시에도 입회하여 생산자를 대변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따라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도록 팜어슈러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수출 농업인 양성 및 친환경 농가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7.3. 친환경농산물의 수출 활성화 전략 제안

□ 수출 유망 작물에 대한 선별적 지원

- 국내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현황을 보면 총 30건의 인증 생산자들은 과수, 버섯, 인삼, 파프리카 등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품목이 대부분
 - 과실의 당도, 식감 등 품질이 다른 나라의 것에 비해 우수함
 - 인삼 종주국으로서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전략 필요
 - 버섯과 파프리카는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이 월등히 높음
(한국과 일본이 품질을 경쟁)
-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은 국내 수요보다는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므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과수, 버섯, 인삼, 파프리카에 대해서 수출 의향이 있는 생산자에게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의 권장 정책 도입
 - 국내 수요에 대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적용하고, 수출 의향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글로벌갭(GLOBALG.A.P.)을 유도
- 과수 중 사과, 배 등은 친환경인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친환경 생산이 가능한 포도, 감귤, 키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갭(GLOBALG.A.P.) 인증비 및 컨설팅비(공인 컨설턴트에 한하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마케팅의 기회 부여
- 버섯과 파프리카는 수출전략 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 버섯은 배지 기준을 완화하여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글로벌갭(GLOBALG.A.P.)을 동시에 적용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 미국 등 수출 상대국의 유기인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USDA NOP 인증 추진 권장
 - 유럽연합의 유기농 버섯의 배지 기준은 유기인증을 받은 배지원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EU 유기농인증은 사실상 불가능

⇒ 유럽연합은 유기농으로 수출하기는 어려우나 글로벌갭(GLOBAL G.A.P.)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음

표 5-12. 유기농 버섯 배지 기준 개선안

현행 유기농 버섯 배지 기준	미국 유기농 버섯 배지 기준	개선안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 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GMO가 아니라면 관행농업 유래의 배지 원료도 사용가능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 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

○ 다만, 유기농 버섯 배지 기준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기준에서 완화함에 따른 수출 활성화 효과 및 국내 소비 시장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미국의 유기농 버섯 시장과 유럽의 시장 중 수출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
- 친환경농산물 기준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국내 생산 여건과 소비 시장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글로벌갭(GLOBALG.A.P.) 시스템 도입 컨설팅 지원

○ 글로벌갭(GLOBALG.A.P.)의 특징은 다른 인증제도와 달리 생산자들이 공인 컨설턴트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림 2-12, 글로벌갭(GLOBALG.A.P.) 운영체계 참고)

- 일반적인 인증체계에서는 인증기관과 생산자 외에 컨설턴트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팜어슈러(Farm Assurer, 공인 컨설턴트)가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유지하도록 지도 및 일상적 관리를 하는 역할 수행(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되고 있음)
- 예컨대,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식품안전, 환경, 작업자 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중소기업 수준의 농업인들이 실행하기 어려워 팜어슈러가 보조적으로 수행하고 관리
- 팜어슈러는 현장심사 시에도 입회하여 생산자와 협력하여 심사를 받음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팜어슈러는 두 개사가 있으며, 컨설턴트는 세 명이 있음⁸²⁾
 - 전 세계에 공인된 팜어슈러는 총 70개사이며 이 중 한국이 2, 중국이 2, 미국이 5개사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들 중 수출 의향이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팜어슈러의 지도와 관리를 통하여 글로벌갭(GLOBALG.A.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
 - 국제적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GAP의 체계적인 도입은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가 효과적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인의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82) 공인 컨설팅사(Farm Assurer)는 국내에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와 환경대학교가 있음. 이시도르연구소는 농산물 및 생산자단체에 대하여(2015 승인), 환경대학교는 농산물에 대하여(2017 승인) GLOBALG.A.P.으로부터 컨설팅 범위가 승인됨

제6장

결론

1.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기대

-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 모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로 인식 (표 4-6 참고)
 - 친환경농업의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34.0%), 영양과 품질(23.2%), 생태환경 보전(21.3%)
 - GAP의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34.6%), 영양과 품질(24.6%), 생태환경 보전(14.3%)

- 소비자들은 위생을 관리한 GAP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하다고 인식함
 - 친환경이 더 안전(22.4%), GAP가 더 안전(31.6%)
 -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34.7%)

- 이를 두 제도의 본질적 목적으로 해석하자면,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 시에 얻는 편익은 후생가치(건강 증진)를 높이는 친환경인증과 보건가치(질병 예방)를 높이는 GAP를 동시에 획득할 때에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음
 - 소비자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과 위생적으로 관리한 GAP 농산물이 각각의 가치로 나타나기보다는, 두 인증을 동시에 받을 때 효용이 가장 높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

- 살충제 계란 파동 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신뢰도: 2017(64.6%), 2007(69.2%), 2005(65.6%)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GAP 병행 추진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생산자의 GAP에 대한 오해와 부담의 해소 필요

-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한 농산물이고, GAP는 농약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의 하위 수준의 농산물로 인식 (표 3-11 참고)
 - 친환경농산물이 더 안전(67%), GAP가 더 안전(9%),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13%)
 - 친환경과 GAP 둘 다 인증 받아도 친환경 인증마크만 사용하겠다(54%)
 - 친환경과 GAP 둘 다 인증 받으면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35%에 그침

- 친환경 농업인들은 GAP 인증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이라 인식하면서도, 심사비·분석비·시설개선 등의 비용과 인증관리에 추가될 노력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친환경이 더 쉽다(15%), GAP가 더 쉽다(44%)

- 생산자들에게 GAP 제도의 목적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GAP는 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어, 친환경과 병행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 높아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GAP는 친환경의 하위 수준 농산물이 아니라, 서로 목적과 특징이 다르고 병행할 수 있는 인증임을 인식시킬 필요

- 친환경 농업인이 GAP 인증을 추진할 때에 우려하는 부담들을 경감시켜 줄 정책이 필요
 -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친환경인증기관에 권한 부여하는 방안 (친환경농업인은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인증을 받고 싶어함 68%)
 - 한 번의 심사로 GAP 인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심사원에게 GAP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 (심사원 한 명에게 업무처리가 되기를 희망. 한 번의 서류제출(37.0%), 중복되는 사항 GAP에서 심사면제(28.0%), 한 번의 심사(22.0%)로서 총 87%)

- 친환경 농업인은 GAP 인증을 따로 추진하기 보다는 통합적 관리를 선호
 - 위생기준 등 GAP 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친환경 인증으로 GAP의 식품안전 분야가 실현되도록 기대(38%)
 - 또는 두 제도의 완전통합을 기대(35%)

3. 친환경과 GAP의 구조적 관계는 독립적 연계가 타당

- GAP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두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뜻하며 GAP가 친환경의 하위 수준으로 인식될 것임
 - 친환경 생산자는 GAP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거부감을 가질 것
 - 국제적 규범에서 유기농은 대소비자인증(B to C), GAP는 대사업자인증(B to B)로서 성격이 다르고, 도입 목적도 유기농은 건강한 농업생태계 육성이라면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으로 서로 이질적임
 - 친환경보다 GAP가 하위수준(또는 인증의 기본 조건)으로 인식된다면 GAP 인증마크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생산자들에게는 마케팅 프리미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보완 방안

○ 친환경과 GAP를 연계하는 구조는 서로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친환경 인증기준에 GAP 기준 중 일부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타당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 친환경농산물 취급 시뿐만 아니라 수확 시에도 위생 관리하도록 보완
- 친환경농산물의 저장·포장 장소와 수송수단뿐만 아니라 설비, 용기, 운반 장비까지 위생 관리하도록 보완
- 수확 과정에서 고사·손상된 농산물의 배제, 이물질의 배제 등 보완

⇒ 그밖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필수기준을 추가하여 보완

- 농경지 토양 관리, 비료의 보관·관리, 용수원 보호, 폐기물 분리수거, 농작업자의 건강·안전
- 이 기준들은 위생 부문 외의 기준들로서 친환경농업인이 GAP를 인증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가 된다면 친환경농업인은 GAP 인증기준에 적합

5.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GAP 인증 촉진 방안

- 친환경농가들은 GAP 인증을 추가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심사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GAP 인증을 추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의 자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친환경 심사원이 GAP 심사원의 자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은 6개월 이상의 기관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에도 적합
 - ⇒ 현 친환경 인증기관들을 GAP 인증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타당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GAP 심사원교육을 수료한다면 GAP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도 적합
 - ⇒ 현 친환경농산물 심사원들을 GAP 심사원 자격을 병행하여 갖추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타당함

6. 친환경농업과 GAP의 연계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

-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인증기준(농관원 고시)의 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 보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 외 GAP 필수기준의 보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의 개정
 - 친환경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 심사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

7. 향후 과제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농가 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과 GAP 정보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 한 농가의 같은 정보가 두 시스템에 반복 입력되고, 하나의 정보 개정은 두 번의 개정작업이 필요하여 업무 투입량의 간소화 필요
 - 각 시스템 상에 작목의 명칭 등이 달라 한 작목이 두 인증을 받을 때에 연계가 어려움

- 생산자가 두 인증에 대한 공통사항을 한 번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두 제도 간의 협력 필요
 - 친환경 및 GAP 기준 및 통합 인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생산자에게 두 제도의 차이와 공통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산자 인식 교육의 기회 제공

-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적극 홍보하여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및 소비자 후생효과와 GAP의 보건효과의 차이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두 제도의 연계 운영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친환경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홍보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공동 홍보 작업 등 추진

[부록 1]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 비교표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1.조직 및 인력</p> <p>가. 조직</p>	<p>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 (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p> <p>3)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p> <p>4)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 등)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항상 유지 하여야 한다.</p> <p>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p> <p>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사업자 피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p> <p>다)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p> <p>5) 인증기관(대표, 이사, 감사 등 임직원과 주주를 포함한다), 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자체의 제조·공·유통 및 판매</p> <p>나)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p> <p>다)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 나 서비스의 제공</p> <p>6)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방 사무소 포함)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p>	<p>(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 (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인증기관의 임원, 인증심사원 등의 자기인증 금지)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p> <p>(3)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p> <p>(4) 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p> <p>(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p> <p>(나)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p> <p>(5) 인증기관의 인증조직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농자재의 제조·공·유통 및 판매</p> <p>(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등의 유통·판매</p> <p>(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과 관련된 제품 제공</p> <p>(6)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p> <p>(7)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인증 범위의 승인·개신, 유효기간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p> <p>(9) 인증기관의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인증업무의 공</p>	<p>- 운영 자금 확보</p> <p>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친환경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 자금을 확대하는 기준에서 '4)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7)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승인·갱신, 유효기간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p> <p>9) 인증기관의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인증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 <p>10)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주주는 인증심사원을 겸할 수 없다.</p> <p>11)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12)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p> <p>13)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가) 성명 및 주소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다) 입사 및 퇴사일자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사항</p> <p>14)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범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5) 인증기관은 1)부터 14)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p>	<p>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0)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는 인증심사관 또는 인증심사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인증심사관은 인증심사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본인인 심사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p> <p>(1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이나 인증심사관의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적인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12)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p> <p>(13)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가) 성명 및 주소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다) 입사 및 퇴사일자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사항</p> <p>(14)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범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15) 인증기관은 (1)부터 (14)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 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농축산물 인증업무 외 유기농 상품 인증업무 수행 시에는 규칙 별표 9의2에 따른 자격기준 중 식품분야 자격을 갖춘 인증심사원을 1명 이상 확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원 1명 당 심사 및 관리농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가)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400사업자 이하를 심사하고, 관리농가수는 상시 400사업자 이하여야 한다.</p> <p>나) 단체인정 건의 경우 1개 단체가 400사업자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 인증심사원 1인이 심사·관리할 수 있다.</p> <p>다)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관리농가수 기준의 1/2를 적용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농가수 합계는 다른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농가수 이하여야 한다.</p> <p>2)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 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p> <p>나)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p> <p>다)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p> <p>라)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p> <p>3) <삭제></p> <p>4)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심사원에 대해서는 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준하는 교육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p>	<p>(1) 인증심사원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 다음의 인증심사원 확보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가)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000농가 이하를 심사하고, 관리농가수는 상시 1,000농가 이하여야 한다.</p> <p>(나)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관리농가수 기준의 1/2를 적용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농가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농가수를 합하여 700농가 이내이어야 한다.</p> <p>(다) GAP 인증 외 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타 인증에서 관리하는 농가수의 50% 이상을 관리할 수 없다.</p> <p>(2)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 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p> <p>(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등의 유통·판매</p> <p>(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과 관련된 제품 제공</p> <p>(라)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p> <p>(3) 인증심사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거서류를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p> <p>*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규칙 별표 3 제1호 나 목의 2) 중(가) 내지 마)의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당해 국가의 제도에 따라 동등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p>	<p>- 관리농가수</p> <p>친환경에서 심사원별 연간 관리 사업자수는 상근 1인당 400사업자 이하, 비상근 1인당 200사업자 이내여야 함.</p> <p>GAP의 경우 인증심사원이 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 관리 농가수의 50% 이상을 관리할 수 없음(상근 500농가, 비상근 350농가)</p> <p>GAP 인증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친환경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는</p> <p>'라)친환경인증 외 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타 인증에서 관리하는 농가수의 50% 관리 할 수 없다.' 추가 필요</p>	
<p>나. 인력</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2. 시설 가. 사무실 등</p>	<p>1)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 인증 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증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규칙 별표 9 및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 인증 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증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u>사무실은 일반인이 쉽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u> (5) 규칙 및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 사무실 기준 '4) 사무실은 일반인이 쉽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기준을 추가 필요</p>
<p>나. 검정실</p>	<p>1)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하고 2)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공인시험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지원·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하며, 각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따른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 i) 안전성검사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ii)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또는 항생제(사료·축산물·축산가공식품)가 축분뇨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 포함) 검사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p>	<p>(1) 인증기관이 인증품 등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하고 (2)에 따른 공인분석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공인분석기관이란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이 지정한 안전성 분석기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을 말한다. *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관의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은 규칙 별표 3 제2호 기의 공인분석기관으로 간주한다. (3) 인증기관이 인증품 등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2)의 공인분석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p>	<p>충족</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사료·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검사</p> <p>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p> <p>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배용수의 검사</p> <p>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p> <p>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퇴비의 검사</p> <p>사) 「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사료의 검사</p> <p>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공인된 분야</p> <p>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p> <p>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p> <p>3)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2)의 공인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사료·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검사</p> <p>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p> <p>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배용수의 검사</p> <p>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p> <p>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퇴비의 검사</p> <p>사) 「사료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사료의 검사</p> <p>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공인된 분야</p> <p>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p> <p>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p> <p>3)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2)의 공인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또는 업무협약서 등 증거서류를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p> <p>(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별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라)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p> <p>(마) 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p> <p>(바) 위탁기관이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p> <p>(사) 위탁기관이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p> <p>(4)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토양·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농산물 증감속, 미생물</p> <p>(5) 분석기간은 14일 이내이어야 한다.</p> <p>(6)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을 보장하여야 한다.</p> <p>(7) 인증기관은 위탁기관이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p>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친환경인증기관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p> <p>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p> <p>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p> <p>위탁기관이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p> <p>위탁기관이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p> <p>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가) 농림산물: 토양, 용수, GMO, 잔류농약</p> <p>나) 축산물: 토양, 용수, 사료, 항생물질</p> <p>다) 가공식품: 용수, 잔류농약, GMO, 항생물질, 첨가물</p> <p>5) <삭제></p> <p>6) 분석결과는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7)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위탁기관이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p> <p>9) 3)에 따라 분석업무를 위탁계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검정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p>	<p>(1) 인증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타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한다.</p> <p>(2) 인증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p>	<p>충족</p>
<p>3. 인증업무의 규정 가. 일반원</p>	<p>1) 인증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타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한다.</p> <p>2) 인증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칙</p> <p>나. 인증의 기준 및 인증 업무의 범위</p>	<p>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 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 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인증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인증기준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의 인증기준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2) 인증대상 지역범위 및 인증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가) 국내 인증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영무 수행 지역(전국, 시도, 시군)을 규정하여야 한다.</p> <p>나) 국외 인증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국가를 규정하여야 한다.</p> <p>다) 인증영무의 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공식품, 비식용유기공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중 인증영무를 정하여야 한다.</p>	<p>(1) 인증기준은 규칙 제8조의 우수관리인증 기준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2) 인증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가) 국내 인증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영무 수행 지역(전국, 시도, 시군)을 규정하여야 한다.</p> <p>(나) 국외 인증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국가를 규정하여야 한다.</p> <p>(다) 인증 대상품목의 범위는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 중 친체, 품목군별, 특정 품목별로 인증 품목을 정할 수 있다.</p>	
<p>다. 인증심의관 운영 방법</p>	<p>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p> <p>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영무(검토·결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근 심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인증심의관’이라 한다)에 의한 심의(2016년 10월 8일 부</p>	<p>(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인증심의관에 의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p> <p>(2) <u>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관이 1일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u></p> <p>(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의 준수사항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충족</p> <p>- 인증 심의관 기준 친환경에서는 심의관의 1일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GAP 기준에서 요구하는</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나) <삭제></p> <p>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증심의회에 대해 제32조의2제2항에 준하는 교육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p> <p>2)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의 준수사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의회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의 과정에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바) 심의관 1인이 1일 15건 또는 150사업자를 초과하여 심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건이 150사업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p> <p>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의 기능 및 역할, 보수, 위촉 및 해촉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5) <삭제></p>	<p>(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의회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p> <p>(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의 과정에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4)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p> <p>(5)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관 역할을 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2)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회관이 1일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기준에 대해서는 충족함</p>	<p>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농산물우</p>
라. 인증업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친환경농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농산물우	충족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무 실시방법</p> <p>다.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p>	<p>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관련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담당자 및 조사 시기, 횟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관리비 반환 등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표시변경, 고발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p>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관련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담당자 및 조사 시기, 횟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출장비 반환 등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 받은 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사후관리 결과를 조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p>충족</p> <p>- 사후관리 결과 입력 GAP의 경우 사후관리 후 정보시스템에 입력 기한이 정해져 있음. 이는 실제 GAP 인증기관 운영 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으로 친환경기준을 보완할 필요는 없음</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바. 인증수수로</p>	<p>1) 인증수수는 규칙 제71조에 따라 신청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p> <p>3) 인증신청비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19 수수로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p> <p>4) 규칙 제71조제1항 별표 19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등에 소요되는 표준 심사관리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농산물</p> <table border="1" data-bbox="746 1256 852 1800"> <tr> <td>농가수</td> <td>1 ~ 5</td> <td>6 ~ 15</td> <td>16 ~ 24</td> <td>25 ~ 35</td> <td>36 ~ 48</td> <td>49 ~ 63</td> <td>64 ~ 80</td> <td>81 ~ 99</td> <td>100 ~ 121</td> <td>121 이상</td> </tr> <tr> <td>금액/농가</td> <td>157</td> <td>118</td> <td>112</td> <td>108</td> <td>105</td> <td>102</td> <td>100</td> <td>98</td> <td>97</td> <td>95</td> </tr> </table> <p>나) 축산물</p> <table border="1" data-bbox="895 1249 1023 1800"> <tr> <td>농가수</td> <td>1 ~ 5</td> <td>6 ~ 15</td> <td>16 ~ 24</td> <td>25 ~ 35</td> <td>36 ~ 48</td> <td>49 ~ 63</td> <td>64 ~ 80</td> <td>81 ~ 99</td> <td>100 ~ 121</td> <td>121 이상</td> </tr> <tr> <td>금액</td> <td>5</td> <td>1.5</td> <td>4</td> <td>3.5</td> <td>3.5</td> <td>3.5</td> <td>3.5</td> <td>3.5</td> <td>3.5</td> <td>3.5</td> </tr> <tr> <td>천원/농가</td> <td>208</td> <td>149</td> <td>139</td> <td>132</td> <td>127</td> <td>123</td> <td>119</td> <td>117</td> <td>114</td> <td>110</td> </tr> </table> <p>다) 유기농식품비식용유기농품, 취급자</p> <table border="1" data-bbox="1098 1256 1214 1800"> <tr> <td>구 분</td> <td>유기농식품 비식용유기농품</td> <td>취급자</td> </tr> <tr> <td>천원/업체</td> <td>510</td> <td>342</td> </tr> </table> <p>5) 인증기관은 4)의 표준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p>6) 인증수수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관리비 중 일부를 인증 이후에 수납하고자 하는</p>	농가수	1 ~ 5	6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1 ~ 99	100 ~ 121	121 이상	금액/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농가수	1 ~ 5	6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1 ~ 99	100 ~ 121	121 이상	금액	5	1.5	4	3.5	3.5	3.5	3.5	3.5	3.5	3.5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구 분	유기농식품 비식용유기농품	취급자	천원/업체	510	342	<p>(1) 인증수수는 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청수수료, 인증심사원의 출장비(현장심사 및 생산과정조사)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p> <p>(3) 인증신청수수료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33 수수로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p> <p>(4) 인증수수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p> <p>(5)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는 출장인원 축소, 인증신청 취하, 인증취소, 심사결과 부적합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p> <p>(6)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p> <p>(7)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총족</p>
농가수	1 ~ 5	6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1 ~ 99	100 ~ 121	121 이상																																																						
금액/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농가수	1 ~ 5	6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1 ~ 99	100 ~ 121	121 이상																																																						
금액	5	1.5	4	3.5	3.5	3.5	3.5	3.5	3.5	3.5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구 분	유기농식품 비식용유기농품	취급자																																																														
천원/업체	510	342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사. 인증심사원·인증심의관 준수 사항 및 자 체관리·감독</p>	<p>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p> <p>7)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는 출장인원 측 소, 인증신청 취하, 인증취소, 심사결과 부적합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p> <p>8) 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19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 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p> <p>9) 1)에서 5)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인증수수료 부과기준을 게시하고,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라)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함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바) 인증심사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사) 인증심사원은 제1호나목1)가(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p>	<p>충족</p>
	<p>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라)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함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바) 인증심사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사) 인증심사원은 제1호나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p>	<p>(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라)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함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바)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사) 인증심사원은 제1호나목1)가(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된다.</p> <p>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관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의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p> <p>나) 인증심사의관은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 여부와 그 사유를 기록한 인증심의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다) 인증심사의관은 인증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p> <p>라) 인증심사의관은 신청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건에 대한 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 인증심사의관은 본인이나 심사한 건에 대해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바) 인증심사의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사) 인증심사의관은 제1호가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3)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 및 인증심의관에 대한 자체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임용과 해임, 직무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는 아니 된다.</p> <p>(2)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아. 인증심사원 교육</p>	<p>1) <식재></p> <p>2)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2)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충족</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자. 불만 및 분쟁 처리 절차 및 조치방법</p>	<p>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별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p> <p>2)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가) 소속 나) 성명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라) 조치결과 마) 기타</p>	<p>(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별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p> <p>(2)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p>(가) 소속 (나) 성명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라) 조치결과 (마) 기타</p>	<p>충족</p>
<p>차. 인증업무의 목적 체계</p>	<p>1)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p> <p>가) 법, 영,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및 관련자료</p> <p>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p> <p>다) 인증자의 준수사항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자의 동의서</p> <p>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 편성 나) 서류심사 절차 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라) 현장심사 절차 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p> <p>3)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1)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p> <p>(가) 법, 영,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신청서 및 관련자료</p> <p>(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p> <p>(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가) 인증심사원 편성 (나) 서류심사 절차 (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라) 현장심사 절차 (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p> <p>(3)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p>	<p>충족</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가.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p>	<p>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 및 인증심사원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5) 인증심사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1)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 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2)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p> <p>3)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5) 인증심사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p> <p>(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1)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 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2)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p> <p>(3)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p>	<p>충족</p>
<p>타. 기타</p>	<p>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p> <p>2)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1년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인증기관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구비 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관한 자료 등을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현장심사 전까지 인증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별(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로 1건 이상을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p>	<p>(1)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1년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구비 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3) 인증기관 신규지정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전까지 1건 이상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4) 인증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충족</p>

심사사항	친환경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고시 제2017-31호)	GAP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57호)	친환경 기준에서 보완할 점
	<p>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5) 인증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6)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인증확대 계획,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7) 인증의 신청·심사·승인·갱신·연장·변경·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수수료 징수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인증관련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p> <p>8)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p> <p>9) 인증기관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5)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인증확대 계획,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6) 인증기관은 인증농가 이력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7) 인증의 신청·심사·승인·갱신·연장·변경·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수수료 징수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인증관련 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p> <p>(8)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p> <p>(9) 인증기관은 가)부터 타)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부록 2] 친환경(유기) 및 GAP 인증기준 비교

구분	GAP		수준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시행규칙	고시	
1.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1-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1.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가.1)	가.1)	충족
	1-1-2. 인증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일까지의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출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2.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가.1)	가.1)	충족
	1-1-3. 생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정보 기록사항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 생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정보 기록사항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	가.1)	가.4)	충족
2. 종자 및 모종의 선정	1-1-4. 농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처에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수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1-1-4. 농산물을 출하할 때 출하처에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수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필수	가.1)	가.4)	충족
	2-1. 시중 유통 종자(모종, 버섯, 균류, 영양체 포함. 이하 같음)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1. 시중 유통 종자(모종, 버섯, 균류, 영양체 포함. 이하 같음)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시 또는 품질 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나.12)	충족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정보(생산자명, 생산연월, 생산 지역, 품종명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정보(생산자명, 생산연월, 생산 지역, 품종명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가.1)	가.1)	충족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3. 농경지 토양 관리	3-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1)	나.1)	중족
	3-1-1.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별표 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니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수	나.1)	나.1)	중족
	3-1-2. 제비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농경지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나.1)	나.1) 나.4)	중족
	3-1-3.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3-1, 3-2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필수	없음	나.9)가)나)	중족
	3-2. 토양의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필수	가.1)	가.1)	중족
3-3. 토양의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태양열 소독 등의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다.2)	다.2)6)	중족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정 필요	
3-4-1.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토양의 질 개선 방법 지정 필요	
3-4-2.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토양침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지정 필요	
3-5.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확 후 부산물이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배지 보관 방법 지정 필요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3. 농경지 토양 관리	3-5-1. 배지(복토 포함)에 오염된 병해충은 살균,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다.6)	충족	
	3-5-2.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사용자명, 사용 일자, 품목명,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등)	관장	가.1)	가.1)	충족	
	3-5-3.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배지 보관 방법 지정 필요	
4. 비료 및 양분 관리	4-1.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충족	
	4-1-1. 그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토양개량용, 작물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 인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다.4)	다.7)	충족	
	4-1-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필수	다.4)	다.7)	충족	
	4-1-3.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필수	마.1)	마.1)	충족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4. 비료 및 양분 관리	4-1-4.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질소·인산·칼륨 성분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정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없음	없음	중족
	4-2. 비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비료 보관 장소 지정 필요
	4-2-1. 보관 중인 비료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비료 보관 장소 지정 필요
	4-3. 비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포함)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사항 : 농작물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필수	가.1)	가.1)	중족
	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중족
	4-4-1.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사용량을 준수하고,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중족
	4-4-2. 사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필수	없음	없음	중족
	4-4-3. 비료 표준 사용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필수	없음	없음	중족

구분	GAP		수준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시행규칙		시행규칙	고시	
4. 비료 및 양분 관리	4-4-4. 비료를 살포하는 장비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없음	필수	없음	없음	충족
	5-1. 안전한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나.3)		나.10)		충족
5. 물 관리	5-1-1. 농업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 IV등급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농·어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나.3)	필수	나.10)		충족
	5-1-2.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없음	필수	없음		용수원 오염에 대한 주의 필요
	5-1-3.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나.3)	필수	나.3)	나.10)	충족
	5-2. 작물의 생육상황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없음	권장	없음		충족
	5-3. 농업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관수자명, 관수 일자, 관수 장소, 관개 수원, 관수량 등)	없음	권장	없음	없음	용수 사용에 대한 기록 필요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6. 작물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방제 및 농약 살포	6-1-1.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종자 소독용 포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중족	
		6-1-1-1.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중족
		6-1-1-2.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라.2)	라.8)	중족
		6-1-1-3.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중족
		6-1-2.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되어 있거나 품질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음	다.4)	다.7)	중족
		6-1-2-1. 해당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수	다.4)	다.7)	중족
		6-1-2-2. 유기농업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제시한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사용조건에 맞게 제조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필수	다.4)	다.7)	중족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6.1. 병해충방제 및 농약살포	6-1-3. 해당 농산물의 수확을 위해 영농행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 농작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자명, 사용 일자, 사용 장소, 제품명, 사용량 등)	필수	가.1)	가.1)	충족	
		6-1-4. 농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 내외부에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없음	살포 장비 사용의 청결 관리 필요
		6-1-5.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없음	충족
	6.2.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관리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한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다.4)	다.6)	다.6)	충족
		6-2-1.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없음	농산물의 중금속에 대한 관리 필요
		6-2-1-1.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없음	농산물의 중금속에 대한 관리 필요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요소 분석 결과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없음	충족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충족
	6-3-1-1. 농약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6-3-1-2. 농약 보관 장소는 농산물, 식의약품, 시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되어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6-3-1-3. 농약 보관 장소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없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6-3-2.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장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충족
	6-3-2-1.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 및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친환경자재 용기의 폐기 방법 지정 필요
	6-3-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봉투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친환경자재 유출사고 시 관리 방법 지정 필요
	6-3-3-1.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응급 대처 방법 지정 필요
	6-3-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 및 적함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약 보관에 관한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권장	가.1)	가.1)	충족
	7-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없음	없음	개인 위생관리 필요
7. 수확 및 보관	7-1-1. 수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는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수확용 기구 및 장비의 위생관리 필요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7. 수확 및 작업 및 보관	7-1-2.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라.1)	충족
	7-2. 수확물을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환경에 저장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충족
	7-2-1. 서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에서 예건(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충족
	7-3.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 수확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7-4. 고온기에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질을 낮추기 위하여 예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열거나 저온 장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7-5. 수확한 농산물이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1)	라.1)	충족
	7-5-1.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파리, 쥐·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7-5-2.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생동물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7-6.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활용기자재 포함)을 사용할 때, 「농약관리법」 상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없음	없음	충족
	7-6-1.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 기준에 따른다.	필수	가.1)	가.1)	충족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1. 수확한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관리시설 지정 필요
	8-1-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관리시설 지정 필요
	8-1-2. 충분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 시설(작업장, 그 밖의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지정한 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필수	라.1)	라.1)	충족
	8-1-3. 다만, 수확 후에 세척·건조·박피·절단·선별·조제·소포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8-2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8-2.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충족
	8-2-1. 수확 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8-2-2. 수확 후 관리 시설 인근에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있어야 하며,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또는 일회용 수건)이 있어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위생관리 방법 지정 필요
	8-2-3. 작업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과 접촉하는 작업장 바닥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8-2-4.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작업장 주변 오염원이 있는 경우 격리 필요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2-5.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 필요
	8-2-6. 지히수를 사용하여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이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취수원의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8-2-8.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8-2-9. 용수 저장 탱크에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용수 저장 탱크 덮개 설치와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8-2-10.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필수	나.3)	나.10)	충족
	8-2-11. 최종 제품의 세척을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용할 경우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여과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순환된 물은 수소이온농도지수(pH) 및 살균제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세척농산물에 한함)	필수	나.3)	나.10)	충족
	8-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8-3-1. 수확 작업 전 및 용변 후, 오염물질 취급 후에 손을 청결하게 씻고,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으로 건조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8-3-2. 위생적인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예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를 취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3-3.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8-3-4. 작업장은 사용 전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작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8-3-5.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8-4. 약용작물의 경우는 수확물의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조 후에 품질 변화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없음	충족
	8-4-1. 자연 건조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작물의 특성에 맞게 건조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8-4-2. 인공 건조할 때에는 유해가스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건조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필수	라.1)	라.1)	충족
	8-4-3. 뿌리, 잎, 꽃 등의 부위에 따라 알맞은 건조 온도와 시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8-4-4. 건조 후에는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충족
	8-5. 농산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 포장 필름, 포장지, 용기 등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라.1)	충족
	8-5-1. 특히, 과실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여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충족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6.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신별·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없음	수확 후 농산물 관리방법에 대한 언급 없음
	8-6-1.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이나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관장	없음	없음	충족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9-1.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없음	용수원의 오염 방지 방법 지정 필요
	9-1-1. 농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폐기물 처리방법 지정 필요
	9-1-2.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폐기물 처리방법 지정 필요
	9-2.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농장 주변의 위생적 관리 방법 지정 필요
	9-3. 농장 및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염원 유출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폐기물 처리방법 지정 필요
9-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충족	
9-5. 농경지에 서식하는 생물군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법 지정 필요
9-5-1. 재배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관장	없음	없음	없음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법 지정 필요

구분	GAP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수준	시행규칙	고시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0-1.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1-1. 농작업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장비(농약살포 시 보호장비, 분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1-2. 농약 살포자의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2.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고, 모든 농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2-1.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주변에 응급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2-2. 화재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소화기를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0-2-3.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10-3. 농작업자의 안전과 보건, 휴식과 근로시간, 농업인의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권장	없음	없음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 지정 필요

구분	GAP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3호		친환경(유기)		친환경 기준에서 미흡한 점
	수준	시행규칙	고시		
11. 교육	11-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직업장 내 공동 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정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교육 주기	2년에 1회			
	교육 시간	2시간			
	교육 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 기관(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 내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			
		필수	없음	가. 4) 나) 가. 5)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 지정 필요

[부록 3] GLOBALG.A.P. 기준 (v5.1) 번역: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 v5.1의 적용일: 2017.7.1. 의무시작일: 2017.10.1.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공통기준		
	본 공통기준은 글로벌별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생산자에게 적용된다.		
AF 1	생산지 이력 및 관리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생산지의 특장적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관리 계획을 실천하여 기준에 대해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본 항은 안전한 식량생산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농장의 구조적 요건인 필지, 건물 및 기타 시설들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AF 1.1	생산지 이력		
AF 1.1.1	각 필지, 과수원, 온실, 밭, 생산구획, 축사/우리 및 그 밖의 영역/생산지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생산계획이나 도면에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받드시 각 필지/과수원, 온실/밭/생산구획/축사/우리 또는 그밖에 영역/생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생산 계획이나 도면에 이름을 붙이고, 생산지에는 물리적인 표지를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인증 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예외없음)	필수
AF 1.1.2	각 생산단위에 대한 기록 시스템이 수립되어 있으며, 축산/양식 또는 농업에 관련된 활동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기록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는가?	심사 시점의 기록에는 모든 생산지역의 GLOBALG.A.P. 관련 생산이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AF 1.2	생산지 관리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1.2.1	<p>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된 모든 생산지의 최초 심사에 활용될 위험평가 결과가 있는가? 신규 필지 또는 위험요소가 변경된 기존 필지(임대부지 포함)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가 있는가? 이 위험평가를 실시한 생산지는 식품안전, 환경, 가축위생 면에서 생산에 적합한가?</p>	<p>생산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 심사 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있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반드시 매년 재검토되어야 하며, 위험요소가 바뀐 필지와 신규로 들어온 생산지들은 위험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반드시 생산지 이력과 인접한 가축/농작물/환경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다음사항을 참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인물리적, 화학적(알레르기포함) 및 생물학적위험요소 - 농지이력(신규농경지, 최근5년간의 이력이 있고 최소1년 이상인 농지) - 인접한 가축/작물/환경에 미치는 영향, - 그리고, 축산과 수산인증에서의 가축건강과 복지(위해성평가를 위한 지침은 AF.1과 AF.2참고, FV.1.은 홍수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 	필수
AF 1.2.2	<p>위험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관리 계획에 반영되고 시행되고 있는가(AF.1.2.1)?</p>	<p>관리 계획에는 AF.1.2.1에서 확인된 위험에 대해 조치하여 문제가 된 생산지가 생산에 적합하도록 개선되도록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p> <p>주의사항 : 환경위험은 이 계획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AF.7.1.1에 포함된다."</p>	필수
AF 2	<p>기록관리 및 내부 자가점검/내부심사</p>		
	<p>영농 작업에 대한 중요 세부사항을 기록하고</p>	<p>기록을 보관해야 한다.</p>	
AF 2.1	<p>특정 관리점에서 장기적인 필요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한, 외부 심사기간 동안 요구된 모든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 기록들이 2년 이상 보존되는가?</p>	<p>생산자들은 반드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진자기록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록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규신청자는 외부심사 일자나 등록 일자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록부터 있어야 하며 GLOBALG.A.P. 문서에서 모든 항목에 언급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가축들에 대해서는 이 기록들이 반드시 최초 심사 이전의 한 사이클 이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기록 유지의 원칙을 참고한다. 개별기록이 없는 경우, 그 기록에 해당하는 관리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없음)</p>	필수
AF 2.2	<p>생산자나 그 단체가 GLOBALG.A.P.기준에 대해 년 1회의 자가점검이나 생산자 단체 내부심사를 실시하는가?</p>	<p>Option1의 경우 생산자의 책임 하에 자가점검(내부심사)을 실시해야한다.(외부 관계자가 자가점검을 대신 실시할 수 있다.) 자가점검(내부심사)은 위탁업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자가점검(내부심사) 시에는 해당 없음(N/A)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을 평가한 내용에 언급해야한다. 자가점검(내부심사)은 인증 심사 전에 실시한다. (GR Part I, 5참조) (예외없음) 단 QMS를 가지는 Option1과 Option1은 예외)</p>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2.3	자가점검이나 생산자 단체 내부심사 시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문서화하여 이행해야 한다. (예외없음) (자가점검이나 내부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	필수
AF 3	위생		
	작업자는 생산물 오염에 대한 예방의 핵심이다. 생산자를 포함한 농장 직원 및 위탁업체는 생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한다. 본 항에서는 위생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작업자는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수확 및 수확물 취급과 같은 특정 활동에 시 추가되는 사항은 해당 표준 모듈에 정의되어 있다.		
AF 3.1	농장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서가 있는가?	위생문제에 대한 위험평가서란 생산 환경에 대한 것이다.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제품에 따라 위험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위험평가서는 일반적인 양식을 따를 수 있지만 농장의 특유한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연 1회 이상 검토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예외없음)	준필수
AF 3.2	농장에는 식품 안전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구역에 대해 모든 작업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절차와 위생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는가?	"농가는 AF.3.1의 위생에 대한 위험평가서 결과에 따른 위생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작업자(위탁업자 포함)와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명확한 기호나 그림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위생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안내문은 AF 3.1의 위생 위험평가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 다음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손 깨끗이 씻기; - 피부에 난 상처 보호; -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 음식 섭취, 음용수 섭취; -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통보 의무; 여기에는 질병의 증상(예컨대 구토, 황달, 설사 등)이 있는 작업자가 식품에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 체액에 의한 제품오염에 대한 통지 - 적합한 보호 복장의 착용 등. (예외없음)	준필수
AF 3.3	농장의 모든 인원들이 AF.3.2의 위생 안내문에 따라 작업별로 연례 위생교육을 받았는가?	위생안내 교육으로서 구두교육과 서면교육 둘 다 실시한다. 신규 작업자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여 그 확인을 받도록 한다. AF.3.2의 모든 사항을 반드시 이 교육에 포함시킨다. 소유주와 매니저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들은 농장의 연례 기본위생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준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3.4	농장의 위생절차가 실행되고 있는가?	위생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작업자들은 반드시 그 역할을 입증해야 하며, 위생절차를 실행한 시각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AF 4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안전하고 효율적 농장운영에는 인력이 중요하다. 농장직원과 계약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도 생산품질과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자본 구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항은 모든 작업자들이 작업장 안전상태와 사고에 대해 이해하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제공 받으며, 사고 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AF 4.1	건강과 안전		
AF 4.1.1	생산자가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의 위해 요소에 대한 위험평가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위험평가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농장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변경사항(예컨대, 신규 기계, 건물, 신규 농약, 변경된 농장 상태 등)이 발생하면 신규 내용에 대한 위험평가는 반드시 검토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위해 요소의 사례로서 기계부품 이동, 농장 기계 및 차량, 농장건물의 화재, 유기질 비료의 사용 진원차단(PTO), 전기, 과다소음, 먼지, 진동, 악천후, 사다리, 연료보관, 슬러리 탱크 등이 있다. (예외없음)	준필수
AF 4.1.2	농장에는 AF.4.1.1의 위험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고려한 건강 및 안전절차서가 있는가?	건강 및 안전절차는 반드시 위험평가(AF.4.1.1)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작업상황 등에서 드러난 모든 위험들을 처리하는 사고 및 응급 절차, 우발적 상황에 대한 계획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절차들은 반드시 매년 검토하고 위험평가가 변경되는 경우 업데이트해야 한다. 농장 기반시설, 장비 및 도구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준필수
AF 4.1.3	농장의 모든 인원이 AF.4.1.1의 위험평가에 따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위탁업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책임과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지시사항·교육·훈련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가능하다면 심사 당일날) 생산자는 교육 기록과 교육 자료 활용이 가능한 경우 직접 건강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즉, 외부강사를 활용할 필요는 없다). (예외없음)	준필수
AF 4.2	교육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4.2.1	교육활동과 참석자들에 대한 기록이 보관되는가?	교육내용, 강사, 날짜, 날짜, 참석자 명단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기록을 보관한다. 교육에 참석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AF4.2 .2	AF.4.1.1의 위험평가에 명시된 수의약품, 화학물질, 소독약품, 농약, 살충제, 기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 및 위험하거나 복잡한 장비를 다루는 작업자의 역할을 입증하는 문서(인증서) 및 다른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이 있는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가 누구인지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역량 증명, 교육수료증, 교육 참석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교육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예외없음) 수산은 수산기준 AB.4.1.1을 따른다. 축산에서는 약품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가진 작업자가 필요하다.	필 수
AF 4.3	위해 요소 및 응급약품		
AF 4.3.1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절차가 있는가? 있다면 이를 볼 수 있게 비치하고, 방문자, 협력업자를 포함한 농장업무 관련자들 모두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가?	<p>사고처리 절차를 작성하여 눈에 띄는 곳에 분명하게 설치해야 한다. 설명문은 작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및 그림으로 작성한다. 그 절차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지도, 주소 - 담당자 연락처 - 최근 전화번호(경찰서, 구급차, 병원, 소방서, 생산지 응급실 또는 교통수단, 전기 및 수도와 가스회사 등). <p>그 밖의 포함할 수 있는 절차들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가까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전화, 무선통신) - 지역 보건소, 병원 및 기타 응급서비스 연락방법 및 연락처(발생장소, 내용, 부상자 수, 부상내용, 연락한 사람 등) - 소화기 위치 - 비상구 - 전기, 가스 및 수도의 비상차단 방법 - 사고나 위험발생의 보고 방법 수산의 경우 수산기준 AB.3.1.4를 따른다.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4.3.2	잠재적 위해 요소들이 경고표시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는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잠재적 위해 요소를 나타내야 한다. (예컨대, 폐기물 투입구, 연료탱크, 작업실, 농약/비료/그밖에 화학물질 보관시설의 출입구 및 출입 허용 시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작업자들의 주 언어 및 그림으로 된 경고 표시를 붙여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AF 4.3.3	작업자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안내문이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예, 웹사이트, 전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산의 경우, 수산기준 AB.3.1.2를 따른다."	준 필 수
AF 4.3.4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지와 작업장 인근에는 구급상자가 준비되어 있으며 지정장소가 있는가?	구성물을 잘 갖추고 잘 관리된 구급상자가 모든 지정 장소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고, AF.4.1.1의 위험 평가에 의해 필요한 곳으로 쉽게 운반이 가능해야 한다	준 필 수
AF 4.3.5	각 농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적절한 인원(최소 1인)이 항상 함께 있는가?	농장작업 시 5년 이내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인원 1인 이상이 항상 배치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작업자 50명 당 1명의 응급조치교육 수료자. 농장생산지의 작업이란 본 기준에 언급된 모든 활동들을 말한다.	준 필 수
AF 4.4	보호장구		
AF 4.4.1	작업자, 방문객, 위탁사업자들은 관할 당국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과 라벨에 적힌 지시사항에 따라 보호복장을 착용하는가?	라벨의 지시문, 법적 요건, 관할 당국의 요구사항에 맞는 보호복장의 세트를 양호한 상태로, 필요하다면 수리된 상태로, 농장에 비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라벨 지시문 또는 농장운영에 맞추되, 대체로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고무장화 또는 기타 적절한 신발류, 방수의류, 보호작업복, 고무장갑, 얼굴마스크, 호흡장비(교체필터 포함), 눈 및 귀 보호장비, 구명조끼 등 라벨 또는 농장운영자에 의해 요구되는 것들.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4.4.2	사용 후에는 보호복장을 세척하여 개인 의복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는가?	보호복장은 오염정도와 사용목적에 따라 청결하며,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유형과 오염가능 정도에 따른 세척 일정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보호복장의 세척과 장비의 세척은 개인의류와 분리하여 수행한다. 재사용하는 장갑은 폐기하기 전까지는 세척하여 사용해야 한다.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보호복장과 장비 그리고 수명이 다 된 필터 카트리지는 반드시 적절하게 폐기한다. 1회용 품목(예컨대 장갑, 작업복 등)들은 한 번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한다. 교체필터를 포함한 모든 보호복장과 장비는 반드시 농약 보관 장소의 외부에 보관하고 의복이나 장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화학성분과 격리하도록 한다. (예외없음)	필수
AF 4.5	작업자 복지		
AF 4.5.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 1명이 지정되어있는가?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규정을 준수하고 실행하는 관리자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이름이 명시된 문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수
AF 4.5.2	작업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대해 관리자와 작업자간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증거자료가 있는가?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실행하는 관리자와 작업자간 회의기록은 항상 공개 되어야 하며,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한다. 검사관은 회의내용이나 회의결과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작업자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준필수
AF 4.5.3	작업자들에게 청결한 식품보관 장소, 지정 휴게실, 세면장, 음용수를 제공하는가?	모든 작업자들에게 세면시설, 음용수, 음식물 보관장소, 식사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수
AF 4.5.4	생산지에 속한 숙소는 거주 가능하며 기본적인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작업자를 위한 생산지 숙소는 거주 가능하며 양호한 지붕, 창문과 문을 갖추며 수돗물, 화장실, 배수구 등 기본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배수가 안 되는 경우, 지역의 규정에 맞추어 발효조를 활용할 수 있다.	필수
AF 4.5.5	작업장에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생산자가 안전하게 제공하고 국가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동수단은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공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준필수
AF 5	위탁사업자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위탁사업자는 생산자와 계약 하에 특정 농장 운영 (예 : 곡물 수확, 과수농약살포, 관수, 채취 등)업무를 위해 노동, 장비 또는 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 이다.		
AF 5.1	생산자가 위탁업자를 활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을 포함한 GLOBALG.A.P. CPCC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가?	농장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GLOBALG.A.P. 관리점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를 위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또는 위탁사업자를 대신하여 생산자가 수행하도록 함). 위탁된 일에 대해서 관리점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을 갖추고 있고 위탁사업자는 GLOBALG.A.P. 인증기관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계약된 위탁 업무와 기간별로 위탁사업자 업무를 점검한 수행평가서에 서명을 하여 위탁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적용되는 관리점에 대해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을 갖는다. 위탁사업자가 GLOBALG.A.P.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면, 생산자는 위탁사업자로부터 1) 평가일자, 2) 인증기관명, 3) 심사원명, 4) 위탁사업자 세부내용, 5) 해당 관리점(CPCC)들을 나열하여 평가한 보고서 등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 GLOBALG.A.P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증서는 GLOBALG.A.P.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필수
AF 6	폐기물 및 오염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일은 현재의 폐기물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폐기물을 없애기와 줄이기를 실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AF 6.1	폐기물과 오염물질 구분		
AF 6.1.1	모든 농장 내에서 폐기물 및 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가?	농장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제품(예컨대 종이, 판지, 플라스틱, 오일 등)과 오염원(예, 남은 비료, 매연, 오일, 연료, 소음, 화학물질, 분뇨, 시료 쓰레기, 곰팡이 등)들에 대한 목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각물의 경우 생산자는 폐 혼합물이나 탱크청소도 고려해야 한다.	준필수
AF 6.2	폐기물 및 오염에 대한 실행계획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6.2.1	폐기물과 오염을 최소화하거나 막는 문서화된 농장 폐기물관리계획이 있으며, 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적절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쓰레기 감소, 오염과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문서화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공기, 토양, 수질오염은 모든 제품과 계획에 명시된 자원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수산의 경우, 수산 기준 AB 9.1.1 을 참고."	준 필 수
AF 6.2.2	농지는 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며 모든 쓰레기와 폐기물이 청소되고 있는가?	"생산지나 저장고에서 쓰레기 등이 없다는 증거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미미한 당일 작업에서 발생한 것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잘 정리되거나 미미한 쓰레기 등은 상관없다. 유출된 유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워져야 한다."	필 수
AF 6.2.3	디젤이나 기타 연료 탱크를 보관하는 장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모든 연료 저장탱크는 해당 국가 규정을 따른다. 유출에 대 완충지역 등에 대한 해당 국가 규정이 없는 경우, 탱크 유출 방지 용기의 용량은 탱크 용량의 110%이어야 하며, 환경보호 지역은 탱크 용량의 165%이어야 한다. 유류 탱크 주변에는 흡연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대비 도구가 비치되어야 한다."	준 필 수
AF 6.2.4	해충, 질병, 잡초의 매개가 될 우려가 없다면, 유기적 부산물을 퇴비화하여 농장에 재활용하는가?	"유기성 폐기물은 퇴비화되고 토양개량에 이용되어야 한다. 퇴비화는 병해충과 잡초를 유발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수산의 경우, 수산 기준 AB 10.2.2 을 참고"	권 장
AF 6.2.5	세척과 청소를 목적으로 사용된 물은 건강과 안전의 위험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농약 살포기, 개인보호장비, 축사 등을 세척 후 발생하는 폐수는 환경에 대한 영향과 직원, 방문자, 인근 지역에 건강과 안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물탱크세척은 CB 7.5.1을 참고."	권 장
AF 7	생태계 영향		
	영농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야생동물과 경관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물 종의 증대, 경관의 구조적 다양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동/식물군의 풍부함과 다양성으로부터 온다.		
AF 7.1	환경 및 종다양성에 대한 농업의 영향(AB.9 수산기준 참고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7.1.1	자신의 농업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생산자는 자신의 영농활동이 야생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도록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동물의 서식지 향상과 생물다양성을 추구하는 문서화된 실행계획서를 반드시 농장 내에 비치한다. 농장은 그런 조치에 참여하고 보호를 하는 경우, 개별 계획 또는 지역의 정책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이행한다. 그 조치에는 IPM, 작물 영양관리, 보존지역설정, 관개, 다른 사용자에 대한 영향 등이 포함된다.	준 필 수
AF 7.1.2	생산자는 지역 공동체와 동/식물군의 혜택을 위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였는가? 그러한 방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상업적 농업생산과 조화를 이루고 영농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생산자가 1) 생산지에서 또는 2) 서식지를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참여하여 실질적이고 솔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실행 계획에는 농장의 동/식물군의 현 수준, 위치, 조건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이 보존계획 내에는 농장의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동/식물군의 서식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우선 조치사항의 분명한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권 장
AF 7.2	비생산 지역 보호		
AF 7.2.1	비생산 지역(예컨대, 지습지대, 산림, 곳이나 척박한 토양 등)을 생산지로 개간할 때에는 동/식물군 증대를 위한 생태학적 관점 지역으로 고려해보았는가?	비생산 지역을 개간하기 위하여 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생태계를 위해 우선 보존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권 장
AF 7.3	에너지 효율		
AF 7.3.1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 농장 시설(농기계, 생산시설 등)이 선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장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한다(예, 세부 에너지 소비 세부사항이 표기된 영수증). 생산자/단체는 농장에서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농장 장비는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선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준 필 수
AF 7.3.2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농장 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문서화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권 장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7.3.3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재생(화석연료 등) 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고려하였는가?	계획에는 비재생(화석연료 등)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권장
AF 7.4	용수의 수집 및 순환		
AF 7.4.1	용수의 수집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재사용 시 식품안전을 고려하였는가?	"용수 수집은 지붕, 온실 등과 같이 일상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장소를 권장한다. 하천용수를 수집 시 법적인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권장
AF 8	문제제기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관리는 생산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발전되도록 이끌어 준다.		
AF 8.1	GLOBALG.A.P. 기준으로 처리되는 현안과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문제제기사항 처리절차가 있는가?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사항을 적절히 기록, 분석, 시정조치를 취하고 기록하는가?	"문서화된 문제제기 처리절차를 활용하여 GLOBALG.A.P.과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문제제기 사항들을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해 취한 조치들을 기록해야 한다. 단체의 경우에, 회원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 문제제기 절차는 생산자가 인증기준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거나 기관의 합법적 조사에 의해 통보를 받는 경우 인증기관을 통해 GLOBALG.A.P 사무국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AF 9	회수/철회절차(리콜절차)		
AF 9.1	생산자는 시장에서 인증제품의 리콜을 관리하거나 제기하는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 절차가 효과적인지 연1회 이상 테스트를 실시하는가?	생산자는 반드시 리콜이 발생하는 사건의 형태, 리콜 결정책임자, 고객들과 인증기관(인증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 보고하는 일, 그리고 문제의 재고를 처리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는 절차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절차는 반드시 연1회 이상 테스트하여 그 효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는 모의테스트로 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예, 최근 판매된 제품에서의 샘플링, 수량 및 판매처, 유통단계별 당사자, 인증기관 통보, 고객에 대한 모의회수는 필요 없으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으로 충분함) (예외없음)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10	식품보안(화웨이)는 적용하지 않음)		
AF 10.1	식품보안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고 확인된 식품보안에 대한 위험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가?	운영상 모든 단계에서 식품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식품보안에 대한 위험 확인을 통해 모든 투입물은 안전하고 보안이 된 출처에서 온 것임을 보증한다. 모든 종업원과 위탁사업자들의 정보는 반드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처리의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필 수
AF 11	GLOBALG.A.P. 표시		
AF 11.1	모든 거래문서에는 GLOBALG.A.P. 상태(인증/비인증)와 GGN이 명시되어 있는가?	"인증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판매 송장 등 관련된 서류에는 인증서 소유자의 GGN번호와 GLOBALG.A.P 인증 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내부서류에서는 필수는 아니다. 생산자가 GLN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 GLOBALG.A.P.에서 발행된 GGN 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인증 상태에 대해서는 거래문서로 충분하다(예, GLOBALG.A.P.-인증품명). 비인증품은 '비인증'이라고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는 없다. 인증상태의 표시는 인증품이 인증 /비인증으로 판매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최초 심사 시 점검될 필요가 없는데, 생산자가 아직 인증되지 않았고 최초검사 결정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GLOBALG.A.P.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없음은 거래문서에 생산품의 GLOBALG.A.P.인증 상태나 GGN을 표기하지 않기로 문서상 합의를 본 경우에만 해당된다."	필 수
AF 12	로고 사용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12.1	GLOBALG.A.P. 문구, 글로벌G.A.P QR code, 트레이드마크, 로고, GGN 등을 글로벌별 일반규정과 인증동의서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생산자/생산자 그룹은 GLOBALG.A.P. 문자, 상표, GLOBALG.A.P. QR코드, 로고 그리고 GGN, GLN을 GLOBALG.A.P. 일반규정 Annex 1, 재질시권, 인증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GLOBALG.A.P. 문자, 상표 및 로고는 최종제품, 소비자포장, 판매시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인증서 소유자는 B to B상 사용할 수 있다. GLOBALG.A.P. 문자, 상표 및 로고는 최종심사 동안에 사용될 수 없는데, 생산자가 아직 인증되지 않았고 최종검사 결정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GLOBALG.A.P. 인증 상태에 대해 언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N/A는 CFM, PPM, 수산인증 또는 육묘와 가족인증에서 인증품이 투입제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역시 최종 소비자에게 노출되거나 판매시점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필수
AF 13	추적성 및 구분관리		
	병행생산 및 병행소유권(한 범인체가 인증	및 비인증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	
AF 13.1	모든 GLOBALG.A.P. 인증 및 비인증 제품들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인증제품과 비인증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는 관련 기록과 함께, 물리적인 식별 또는 제품취급 절차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AF 13.2	병행생산/병행소유(범인에 의한 인증/비인증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소유되는 것)를 위해 농산물을 등록할 경우, 인증 절차를 통한 최종 산물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병행생산/병행소유(범인에 의한 인증/비인증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소유되는 것)를 위해 농산물을 등록할 경우, 최종 소비자용의 모든 농산물은 인증 절차를 거쳐 GGN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체인증(option 2)의 GGN, 회원의 GGN, 양쪽의 GGN, 또는 개별농가(option 1)의 GGN을 뜻한다. GGN은 비인증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없음은 생산자가 자신의 GLOBALG.A.P.인증품만 소유하거나(병행생산/병행소유가 아닌 경우), 생산자와 고객 간의 GGN, GLN 또는 sub-GLN을 최종 판매제품에 표시하지 않기로 서면 약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라벨에도 GGN을 사용할 수 없다."	필수
AF 13.3	인증 및 비인증 제품의 정확한 제품발송을 위해 최종검증을 하는가?	인증 및 비인증 제품의 정확한 발송을 표시하는 점검사항을 문서화하고 있다. (예외없음)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13.4	농산물 생산 시 서로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구분절차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가?	<p>"모든 등록 제품에 대하여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 및 비인증품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고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설명 - GLOBALG.A.P. 인증 상태 - 구매한 상품 수량 - 공급자 세부정보 - 가능하다면 GLOBALG.A.P. 인증서사본 - 구매한 제품과 관련된 이력추적 데이터 - 기관에 의해 확보된 구매 주문서/송장 - 승인된 공급자의 목록" 	필수
AF 14	재고관리		
	AF14는 모든 GLOBALG.A.P에 적용된다. 생산자. 생산자 그룹 구성원의 경우, 이 정보는 때로는 그룹의 QMS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AF 14.1	판매된 수량 및 등록된 상품에 대한 판매기록이 있는가?	<p>"등록 제품의 인증품과 (가능하다면)비인증품의 판매량이 판매처에 대한 세부사항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문서에는 인증품과 비인증품의 입고고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예외없음)</p>	필수
AF 14.2	모든 제품에 대해 수량(생산-자장-구매)이 기록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가?	<p>"등록 제품에 대해 인증품과 (가능하다면)비인증품의 수량, 입고량(구매 포함), 출고량과 저장량이 기록되고 요약됨으로써 재고관리가 가능하다. 재고관리 주기는 규정되어야 하며, 처리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재고관리는 품목당 최소한 연 1회면 된다. 재고관리에 대한 문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모든 GLOBALG.A.P. 생산자에게 적용된다. (예외없음)</p>	필수
AF 14.3	취급 도중의 전환율 손실률(생산 프로세스의 투입-산출 비율)을 계산하여 관리하는가?	<p>각 취급프로세스에 대해 전환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발생된 모든 제품 폐기물의 수량을 추정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예외없음)</p>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AF 15	식품안전정책 선언		
	식품안전정책 선언은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이 구현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의 노력을 강화한 방법으로 반영한다		
AF 15.1	생산자는 IFA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식품안전정책 선언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을 하였는가?	"식품안전정책 선언의 작성 및 서명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QMS가 포함되지 않는 Option1 생산자는 식품안전정책 선언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야 자가점검이 완료된다. 단체인증(option 2)과 QMS가 있는 Option1 생산자는, QMS에서 관리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식품안전정책 선언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단체의 구성원은 작성하지 식품안전정책 선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예외없음)	필수
AF 16	식품기만의 방지(화웨이)는 적용하지 않음		
	공급 업체가 사양과 일치하지 제품 / 재료 (예 : 위조 PPP 또는 번식재료, 비 식품 포장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 위해요소가 기본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상 문제가 되기에 생산자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AF 16.1	식품기만의 방지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였는가?	부정식품(위조 PPP 또는 번식재료, 식품 외 등급의 포장재료)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요소에 대한 문서화된 평가절차서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생산의 범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준필수
AF 16.2	식품기만의 방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부정식품(위조 PPP 또는 번식재료, 식품 외 등급의 포장재료)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함을 다루는 문서화된 최소한의 위험평가가 이용가능 해야 하고 이행되어야 한다.	준필수
CB	작물기준		
CB 1	추적성		
	추적성은 식품, 포장 장식용들의 리콜/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관련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1.1	GLOBALG.A.P. 제품은 생산된 농장 또는 취급시설로 역추적(traceable) 또는 추적(trackable)할 수 있는가?	GLOBALG.A.P. 제품에 대해 등록된 농장 또는 생산자단체, 단체의 등록된 농장까지 역추적할 수 있고, 고객(전후 1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문서화된 식별 및 추적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수확 정보는 해당 배치(batch)에 대한 생산기록 또는 생산자의 필지와 연결되어야 한다.(음선2 구분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제III부를 참조). 취급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CB 2	종모		
	생산 과정에서 종모 선택은 중요하며, 적절한 품종을 사용함으로써 비료와 농약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종모의 선택은 식물성장을 양호하게 하고 제품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체 조건이다.		
CB 2.1	종모의 품질		
CB 2.1.1	구매한 종모에 품질보증이나 인증제품 보증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문서(빈 종자봉투 또는 식물등록증명서 또는 목록 리스트 또는 영수증)에는 최소한 품종 이름, 생산번호, 번식 재료 판매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종자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발아, 유전적 순도, 물리적 순도, 종자 상태 등)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GLOBALG.A.P. 식물번식재료,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받은 포장으로부터 유래한 재료는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준필수
CB 2.1.2	번식 재료는 적합한 지적소유권법을 준수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생산자가 등록된 품종이나 대목을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지적소유권법을 준수하여 획득되어진 번식재료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지난 24개월 동안 사용된 모든 번식재료에 대한 허가사항(종자가 아닌 영양번식에 의한 번식재료에 해당), 가능하다면 식물등록증명서, 식물등록증명서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품종명, 생산번호, 판매상, 포장리스트, 영수증, 종량 등이 표시된 문서나 빈 종자봉투가 있어야 한다. 참고 : UPOV의 PLUTO 데이터베이스(http://www.upov.int/pluto/en),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품종에 대한 CPVO (cpvo.europa.eu)목록이 있는 웹사이트의 "Variety Finder Tool"을 통해 품종 및 국가별 등록 및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설명을 검색할 수 있음 (예외없음)	준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2.1.3	식품 건강품질관리시스템이 내부종묘시설에 적용되는가?	해충 및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품질관리시스템이 있고 모니터링 결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종묘시설이란 종묘가 생산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점목자체 선정 포함).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모본이나 원수확 발에 대한 기록과 확인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은 규칙적인 시간간격을 두고 하여야 한다. 재배한 나무나 식물을 자가 번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예, 비매품), 이를 허용한다. 뿌리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서를 통해 뿌리줄기의 출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 필 수
CB 2.2	화학적 처리		
CB 2.2.1	구매된 종묘(종자, 대목, 묘목)는 공급자에 의해 화학처리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을 기록하는가?	"종묘에 대해 공급자에 의해 사용되어진 화학물질 명칭의 기록이 요청시 제시되어야 한다(예, 기록이나 종자봉투 유지, 사용된 PPP의 이름, 목록 등) GLOBALG.A.P. PPM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는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년작물은 예외	준 필 수
CB 2.2.2	작물번식기간 동안 자체종묘시설의 종묘에 실시한 작물보호제 처리를 기록하는가?	종묘재배 기간 동안 자체 육묘시설에서 육묘에 사용하는 모든 농약 사용을 기록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처, 날짜, 제품명, 활성성분, 작업자, 승인자, 정당성, 수량, 사용장비 등이 포함된다.	준 필 수
CB 2.3	GMO 사용(유전자 변형된 품종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안됨)		
CB 2.3.1	GMO를 재배하거나 실험하는 경우 생산국 내의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는가?	등록된 농장 또는 그 단체는 생산국가의 GMO 관련법의 인쇄본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유전자 변형 내용과 식별 코드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 체계를 갖추고 관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필 수
CB 2.3.2	생산자가 GMO를 재배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있는가?	GMO 품종이나 생산물/부산물에 사용 중이라면, 재식관련 기록이나 유전자변형에서 유래한 GMO종자 또는 생산물임을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준 필 수
CB 2.3.3	생산자는 1차 고객에게 GMO를 재배한 제품임을 알렸는가?	생산물이 GMO종자를 사용하거나 GMO생산물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2.3.4	오염위험(예컨대, 인접한 non-GM 작물에 우발적 혼입)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순수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이 나타나 있는 GM 물질(작물 및 시험작물) 취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GM 물질이 재배나 실험 마위에서 일반 작물을 오염시킬 위험을 최소화 하고 제품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저장하는 문서화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CB 2.3.5	우발적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GMO농작물을 일반 농작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가?	GMO작물의 구분 지장이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필 수
CB 3	토양 관리		
	영농생산에 있어 토양은 기본이다; 중요한 자원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적절한 토양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토양비옥도를 보장하고 수확량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
CB 3.1	생산자는 토양 관리계획이 있는가?	"생산자는 작물의 양분요구도와 토양비옥도 유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분석결과 및 해당 작물 관련 문헌은 증거로서 가능하다. 화훼류 및 장식용식물 생산자는 적어도 수확 이후 마다 산출해야 하며, 연중 수확되는 작물에 대해서도 정규기준을 근거로 하여 (예, 폐쇄시스템에서 2주마다) 산출해야 봐야 한다. (분석은 농장 장비 또는 모바일 키트로 수행할 수 있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3.2	농장에 토양지도가 있는가?	토양프로필, 토양분석, 지방의 토양지도를 기초로 각 현장에 대한 토양유형을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권 장
CB 3.3	일년생 작물인 경우, 가능한 조건이라면, 윤작을 실시하는가?	"토양구조를 개선시키고 토양 병해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작을 실시하는데, 이는 재식 날짜 및 농약 사용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윤작에 대한 기록을 필요로 한다."	준 필 수
CB 3.4	토양구조의 개선 및 유지, 토양의 경화 방지 기술을 사용하였는가?	경작지에 적당한 기술을 실천(예, 심근성 농비작물 재배, 배수,深耕, 저압력 타이어 사용, 디스크 경운, 토양구조 파괴 경운 등)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담양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3.5	생산자는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가?	토양 침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식방지수단과 개선조치(예컨대, 멀칭, 경사지 교차선 기술, 초생재배 또는 녹비작물 식재, 농장 경계에 나무와 관목 등 식재 등)를 실시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CB 3.6	생산자는 유기질비료의 영양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용하십니까?	유기질 비료는 분석결과 또는 표준 시비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유기질비료의 NPK 함량을 고려한다.	준 필 수
CB 3.7	생산자는 종자/제식율, 파종/정식일자를 기록하고 있는가?	파종과 재식에 대한 비율, 밀도,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준 필 수
CB 4	비료 사용		
	비료 사용을 결정하는 순서도에는 작물의 양분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양분은 토양에 공급되어야 하며, 축분과 작물 잔해는 농장의 영양공급원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양분손실과 오염을 막기 위한 최적사용 및 보관절차가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CB 4.1	비료의 전문가 자문		
CB 4.1.1	역량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이 비료(유기질 및 무기질)사용에 대해 자문하는가?	"비료사용기록에 유·무기질 비료의 선택을 담당하는 기술전문가가 외부전문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식 자격증이나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증 등 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비료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 기술전문가가 생산자 본인이라면, 기술에 대한 지식 보유(참고문헌, 교육수료 등) 및 도구 사용(프로그램, 웹사이트 등) 방법 시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CB 4.2	사용 기록		
	4.2.1에서 4.2.6까지: 유기질과 무기질을 포함한 모든 토양 및 관비용 비료의 사용기록은 다음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4.2.1	노지, 과수원, 온실이 구분되는가?	지리적 위치와 노지, 과수원, 온실의 명칭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료 사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양액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준 필 수
CB 4.2.2	사용일자	모든 비료사용 기록의 세부내용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예외없음)	준 필 수
CB 4.2.3	비료유형	모든 비료사용 기록의 세부내용에는 비료의 상표, 비료유형(예, N, P, K) 및 농도(예, 17-17-17)까지 기록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4.2.4	사용량	사용된 모든 비료의 양을 정확히 기록한다. (예, 10a당 kg, 리터 등) 실제 시비량이 추천시비량과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4.2.5	사용방법	"사용된 모든 비료의 시비방법 및 장비를 기록한다. 만약 같은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면 최초 1회만 기록한다. 만약 다양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면, 시비때 마다 구분하여 기록한다. 시비방법 기록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관개와 동시에 시비하는지 - 기계살포인지 시비 장비는 수동식 또는 기계식으로 구분한다.(예외없음)" "사용된 모든 비료의 사용자 이름을 기록한다. 만약 한명이 모든 작업을 할 경우 최초 1회만 기록한다. 시비를 하는 팀이 있다면, 모든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한다.(예외없음)"	준 필 수
CB 4.2.6	작업자 세부사항	모든 비료사용 기록의 세부내용에는 비료를 투입한 작업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농가가 모든 비료 사용을 결정하는 경우, 작업자 세부내용을 1회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비를 하는 팀이 있다면, 모든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한다.(예외없음)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4.3	비료 보관 4.3.1에서 4.3.7까지: 모든 비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CB 4.3.1	농약과 구분되어 있는가?	비료(유기질 무기질)와 농약 사이에 물리적 장벽(벽, 널빤지 등)을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소요건이다. 농약과 함께 사용되는 비료가 밀봉된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비료는 농약과 함께 보관할 수 있다.	준 필 수
CB 4.3.2	덮개(지붕)가 있는 지역 내에 보관되는가?	"모든 무기질비료(분제, 입제, 액제)의 보관시 대기의 영향(빛, 서리, 비 등)을 받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위해성평가(비료의 종류, 기상조건, 저장기간, 저장장소)에 따라 플라스틱 덮개(비닐가능)를 사용할 수 있다. 석회나 석고는 노지에 보관할 수 있다. 액상비료는 비료보관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를 경우 전용보관함 밖에 보관 할 수 있다."	준 필 수
CB 4.3.3	깨끗한 지역 내에 보관되는가?	무기질비료(예, 분말, 입자, 액상)는 폐기물이 없고 실지류가 번식하지 못하며 누출이나 누수가 없는 지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준 필 수
CB 4.3.4	건조한 지역 내에 보관되는가?	"모든 무기질비료(분제, 입제, 액제)의 저장장소는 환기가 잘되고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저장장소는 석회/석고를 제외하고는 토양과 직접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준 필 수
CB 4.3.5	수자원 오염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관되는가?	"모든 비료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액상비료는 관련 법규가 없다면, 저장용기/탱크는 비침투성 재질로 제작되고 저장용량의 110% 이상 크기이어야 한다."	준 필 수
CB 4.3.6	수확한 제품과 분리하여 보관되는가?	비료는 수확된 제품과 같이 보관하면 안 된다.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4.3.7	비료 재고와 사용 기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는가?	"재고기록(비료별 종류 및 수량)은 비료의 입출고 내역이 발생한 1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재고기록의 업데이트는 공급(구입비료)의 송장 또는 다른 기록 및 사용(처리/사용)의 등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계산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준 필 수
CB 4.4	유기질 비료		
CB 4.4.1	생산자는 농장에 인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GLOBALG.A.P.에 등록된 작물 생산에 어떤 인분도 사용할 수 없다. (예외없음)	필 수
CB 4.4.2	사용 전, 출처, 특성 및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유기질비료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였는가?	"유기질비료의 사용에 따른 식품안전 및 환경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유기질비료의 함유 - 부숙방법 - 미생물 오염 (식물과 인체 병원균) - 잡초/종자 함유 - 중금속 - 사용날짜 - 유기질비료의 살포 부위(예, 식용부위와 직접 접촉, 작물 사이의 토양 등) 바이오가스 식물로부터 유래된 메치등도 해당한다."	준 필 수
CB 4.4.3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기질비료를 저장하는가?	"유기질비료는 지정된 공간에 별도 보관한다. AF 1.2.1.의 위험평가에 따라,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도록 조치(콘크리트 기초와 벽 또는 우수방지 용기)를 취하거나, 수원으로부터 최소한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준 필 수
CB 4.5	비료의 성분		
CB 4.5.1	구매한 비료는 영양성분(N,P,K)에 대한 증명서류를 갖추었는가?	지난 24개월 동안 GLOBALG.A.P. 에 따라 재배한 작물에 사용된 모든 비료에 대해서는 영양성분(또는 인정 표준수치)의 세부내역을 문서화/라벨링 하고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4.5.2	구매한 무기질 비료에 대해, 중금속을 포함한 화학성분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지난 12개월 동안의 GLOBALG.A.P. 에 따라 재배한 작물에 사용된 모든 무기질 비료에 대해, 중금속을 포함한 화학성분 세부내역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권 장
CB 5	관개		
	물은 최소한 천연자원임에 따라 관개 용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예측과 기술장비를 이용해 관개를 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물 사용'에 대한 정보는 부록 CB. 2를 참조.		
CB 5.1	관개 수요 측정		
CB 5.1.1	작물 관개 요구량을 산출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까?	"생산자는 자료(지역농업기관 자료, 농장내 경우량 측정기, 증발산측정기, 토양수분측정기 등)에 기초하여 관개요구량을 산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측정도구가 농장에 있을 경우 잘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강우에만 의존하여 재배되는 작물만 예외"	준 필 수
CB 5.2	관개 관리		
CB 5.2.1	농장의 관개 관리를 대하여 매년 위험평가를 시행하고 내부 관리자에 의해 검토 되었는가?	"수원, 관수시스템, 관개 및 작물 세척 등 농장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환경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평가가 있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생산지와 비생산 지역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매년 시행하고 관리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Annex AF 1.(위험평가를 위한 표준지침)과 Annex CB 1.(농장내 물관리를 위한 지침) 참고 (예외없음)"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5.2.2	수원의 확인과 효율적으로 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측정) 할 수 있는 관개 관리계획이 지난 12개월 이내 관리자에 의하여 승인되었는가?	<p>수원의 확인과 효율적인 용수 사용을 위해 지난 12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의해 승인된 이행계획(문서화 된)이 있다.</p> <p>이 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최소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AF.1.1.1 참고) - 사진 - 수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손그림도 포함) 또는 기타 자료 - 관련장치 그리고 물 흐름도(물 저장 시스템, 용수 재사용에 필요한 저수지 또는 저장탱크 포함) <p>농장 설치된 장치(안전한 관개시스템을 구성하는 우물, 수로, 저수지, 밸브 등)는 문서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p> <p>이행 계획은 관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함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 또는 지역적으로 수행 가능하다.</p>	준 필 수
CB 5.2.3	작물 관개/관비용 물의 사용, 그리고 작물 재배별로 총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가?	<p>"생산자는 과개/관비를 위한 물 사용 내용(날짜, 관수시간, 관수량 등)을 물 관리계획에 따라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기록해야 한다.</p> <p>이는 일정하게 물 흐름이 발생하는 시스템일 경우 시간만을 기록할 수 있다."</p>	준 필 수
CB 5.3	수질		필 수
CB 5.3.1	처리된 하수를 수확 전에 사용하는 경우 위험평가에 따라 적합인가?	<p>"무처리된 하수(swage water)는 관개/관비 또는 수확 전에 사용하지 않는다.</p> <p>처리된 하수 또는 재사용된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WHO의 농업 및 수경재배에서 폐수 및 오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서(2006) 준수해야 한다.</p> <p>또한, 용수가 오염원(예, 상류지역 추거지 등)에서 유래한 경우, 생산자는 WHO 가이드라인이나 국가 법규에 따라 수질분석을 실시한다.(예외없음)"</p>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5.3.2	수확전 활동(관개/관비, 세척, 분무)에 사용된 물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오염에 대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지고, 지난 12월 이내에 관리자에 의해 검토되었는가?	<p>"위험성 평가는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이행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확인 및 과거 수질분석 결과 (가능하다면) - 사용방법 (CB, Annex 1, 참고) - (작물성장단계 동안) 관수사용 시간 - 물과 작물의 접촉 - 작물과 성장단계의 특징 - 농약(PPP) 사용을 위한 물의 순도, 농약은 반드시 물에 혼합되어야 하는데, 수질이 농약의 효율성을 상쇄하지 말아야 한다. 물에 함유된 토양입자, 유기물, 무기 성분 등이 화학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생산자는 제프라벨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 자격이 있는 농학자로부터의 조언 등을 통해 요구되는 수질 기준을 구할 수 있다. <p>위험평가는 매년 관리자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관수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업데이트되어야 한다.</p> <p>위험평가는 잠재적인 물리적(침전물,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병), 화학적 위험요소와 관수시스템의 위험 통제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p>	준 필 수
CB 5.3.3	수확전에 사용되는 물은 최신 기준을 반영한 위험평가(CB 5.3.2.)에 따라 분석되었는가?	<p>"수질검사는 물 관리계획의 일부로서 수질 위험평가, 최신 기준,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p> <p>생육 및 수확기간 중의 수질검사는 문서화된 절차(채수빈도, 채수자, 채수장소, 채수방법, 분석종류, 적합기준)에 따라 수행한다.</p> <p>화훼류 및 장식용 식물은 예외"</p>	준 필 수
CB 5.3.4	CB, 5.3.2 및 최근 기준에 따른 위험평가에 따라, 화학적, 물리적 오염이 시험실 수준에서 분석되고, ISO17025 인증을 받은 시험실이나 국가기관에서 수질분석을 하였는가?	<p>"위험평가 및 최신 기준에 따라 오염 위험성이 있다면, 화학적, 물리적 오염에 대한 시험실 분석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p> <p>수질분석은 ISO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받은 시험실, 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은 분석기관의 결과를 인정한다.</p> <p>화훼류 및 장식용 식물은 예외 가능"</p>	준 필 수
CB 5.3.5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다음 수확기 이전에 적용되는가?	<p>"필요시, 수질 위험평가 및 최근 기준에 따른 시정조치와 문서가 관리계획의 일부분으로 이용가능하다.</p> <p>화훼류 및 장식용 식물은 예외 가능"</p>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5.4	용수의 공급		
CB 5.4.1	법적 요구시, 모든 농장의 관정, 물 저장시설, 농장 재사용, 관련된 물의 배수에 대한 유효한 허가증/자격증이 있는가?	"농장 관정, 저장시설, 관개, 세척, 순환, 그밖에 법적 범위안(강으로의 유출이나 환경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제한되지 않는 농장 물 사용에 대한 관계기관에 의해 발행된 허가증/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허가증/자격증은 심사시 제시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CB 5.4.2	용수와 관련하여 허가증/자격증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확인을 위한 물 사용 및 배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또는 연간 관정량 및 사용량에 대하여 제한되는 허가증/자격증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하고 제시 가능하여야 한다."	필 수
CB 5.5	용수 탱크	—	
CB 5.5.1	용수 탱크(또는 기타 저장 시설)가 있으며,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간에도 충분히 공급될 만큼 관리가 되는가?	"계절에 따라 건기에 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용수 사용을 위한 용수 탱크(저장 시설)이 있다. 용수 탱크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허가되어야 한다."	권 장
CB 6	종합적 해충 관리(IPM)		
	종합적 해충 관리(IPM)는 가능한 해충 통제 기술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해충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고, 농약과 경제성의 관계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방제방법을 사용하여 인간건강과 환경상의 위험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IPM 도구상자(부록 CB.2)는 작물 및 원에 작물 재배에 IPM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농작물의 다양성과 해충 발달의 지역별 변수를 고려할 때 모든 IPM시스템은 지역의 물리적(기후, 지형), 생물학적(해충단지, 천적단지 등),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CB 6.1	IPM 시스템 이행을 위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조인을 받고 있는가?	외부전문관이 도움을 주는 경우, 관할당국(예, 공식전문기관)에 해당 업무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공식 자격, 관련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교육 및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술책임자가 생산자인 경우, 기술지식에 대한 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기술적 지식(예컨대, 관련 기술 문헌에 대한 활용 능력, 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과 도구사용(소프트웨어, 농장 탐지 기술 등) 능력을 통해 입증한다.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6.2에서 6.5까지: 생산자는 다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활동의 이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	
CB 6.2	“예방”	생산자는 해당 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발생과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 2가지 실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필수
CB 6.3	“관찰 및 모니터링”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해충과 천적의 출몰시기와 정도를 결정하는 최소한 2가지 방법 실천 - 병해충 관리 기술 요구사항”	필수
CB 6.4	“개입”	“생산자는 병해충 발생에 따른 작물의 경제적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방제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비화학적 방제법을 사용한다. 생산자가 방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필수
CB 6.5	농약의 효과성 유지를 위해 반저항성 또는 기타 권장사항을 준수하십니까?	병해충, 잡초 등의 발생수준이 반복적인 방제를 필요로 할 때, (가능하다면) 반-저항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준 필수
CB 7	작물보호제		
		해충 침입이 작물의 경제가치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작물보호제(PPP)를 포함한 특정 해충통제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작물보호제의 정확한 사용, 취급, 보관은 필수사항이다.	
CB 7.1	작물보호제의 선택		
CB 7.1.1	작물이 재배되는 국가에서 승인된 작물보호제의 목록을 비치하고 있는가?	지난 12개월 간 GLOBALG.A.P. 인증 농장에서 재배되거나 재배 중인 작물에 사용 승인된 작물보호제(그 활성물질 또는 효능을 일으키는 성분 포함)의 상표 목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준 필수
CB 7.1.2	생산자는 대상작물(target crop)에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작물보호제만을 사용하는가(그런 공식등록제도가 있는 경우)?	“사용되는 모든 농약은 공식적으로 해당 국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공식 등록 시스템이 없는 경우, GLOBALG.A.P 가이드라인(Annex CB.3)이나 농약 사용에 관한 FAO 규정을 따라야 한다. 생산자가 해당 국가의 농약승인을 위한 현장실험에 참여할 경우 Annex CB.3을 참고한다. (예외 없음)”	필수

순번	관리점 (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1.3	작물보호제는 제품표시 사항대로 목포에 적합하게 사용되는가?	"모든 농약의 사용은 작물에 적합하고, 표기사항이나 등록기관 기준에 따라 대상 병해충이나 잡초 또는 농약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생산자가 라벨이 없는 농약을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작물에 사용할 수 있음을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CB 8.1.4	등록된 작물보호제의 송장(거래증빙)을 보관하는가?	"사용되었거나 보관중인 모든 농약의 구입 영수증을 기록을 위해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외부심사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없음)"	준필수
CB 7.2	작물보호제의 전문가 자문		
CB 7.2.1	역량을 갖춘 담당자가 농약을 선택하는가?	작물보호제를 선택하는 기술책임자가 자격을 갖춘 자문관임을 작물보호제 관련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 공식자격이나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을 통해 그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자문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약을 선택하는 기술책임자가 생산자 자신인 경우, 기술지식에 대한 경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기술적 지식(예컨대, 제품기술서, 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필수
CB 7.3	사용기록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3.1	"농약 사용기록이 다음의 최소 기준을 이행하고 보관하는가? : - 작물 이름 및 품종 - 사용 위치 - 마지막 사용 날짜 및 시간 - 제품 거래 이름 및 성분 - 수확전 간격"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모든 농약 사용기록은 명시해야 한다. - 처리된 작물 및 품종 (예외없음) -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형학적 위치, 밭, 과수원 또는 온실의 이름 등 (예외없음) - 정확한 날짜(일/월/년도) 및 사용 종료시점. (예외없음) 실제 사용 날짜(1일 이상 사용한 경우 마지막 날짜)는 기록되어야 한다. 생산자는 마지막 날짜를 기록할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 기록상 농약사용 마지막 날짜에 종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정보는 수확전 간격을 준수하여 대조 검토되어야 한다. - 제품명(화학구조를 포함), 학술용어로 쓰여진 유효성분 또는 유효미생물. (예외없음) 성분명을 기록하거나 제품명과 유효성분의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 농약라벨에 수확전 처리간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모든 사용 농약의 수확전 처리간격이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제품에 표기가 없다면 공식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화해 및 장식용 기준이외에는 예외없음"	필수
.	7.3.2에서 7.3.7까지: 작물보호제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보관하고 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CB 7.3.2	작업자?	"농약을 사용하는 담당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이라면, 기록의 진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1명이라면 최초 1회 기록이 가능하다. 만약 사용자가 1명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명단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 필수
CB 7.3.3	사용 증명?	"모든 농약에 대한 병, 해충, 잡초 머칭이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보통명을 사용할 경우, 라벨에 표기된 이름과 일치시킨다. (예외없음)"	준 필수
CB 7.3.4	사용에 대한 기술관련?	"기술전문가가 농약 사용을 결정한다면, 기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한다. 만약 1인이 사용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최초 1회 기록이 가능하다. (예외없음)"	준 필수
CB 7.3.5	사용량?	"모든 농약의 사용량, 희석배수 등을 기록한다. 사용량 단위는 농약과 관련된 국제표준 단위(g/L 등)를 사용한다. (예외없음)"	준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3.6	사용 장비?	"농약 살포 장비의 형식(배양식, 관수시스템 등)과 장비명을 기록한다. 만약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면, 최초 1회 기록이 가능하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3.7	작물보호제 살포시 기상상태?	"농약 효과성과 이웃농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살포시 기상상태(바람, 구름, 습도 등)를 기록한다. 기록에는 그림, 문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온실 등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	준 필 수
CB 7.3.8	이웃농장에 대한 비산 방지 조치?	"농약 살포시 이웃농장으로 농약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농약 비산을 줄이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내용에는 이웃농장의 재배작물의 정보, 살포장비의 관리 등이 포함되며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준 필 수
CB 7.3.9	이웃농장으로부터 농약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웃농장으로부터의 농약 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농약 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약 비산이 되지 않도록 이웃 농가와 합의를 하거나, 농장 주변에 완충지대 설정 또는 잔류농약 분석 빈도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권 장
CB 7.4	수확 전 안전사용기간(화웨이에는 적용하지 않음.)		
CB 7.4.1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생산자는 작물보호제 사용기록과 작물수확일자 같은 분명한 기록을 통해 작물에 사용된 작물보호제에 대한 모든 수확 전 안전사용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속적 수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는 노지, 과수원, 온실(예, 경고표시, 사용시간)내 모든 안전사용기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CB 7.6.4를 참조한다. 화웨이 제외, (예외없음)	필 수
CB 7.5	남은 혼합액		
CB 7.5.1	남은 혼합액이나 탱크세척 시 발생하는 오염물은 식품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는가?	남은 혼합액과 탱크세척 시, 라벨에 나타난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시 한다. 남은 혼합액과 탱크세척 시 발생하는 오염물은 식품안전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록을 보관함. (예외없음)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6	작물보호제 잔류 분석(외화)에는 적용하지 않음		
CB 7.6.1	생산자가 도착(수출)국가(예, 생산자가 거래하려는 시장)의 최대 잔류농약기준(MRL)정보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생산자 또는 생산자의 고객은 생산물을 거래하려는(국내외로) 모든 시장에 현재 적용되는 MRL 목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MRL은 목표 시장의 고객이 확인해 주거나 생산물을 거래하려는 특정국가(국가들)를 선별하여 확인하며, 현 적용국가(국가들)의 MRL에 맞는 잔류농약 분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증명할 수 있다. 여러 나라가 그룹을 이루어 수출대상이 되는 경우, 잔류농약 분석시스템은 그 국가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춘 나라의 MRL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록 CB.4 잔류농약 분석 참조.	필수
CB 7.6.2	생산자가 생산물을 거래하려는 시장의 MRL에 맞추려는 조치를 취했는가?	생산자가 생산물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MRL이 생산국가의 MRL보다 엄격한 경우, 생산자나 그의 고객은 생산주기동안 이런 MRL이 적용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예, 필요한 경우 작물보호제 사용시스템 변경 또는 잔류농약분석결과 사용)	필수
CB 7.6.3	생산물이 도착국가의 MRL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평가를 완료하였는가?	"위험평가는 등록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농약 사용 및 MRL 초과의 잠재적 위험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위험평가는 보통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며, Annex CB 5(Maximum Residue Limit Exceedance Risk Assessment)에 따라 분석 종류, 시료채취의 시기 및 장소, 분석 방법 등을 특정된다. 위험평가 결과 잔류농약 분석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4년 이상 발생(초과, 무등록 농약의 사용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 - 농약의 미사용 또는 최저사용 - 수확시에 농약의 미사용 (수확 간격 사이의 살포가 수확전 살포기간보다 긴 경우) - 독립된 3자(예, 인증기관의 심사원, 전문가 등)나 고객에 의해 인증된 위험평가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환경이 통제적인 작물, 그리고 농약 잔류 분석을 하지 않는 산업에서는 이 조건을 예외로 한다. (버섯 사례)"	필수
CB 7.6.4	위험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잔류농약검사 증빙이 있는가?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GLOBALG.A.P.에 등록된 작물의 잔류농약 분석 결과 또는 잔류농약 모니터링과 Annex CB 5의 최소요구사항을 준수했다는 증거 또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위험평가 결과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할 때, 표본채취 및 신뢰할 수 있는 실험실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분석 결과로 특정 생산자 및 시료가 유래된 생산지역의 이력추적이 필수 있어야 한다."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7.6.5에서 7.6.7 까지: 위험평가 결과 잔류농약 분석이 필요할 경우, 아래 사항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CB 7.6.5	정확한 샘플링 절차를 따르는가?	샘플링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부록 CB 4. 잔류농약분석 참조.	준 필 수
CB 7.6.6	잔류농약분석을 의뢰한 실험실은 ISO 17025 또는 그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정 받았거나 지정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서신, 지정서사본 등). 해당 실험실은 숙련도 검증(예, FAPAS에 참여해야함)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부록 CB.4 잔류농약분석 참조.	농약 잔류농약분석을 의뢰한 실험실은 ISO 17025 또는 그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정 받았거나 지정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서신, 지정서사본 등). 해당 실험실은 숙련도 검증(예, FAPAS에 참여해야함)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부록 CB.4 잔류농약분석 참조.	준 필 수
CB 7.6.7	MRL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계획을 세웠는가?	"잔류농약분석결과 MRLs(생산국가 또는 수출물 거래국가가 다를 경우)를 초과한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이력추적 모의시행 등이 포함되어야 함) 등에 대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Annex CB 4. 잔류농약 분석 참고 이는 AF.9.1에 의해 요구되는 회수/폐기 절차의 한 부분일수도 있다."	필 수
CB 7.7	작물보호제 보관		
	작물보호제의 보관은 안전한 보관과 사용을 보장하는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CB 7.7.1	작물보호제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측정 및 혼합 등을 위한 충분한 시 설을 갖추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원래의 용기에 보관되고 있는가?	"작물보호제 저장 시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시간장치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한다. - 작물보호제 혼합의 정확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 도구나 장비는 생산자에 의해 매년 검증되어야 한다. - 이러한 도구들은 농약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취급을 위해 깨끗하게 보관한다. - 이는 충전 및 혼합 장소가 다를 경우에도 적용된다. - 모든 작물보호제는 원래의 용기나 포장지에 보관한다. 파손되어 새로운 용기로 옮길 경우에는 원래 용기의 라벨에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CB.7.9.1 참고 (예외 없음)"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7.7.2에서 7.7.6까지: 작물보호제를 아래와 같은 위치에 보관하는가?		
CB 7.7.2	양호한 지역?	"작물보호제 저장시설비는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튼튼해야 한다. 저장용량은 농약 사용 기간중 저장되는 농약이 모두 들어갈 만큼 충분해야 한다. - 작물보호제는 작업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 작업자 또는 다른 농산물과 교차 오염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3	온도조건에 적절한 지역?	작물보호제를 표시사항(라벨)에 적혀 있는 보관 요건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4	환기가 잘 되는 지역(사람이 들어가는 보관시설의 경우)?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유탄기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하고 일관적으로 환기 시켜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5	빛이 잘 드는 지역?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신반 위 모든 제품의 라벨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자연/인공조명에 의해 충분한 빛이 드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6	다른 자재와 별도의 지역?	"최소조건은 물리적 격리(벽, 시트 등)에 의해 농약과 다른 재료/표면(작물 가식부위 등)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7	모든 작물보호제 보관선반은 비흡수성 자재로 제작하는가?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유출 시 비흡수성 선반(예, 철, 플라스틱, 비흡수성 안감 자재 등)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8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이 유출물을 보유할 수 있는가?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보관탱크가 있거나 액체보관용기의 110%이 되는 보유 장치를 설치하여 시설 외부로 유출, 누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7.9	유출물 처리 시설이 있는가?	작물보호제 보관시설과 모든 충전/혼합 지정구역에는 모래, 빗자루, 쓰레받기와 비닐봉투 같은 흡수성자재와 그 용기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도구를 작물보호제 유출 시 사용하기에 전용 보관장소가 있어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10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의 열쇠는 공식교육을 받은 작업자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가?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은 자물쇠로 잠그고 정식 안전취급 및 사용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11	작물보호제는 GLOBALG.A.P. 인증을 위해 등록된 작물에 사용 승인된 것이며, 보관시설에서 다른 용도의 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하는가?	등록 또는 인증작물(예, 정원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작물보호제는 분명히 식별되며, 작물보호제 보관시설에 구분하여 보관된다.	준 필 수
CB 7.7.12	액체를 분말 위의 선반에 보관하지 않는가?	모든 액상 작물보호제는 분말이나 입자제품의 위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13	작물보호제의 입고, 재고내역, 사용내역이 기록되고 있는가?	"작물보호제의 재고내역(종류 및 포장단위의 수량)은 작물보호제의 사용후 한달 이내에 기록되어야 한다. 재고 기록은 공금 등록(작물보호제 구입 영수증이나 다른 입고 기록) 및 사용(처리/사용)에 의해 계산되어질 수 있지만, 계산의 편차를 피하기 위해 실제 재고수량의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CB 7.7.14	사고처리절차를 작물보호제/화학물질 보관시설 10m 내에 잘 보이도록 명시하는가?	"AF.4.3.1에서 설명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사고처리 절차(응급연락처, 기초 응급처치 등)는 작물보호제나 화학물질의 저장시설 및 혼합구역의 10m이내에서 식별 가능하게 부착되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7.15	작업자가 오염되는 사고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가?	"농장내 모든 농약저장시설 및 충전/혼합 지역에는 10m 이내에 눈에척설비 또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며, 비상구급품 등이 담긴 응급처치도구가 있어야 한다. - 부식성 화학물질이나 알카리 액체를 삼켰을 경우에 대비한 응급처치도구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반장고나 부목은 필요 없을 수도 있음(예외없음)"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8	작물보호제 취급(작물보호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CB 7.8.1	생산자는 작물보호제를 직접 다루는 작업자들에게 매년 건강검진 결과의 제출이나 작물보호제 사용에 따른 노출 및 중독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가?	"생산자는 농약을 다루는 모든 작업자들에게 건강검진서를 자발적으로 매년 제출하거나 건강 및 안전/위험 평가(AF.4.1.1 참고)를 하도록 제안한다. 건강검진은 국가 또는 지역 및 현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의 사용은 개인정보공개법을 따른다."	준 필 수
CB 7.8.2	농장 재입장 시간에 대한 절차가 있는가?	"농약사용 후 작물별 라벨의 표기사항에 따라 농장 재입장 간격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작업자, 임신부, 노약자 등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주어야 한다. 재입장에 대한 라벨의 표기사항이 없거나 특정 최소 간격이 없다면, 식물체에 살포된 농약이 마른 뒤에 작업자의 입장을 허락한다."	필 수
CB 7.8.3	농약을 운반하는 경우에 안전한 방법을 사용 하는가? 농약을 혼합하는 경우, 제품 라벨의 주의사항을 따르고 있는가?	"농약 운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관련 법규가 없는 경우 생산자는 농약 운반하는 작업자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준 필 수
CB 7.8.4	작물보호제 혼합 시 제품 라벨의 주의사항을 따르고 있는가?	"농약 혼합에는 적절한 측정도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라벨의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9	빈 작물보호제 용기 관리		
CB 7.9.1	빈 농약병은 농약살포장비의 압력 세정장치를 이용하고 저장 및 배출 전에 세 번 이상 물로 세척하며 하며, 빈 농약병의 세척수는 살포장비에 다시 붓거나 CB.7.5.1에 따라 처리 되는가?	"농약살포장비에 빈농약병을 위한 압력세척장비가 부착되어 있거나, 폐기전 최소 3회 이상 세척해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있어야 한다. 빈용기처리 장비나 장비 사용자를 위한 처리절차에 따라, 농약병을 세척한 물은 살포장비의 탱크에 다시 붓거나, 식품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예외없음)"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9.2	동일제품 보관 및 수송 이외의 용도로 빈 작물보호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가?	빈 작물보호제 용기를 과거와 현재 원 라벨과 동일한 제품의 보관 및 수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9.3	빈 용기는 폐기 시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작물 및 포장재와 격리시키기 위하여 빈 농약용기는 폐기 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사람 및 동물의 물리적인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안내문이나 잠금장치를 영구적으로 표시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9.4	빈 농약용기의 배출은 사람 및 환경오염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가?	"생산자는 안전한 저장 장소, 안전한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빈 농약용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배출방법은 해당되는 법규를 준수하며 인간 및 환경의 노출(수로, 생태계)을 방지한다. (예외없음)"	준 필 수
CB 7.9.5	가능하면 공식적인 수거 및 폐기 시스템을 사용하며, 빈 용기는 수거 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고 표기되며 취급되고 있는가?	"공식적인 수거 및 폐기시스템이 있다면, 생산자의 참여 기록이 있어야 한다. 모든 빈 농약용기는, 한 번 비워지면, 공식적인 수거 및 폐기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고 표기되며 취급되어야 한다."	준 필 수
CB 7.9.6	용기의 폐기나 해체(destruction)에 관한 해당 지역의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가?	관련 국가, 지방, 지역의 규정 및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작물보호제 빈 용기의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필 수
CB 7.10	오래 된 약제		
CB 7.10.1	오래 된 약제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식별되며, 인정된 또는 승인된 방법으로 폐기되는가?	오래 된 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폐기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오래된 약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 필 수
CB 7.11	자기제조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7.11.1	자가제조 물질을 작물과 토양에 사용하는 경우, 기록을 갖추는가?	<p>"자가제조 식물영양제나 토양개량제 등을 인증 작물에 사용할 경우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명 (예, 원료 식물) - 상품명 (구입한 제품이라면) - 사용장소 - 사용날짜 - 사용량 <p>만약 생산국에 해당 물질의 등록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질이 생산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등록할 필요가 없을 때, 생산자는 사용이 식품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p>	준 필 수
CB 8	장비 관리	<p>"사용장비는 수리, 오일교환 등의 정비내역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살포기 <p>: Annex CB 6에 따른 장비의 기능테스트와 육안검사</p> <p>: 농약살포장비(자동 또는 수동)는 과거 12개월 이내에 점검을 받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식 점검일정에 참여했음을 나타내는 문서, 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점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p> <p>: 미미한 수리일 경우에는 표준 수치와 비교를 매년 수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개/관비 장비 : 사용되는 모든 관개/관비의 기계/운용 방법을 위해 매년 보수 기록되어야 한다." 	준 필 수
CB 8.2	사용 장비(비료 및 농약 살포기, 관개시스템, 계량도구, 온도조절 등)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교정(가능하면)되고 있는가?	<p>"사용장비는 수리, 오일교환 등의 정비내역에 대한 내용이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살포기 <p>: 비료살포장비(자동 또는 수동)는 과거 12개월 이내에 전문회사, 공급자,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 교정확인 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p> <p>: 미미한 수리일 경우에는 표준 수치와 비교하여 매년 수행한다."</p>	준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CB 8.3	생산자는 독립적인(제3자) 교정 확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교정 계획에 생산자의 참여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생산자가 1년 이상의 공식적인 교정계획을 사용할 경우에 생산자는 CB.8.1에 따라 매년 교정확인이 필요하다."	권장
CB 8.4	농약장비는 농산물과 격리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농약 사용에 사용되는 장비(살포기, 배양식 등)는 농산물이나, 수확된 농산물의 기식부위에 닿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준필수
FV.	과실 및 채소기준		
FV 1	농지관리		
FV 1.1	리스크 관리		
FV 1.1.1	AF.1.2.1 에 따른 농지에 관한 위험평가는 생물학적 오염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가?	생산지 위험평가(AF.1.2.1)에서, 생산자는 인근의 축사, 퇴비장, 가축 및 야생동물에 의한 잠재적 오염, 홍수나 먼지 등의 오염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
FV 1.1.2	FV.1.1.1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계획 이행되고 있는가?	"관리계획에는 FV.1.1.1에서 평가된 위험을 언급되고,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절차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생산되는 농산물에 적합해야 하고, 이행 및 효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필수
FV 2	토양관리(토양훈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FV 2.1	토양훈증(토양훈증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FV 2.1.1	토양훈증제를 사용한 사유서가 있는가?	"토양훈증제의 사용에 따른 위치, 날짜, 유효성분, 사용량, 사용방법, 처리자가 포함된 문서화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메틸브로마이드는 토양훈증제로 사용할 수 없다."	준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2.1.2	토양 혼중후 재식 전 안전사용기간을 지키는가?	재식 전 안전사용기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준 필 수
FV 3	상토(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FV 3.1	가능한 조건이라면, 생산자가 상토 재활용(recycl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가?	생산자는 재활용한 상토의 양과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 청구서/운송내역서도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있어야 한다.	권 장
FV 3.2	재사용을 위한 상토 살균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장소, 살균일자, 화학물질 유형, 살균방법, 작업자 이름과 파종 전 안전사용기간을 기록하였는가?	"배지를 농장에서 살균하는 경우, 포장, 파수원, 은실명을 기록한다. 만약 농장 밖에서 살균하는 경우, 배지를 살균하는 회사명과 회사 위치를 기록한다. 다음의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 살균날짜 (년월일) - 성분명 - 사용한 기계 (예, 1000l-tank 등) - 살균 방법 (예, 침전, 연무 등) - 작업자 이름 (예, 화학물을 사용하거나 소독처리한 한 실제 인물) - 재식 전 간격"	필 수
FV 3.3	자연에서 채취한 상토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보호지역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가?	자연 채취 상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기록을 통해 해당 상토가 보존 지역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준 필 수
FV 4	수확 전 관리 (부록 FV. 1 GLOBALG.A.P. 지침 -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참조)		
FV 4.1	수확 전 작업용수의 수질		
FV 4.1.1	수확 전에 사용되는 물의 미생물학적 품질을 다루는 위험평가의 증거가 있습니까?	"물의 미생물학적 품질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한다. 수원, 잠재적 오염원, 사용 시간(작물 성숙기), 사용 방법, 사용 위치(수확부위, 이외 부위, 작물 사이의 땅 등)를 포함한다."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4.1.2	수확 전 사용되는 용수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분석되었는가? 위험평가(FV 4.1.1.)에 따라 분석주기를 설정하고, 분석결과는 Annex FV 1의 권고치 이하인가?	<p>"수확 전 사용되는 용수는 미생물 오염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기준이 없는 경우, 예방 및 시정조치를 위한 결정의 수단으로 WHO권고사항을 따른다(Annex FV 1참고). - 기준치 준수는 Annex FV.1(위험평가)의 결정과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수질 검사 계획은 제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관수시스템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 수원이 다를 경우, 샘플에 따라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하나의 수원이 다중시스템 또는 농장으로 연결된 경우 원래의 수원에서 샘플을 채수한다. 노지 샘플은 수원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실시한다. 가능한 용수 사용 위치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p>	필수
FV 4.1.3	위험평가나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생산자는 농산물의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가?	<p>"수질분석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농산물에 대한 위해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실천방안이 준비되어야 한다. 용수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오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내용에 대하여 제한되지는 않는다: -- 수확 부위의 용수 접촉 방지 -- 용수 공급의 취약성 감소 -- 병원균 밀도의 감소를 위하여 용수 사용 후 적절한 수확 시간 설정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는 생산자는 농산물은 농산물 오염 방지를 증명하기 위한 적합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한다."</p>	필수
FV 4.1.4	위험평가, FV.4.1.1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는 미생물 오염 고려해야하며, 검사기관은 ISO 17025나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졌는가?	<p>"용수의 미생물 오염을 분석하는 실험실은 ISO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받은 실험실이거나, 또는 해당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실험실이어야 한다. (예외 없음)"</p>	준필수
FV 4.2	기축 분뇨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4.2.1	가축 분뇨 사용 시기와 수확시기 사이의 간격이 식품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가?	"가축 분뇨의 사용과 수확 사이의 간격이 식품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CB.4.4.2) 가축의 생분뇨를 사용하는 경우, 새순이 나오기 전(나무의 경우), 타 작물은 수확 60일 전에 토양에 사용한다. - 생육기간이 60일 이상인 열채류의 경우 정식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FV Annex 1 참고"	필 수
FV 4.3	수확 전 점검		
FV 4.3.1	식품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만큼 동물이 과도하게 출입하여 활동한 흔적이 있는가?	재배 지역 내 오염 가능성을 낮추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웃의 사육 동물, 필지 내 야생동물 파다 출현, 설치류, 가축(가축, 애완동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역에는 완충지, 장벽,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준 필 수
FV 5	수확 및 수확후 (농산물 취급) 활동		
FV 5.1	위생의 원칙(부록 CB. 1 GLOBALG.A.P. 지침-미생물학적 위해요소 참조)		
FV 5.1.1	수확, 운반 그리고 수확후 처리활동(취급)을 위한 위생 위험평가를 하였는가?	"문서화된 위험평가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물질, 유류 누출, 그리고 사람이 전이질병, 농산물과 처리과정 등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생산자에 의해 수행되는 수확과 수확후 처리과정 모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적 영향, 도구, 작업복, 포장재, 저장-농장에서의 단기 저장도 포함) 위험평가는 농장, 작물,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험요소가 바뀔 때 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예외없음)"	필 수
FV 5.1.2	작물, 생산지, 접촉면, 수확농산물에서의 오염 방지에 적합한 수확, 수확후 처리(농장, 과수원, 온실에서 바로 처리 시에도 포함)을 위한 문서화된 위생 절차와 설명이 있는가?	"위험평가에 따라, 수확 및 수확후 처리에 대한 문서화된 위생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작업자가 질환 이후 작업에 복귀하기 위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필 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1.3	위생절차와 설명이 수확 및 수확후 처리과정(생산물 취급 포함)에서 실행되고 있는가?	<p>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p> <p>"작업자와 방문자에 대하여 위생 절차를 실행할 책임을 지는 농장 관리자나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위생평가에서 적합한 작업복장(예를 들어, 앞치마, 토씨, 장갑, 장화 등, Annex FV 1.5.4.2. 참고)의 사용이 정의되었고, 오염물질에 의한 원인이 되는 흙이 묻어 있다면 깨끗하게 관리되고, 유지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위생 설명과 절차의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예외없음)"</p>	필수
FV 5.1.4	생산물 수확, 취급 전 작업자들은 위생교육을 받았는가?	<p>"작업자는 수확 그리고 취급활동을 위한 위생절차에 대해 설명이나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작업자에 대한 교육은 수확작업 동안에 생산물의 물리, 화학, 생물적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문서 또는 그림을 이용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록과 참석확인이 가능해야 한다."</p>	필수
FV 5.1.5	작업에 복귀하기 전에 손세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림 등으로 선명하게 부착되어 있는가?	<p>"주요 위생 안내(농산물 접촉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내용 포함)에 대한 그림이 관련 장소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신선패이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오염물질을 접촉한 후, 휴면 또는 식사 후, 휴식 후, 작업장 복귀전, 그리고 모든 오염물질을 접촉한 모든 순간 이후에 손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p>	준필수
FV 5.1.6	재배지역이나 제품으로부터 분리된, 지정된 지역에서만 휴면, 식사, 음료섭취를 하도록 제한하는가?	<p>휴면, 식사, 음료 등을 하는 곳은 수확을 앞둔 작물로 부터 분리된 시설이어야 하며, 농산물 취급이나 저장공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식수는 허용된다</p>	필수
FV 5.2	위생 시설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2.1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 세척 도구가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가?	"손세척 시설은 작업자가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유지해야 한다(손비누, 수건). 작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화장실 이용 후에, 오염된 재료 취급 후에, 흡연 또는 음식 섭취 후에, 휴식시간 후에, 작업장 복귀전에, 그리고 오염물질과 접촉한 이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손세척에 사용된 물은 음용수의 미생물학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세정제(예, 알코올 젤)는 비누와 물로 손세척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손세척 설비는 화장실의 내부 또는 인근에 준비되어야 한다. (예외없음)"	필수
FV 5.2.2	작업자들이 작업지 근처의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농장의 위생 설비는 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견고하여야 한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화장실(구멍이틀 이용한 임시화장실 포함)은 청소가 용이한 재료로 만들고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화장실은 작업장에서 합리적인 거리(예, 500m 또는 7분)에 있어야 한다. 수확작업자가 수확 시(예, 기계적인 수확) 최종농산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관없다. 화장실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Annex FV 1.5.4.1. 참고"	준필수
FV 5.2.3	농장이나 시설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자가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가?	"손세척 설비, 무항비누, 손을 씻을 수 있는 물, 건조기 등이 가능한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한다.) 작업자는 작업에 복귀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화장실 이용 후, 수선 등을 사용한 후, 오염물질을 취급한 후, 흡연, 식사, 휴식, 기타 오염물질을 접촉 한 후 시설에서 농산물 취급 시, 화장실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작업장 쪽으로 직접 열리지 않아야 한다. (자동문은 예외)"	필수
FV 5.2.4	수확물을 담은 용기는 수확물 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확상자, 수확도구, 수확장비 등은 오염방지를 위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제사용이 가능한 수확상자, 수확도구(칼, 가위 등), 수확장비(기계 등)는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야 한다. 농산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문서화된 청결 계획(위험평가에 따름)이 있어야 한다 수확물 용기는 오직 수확된 제품용으로만 사용하여야한다. (농업 화학물, 세척제, 유류, 세제, 타 작물, 도시락, 도구 등을 담을 수 없음)"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2.5	작업지를 위한 적절한 탈의실이 있는가?	의복과 보호작업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권장
FV 5.2.6	수확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및 운반도구는 위험정도에 따라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수확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농산물의 오염(흙, 이물질, 가축분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필수
FV 5.3	수질		
FV 5.3.1	수확 관련 작업 또는 다른 과정에서 얼음(또는 물)이 사용되는 경우, 음용수로 얼음을 만들고 농산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위생조건 하에서 얼음을 취급하는가?	수확 시점, 또는 다른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얼음 및 물은 반드시 음용수로 만들거나 농산물이 오염을 예방하는 위생조건 하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흐르는 물에서 수확하는 크랜베리 농장의 경우는 예외이나, 생산자는 사용용수가 미생물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	필수
FV 5.4	포장/저장 시설 (제품 포장/저장이 없으면 해당없음)		
FV 5.4.1	수확된 농산물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는가?	"모든 수확물은 취급양이나 포장 또는, 저장상태에 상관없이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포장되거나 취급되는 농산물일 경우는 수확 위생 위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당일에 작업을 완료하고 정리(야외노지나 개방된공간에 저장되면 안됨)되어야 합니다. 농장에 잠시 보관하는 경우는 식품안전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FV 5.4.2	포장된 농산물의 수집, 저장, 출하 등과 관련된 모든 지점(포장과정 포함)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오염방지를 위해, 모든 농장 내외부의 저장 및 수확후 처리시설과 도구(공정 라인, 벽, 바닥, 저장공간 등)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청소 및 관리계획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필수
FV 5.4.3	포장재는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공간에 청결히 보관 되며 사용되고 있는가?	"포장재는 농산물 보관시 식품안전을 유지하도록 적절히 사용 되어야 한다. 농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재활용이 가능한 나무상자 포함)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에 보관되어야한다"	준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4.4	포장재의 잔재 및 기타 비생산 폐기물을 생산지에서 제거하는가?	포장재로의 부산물과 농산물과 상관없는 쓰레기는 농장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준 필 수
FV 5.4.5	세척제, 운할유 등을 생산물의 화학적 오염을 방지하도록 보관하는가?	생산물의 화학적 오염을 막기 위해 세척제, 운할유 등은 생산물 포장구역에서 격리된 지정 구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준 필 수
FV 5.4.6	생산물과 접촉할 수 있는 세척제, 운할유 등은 식품산업용으로 승인 받은 것인가? 라벨의 지침을 정확히 따르는가?	생산물과 접촉할 수 있는 세척제, 운할유 등이 식품산업 용도로의 사용을 승인하는 문서(특정표시문구나 물질특성자료 등)근거가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FV 5.4.7	지게차 및 기타 모든 운반 장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매연을 통한 오염을 방지 하기에 적합한가?	관내 운반에 쓰이는 장비는 기계 유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생산물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지게차와 기타 운반수레 등은 전기나 기스로 작동하여야 한다.	권 장
FV 5.4.8	반품이나 오염된 농산물은 공급체인에서 제외하고 있고, 폐기물은 잠재적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되는가?	"미생물적 식품안전 위험을 일으키는 농산물은 수확전이나 상한 것을 말한다. 상한 농산물과 폐기물은 농산물의 오염을 막도록 지정된 별도의 구역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구역들은 청소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당일 발생한 해당 폐기물은 그날 바로 처리해야한다."	필 수
FV 5.4.9	선별, 계량, 보관 지역 위에는 깨끗하지 않은 램프 및 보호덮개가 있는 램프를 사용하는가?	생산물이나 제품 취급에 쓰이는 자재 위에 달려 있는 전구나 부착물은 파손에 안전한 유형이거나 또는 식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거나 덮개가 있어야 한다.	필 수
FV 5.4.10	유리와 투명 플라스틱에 대한 취급절차서가 있는가?	"생산물 취급, 계조, 보관지역의 유리 및 투명 플라스틱 취급에 대한 절차서가 있어야 한다.(은실, 농산물의 처리, 준비, 보관 공간 등)"	준 필 수
FV 5.5	온도/습도 관리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5.1	온도와 습도 조절이 잘 관리되며 문서로 기록되고 있는가?	포장된 농산물이 농장, 시설에 보관 시, 온도와 습도의 조절(품질관리에 필요한)이 잘 되고 있고 문서 기록되어야 한다	준 필 수
FV 5.6	해충 관리		
FV 5.6.1	해충의 모니터링이나 포집 절차가 효과적이거나 포집 절차가 효과적이거나 육안으로 증명되는가?	"해충의 모니터링이나 포집 절차가 효과적이거나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외없음)"	필 수
FV 5.6.2	해충 모니터링과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시각적 증빙이 있는가?	"모니터링은 계획적이어야 하고 해충방제와 필요한 조치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예외없음)"	필 수
FV 5.6.3	해충 관리 검사와 취해진 필요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유지하는가?	모니터링 일정과 해충 관리 검사 기록 및 후속조치계획이 있어야 한다.	준 필 수
FV 5.7	세척(수확 후 세척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FV 5.7.1	최종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음용수이거나 관할당국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인가?	물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수질 적합판정 받은 것 또는 지난 12개월 내 세척기에 투입하는 지점에서 수질분석 된 것이다. 분석항목 수준은 WHO허용수준 이내이거나 관할당국이 식품산업에 안전한 것으로 허용된 것이다.	필 수
FV 5.7.2	최종제품 세척용으로 물을 재순환되는 경우, 필터 여과를 하고 pH, 살균제 농도와 노출 수준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가?	최종제품 세척용으로 물이 재순환되는 경우, 필터여과를 실시하고 pH, 살균제 농도와 노출수준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필터여과는 사용온과 수량(水量)에 따라 정기적 세척일정을 문서화하고 고체 및 부유물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자동살균 분사기에 의한 자동필터역세정과 투여비율 변화에 대한 기록이 불가능할 경우, 문서화된 절차/방법으로 공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필 수
FV 5.7.3	수질분석을 하는 실험실은 적합한가?	농산물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분석은 ISO17025 인증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시설, 또는 인증 취득 과정이 문서로 확인되는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권 장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8	수확 후 화학처리(수확 후 처리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FV 5.8.1	처리제 라벨의 지침을 지키는가?	사용된 화학성분에 대한 라벨 지침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분명한 절차와 문서(수확 후 살균제, 왁스 및 작물보호제에 대한 기록)가 있어야 한다.	필수
FV 5.8.2	수확된 작물의 수확 후 보호에 사용되는 모든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 제품은 사용 국가에서 공식등록 되었는가?	수확된 작물에 사용하는 모든 살균제, 왁스, 농약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거나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균제, 왁스, 농약은 라벨에 표시된 대로 수확된 농작물에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등록제도가 없는 경우, 본 내용에 대한 GLOBAL.G.A.P. 지침(CB 부록 4 외삼법을 허용하는 국가에서의 농약 사용을 참조할 것) 및 FAO국제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필수
FV 5.8.3	수확 후 처리용 작물보호제에 대한 최신목록을 유지하며, 승인된 용도와 작물에만 적용되는가?	지난 12개월 내 GLOBAL.G.A.P. 인증된 농장에서 재배한 생산물의 수확 후 처리용으로 사용된 약품의 상표(활성성분 구성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에 대한, 지방 및 국가 법령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문서화된 최신목록을 갖추어야 한다.	준필수
FV 5.8.4	수확 후 처리용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는 기술책임자의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 사용에 대한 자격과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가?	수확 후 생물농약, 왁스,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결정하는 기술담당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나 정규 교육과정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수
FV 5.8.5	수확 후 처리에 쓰이는 물은 음용수이거나 관할 당국의 적합판정을 받았는가?	수확 후 화학처리에 사용되는 물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수질 적합판정 받은 것 또는 지난 12개월 내 제척기에 투입하는 지점에서 수질분석된 것이어야 한다. 분석항목 수준은 WHO허용수준 이내이거나 관할당국이 식품산업에 안전한 것으로 허용된 것이다..	필수
FV 5.8.6	수확 후 화학처리에 사용되는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를 생산물 및 다른 물질과 격리시켜 보관하는가?	생산물의 화학적 오염을 막기 위해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는 생산물 및 다른 물질과 격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필수

순번	관리점(Control Point)	준수기준(Compliance Criteria)	수준
FV 5.8.7	"수확 후 화학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가? - 수확농산물의 구분 (로트번호 등) - 지역 - 적용 날짜 - 처리형태 - 상표명과 함량 - 농산물 양	"수확된 농산물에 사용하는 생물농약, 왁스, 농약에 대해 아래 사항을 기록해야한다. - 처리된 수확농산물의 로트번호 - 장소, 농장명, 수확 농산물 처리 장소 - 사용 날짜 (년월일) - 처리방법(스프레이, 담금, 가스 등) - 상표명과 성분함량 : - 사용량 (물 사용량 대비 리터 등) (예외없음)"	필수
	수확 후 화학처리에 대한 모든 기록은 보관되며 다음 기준을 포함한다. :		
FV 5.8.8	작업자 이름?	모든 수확 후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 기록에 수확한 생산물에 대한 농약을 사용한 작업자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준필수
FV 5.8.9	사용 사유?	모든 수확 후 살균제, 왁스, 작물보호제 기록에 처리할 해충/질병의 일반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준필수
FV 5.8.10	모든 수확 후 작물보호제 사용은 CB.7.6을 참조하는가?	관리점 CB.7.6 및 법에 따라 생산자가 모든 수확 후 살균제와 작물보호제 사용을 고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수

[부록 4] 친환경농업인 설문조사 양식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인식 조사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연구 용역으로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친환경농업 분야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올림

거 주 지 역	<input type="checkbox"/> 전남·광주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대전·세종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경남·부산·울산 <input type="checkbox"/> 경북·대구 <input type="checkbox"/> 경기·서울·인천
연 령	<input type="checkbox"/> 20대 이하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input type="checkbox"/> 70대 이상
대 표 작 목	<input type="checkbox"/> 논농사 <input type="checkbox"/> 잡곡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엽채류 <input type="checkbox"/> 과채류 <input type="checkbox"/> 버섯 <input type="checkbox"/> 서류 (감자, 고구마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현 재 인 증 (여러 개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GAP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재 배 방 식	<input type="checkbox"/> 노지 <input type="checkbox"/> 시설
농 사 규 모	<input type="checkbox"/> 3,000평 미만 <input type="checkbox"/> 3,000 ~ 6,000평 <input type="checkbox"/> 6,000~15,000평 <input type="checkbox"/> 15,000평 이상
연간 농사 소득	<input type="checkbox"/> 2,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000 ~ 4,000만원 <input type="checkbox"/> 4,000 ~ 6,000만원 <input type="checkbox"/> 6,000만원 ~ 1억원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
농 사 경 력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5년 <input type="checkbox"/> 5~10년 <input type="checkbox"/> 10년 이상

4.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귀하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❶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❷ 소득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 ❸ 소득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 ❹ 소득이 더 나빠질 것이다.

5.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어떤 인증마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 ❶ 친환경과 GAP 인증마크 둘 다 사용
- ❷ 친환경 인증마크만 사용
- ❸ GAP 인증마크만 사용
- ❹ 때에 따라 바꿔가며 사용

6.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는다면,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❶ 매우 그렇다
- ❷ 그렇다
- ❸ 보통이다
- ❹ 그렇지 않다
- ❺ 매우 그렇지 않다

7. 인증을 받는 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 중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이 GAP보다 더 인증받기 쉽다.
- ② GAP가 친환경보다 더 인증받기 쉽다.
- ③ 인증받는 데 차이가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8.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부담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보기 중 두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GAP 인증기준이 까다로움
- ② 인증심사원이 더 자주 오고, 관리·감독이 많아져 번거로움
- ③ 기록관리 등 업무량 증가
- ④ 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인증 비용
- ⑤ 시설과 설비를 보완하는 비용
- ⑥ 기타 ()

9.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인증기관과 하고 싶습니까?

- ① 인증비가 싼 인증기관
- ② 심사원의 전문성이 높은 인증기관
- ③ 사업 규모가 큰 인증기관
- ④ 가까운 인증기관
- ⑤ 잘 모르겠음

10.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받고 싶습니까?

- ❶ 그렇다
- ❷ 아니다
- ❸ 잘 모르겠음

11.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 ❶ 하나의 서류 제출로 친환경과 GAP 모두에 적용
- ❷ 한 번의 심사로 친환경과 GAP 모두를 추진
- ❸ 친환경 심사에서 실시한 사항을 GAP 심사에서는 면제
- ❹ GAP 인증비 면제

12.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 ❶ 위생기준 등 GAP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GAP 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인증만 받아도 자동으로 GAP가 적용되게 함
- ❷ 친환경과 GAP를 동시 획득한 농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마크 사용
- ❸ GAP 인증기관이 친환경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 ❹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 ❺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

13.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없는 GAP 인증기준들입니다.

이 중 귀하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을 두 개 선택해 주십시오.

- ❶ 농장의 정리정돈
- ❷ 농자재의 보관과 재고 관리
- ❸ 식품안전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작성
- ❹ 장비, 시설, 작업인력의 위생 관리
- ❺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 관리

14. 귀하께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만약 추가로 GAP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희망하시는 점을 다음 보기 중 두 개 선택해 주십시오.

- ❶ 유통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보장
- ❷ 정부 지원사업 등에 우선권
- ❸ 생산기술과 관리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 ❹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❺ 위생 설비 등 시설 지원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5]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양식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A)

본 설문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연구 용역으로서, 소비자가 농산물 인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올림

응답자들의 통계적 특성을 분류하기 위하여 귀하의 현재 조건을 다음 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주 지 역	<input type="checkbox"/> 전남·광주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충남·대전·세종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경남·부산·울산 <input type="checkbox"/> 경북·대구 <input type="checkbox"/> 경기·서울·인천
연 령	<input type="checkbox"/> 20대 이하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input type="checkbox"/> 70대 이상
성 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본인포함 가족수 (현 거주지 기준)	<input type="checkbox"/> 1명 <input type="checkbox"/> 2명 <input type="checkbox"/> 3명 <input type="checkbox"/> 4명 <input type="checkbox"/> 5명 <input type="checkbox"/> 6명 이상
친환경제품 구입의 관심 정도	<input type="checkbox"/> 관심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관심이 약하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관심이 있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관심이 높다
친 환 경 제 품 주 요 구 매 처	<input type="checkbox"/> 대형 마트 <input type="checkbox"/> 가까운 상점 <input type="checkbox"/> 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귀하께서 본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그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인증마크들입니다.

유기농은 3년 이상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무농약농산물은 1년 이상 화학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일반농산물보다 적게 사용한 농산물입니다.

우수관리인증(GAP)은 위생적으로 수확하고 취급한 농산물입니다.

이에 비해, **일반 농산물(비인증 농산물)**은 화학농약, 화학비료, 위생에 대한 관리가 인증되지 않은 농산물입니다.

유기농은 건강한 농업생태계에서 생산되므로, 작물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무농약은 유기농 작물의 건강과 활력보다는 약간 낮지만 다른 농산물에 비해

건강하고, 농약 잔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말합니다.

GAP 농산물은 농장과 포장시설에서 청결과 위생을 중요시하여 병원균이나 기생충알 등이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3. 친환경농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생태 환경 보전
- 수입 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업 보호
-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
-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
- 잘 모르겠다.

4. GAP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안전한 농산물 생산
- 생태 환경 보전
- 수입 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산업 보호
- 농업인들의 건강과 복지
- 영양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생산
- 잘 모르겠다.

5.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신뢰하는 편 ③ 보통 ④ 불신하는 편 ⑤ 매우 불신

6. GAP 인증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 ② 신뢰하는 편 ③ 보통 ④ 불신하는 편 ⑤ 매우 불신

7. 농산물이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모두 받는다면, 농산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친환경과 GAP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겠습니까?

- ① 위생기준 등 GAP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GAP인증을 안 받고 친환경인증만 받아도 자동으로 GAP가 적용되게 함
- ② 친환경과 GAP를 동시 획득한 농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마크 사용
- ③ GAP 인증기관이 친환경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 ④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까지 겸할 수 있도록 허가
- ⑤ 친환경과 GAP 인증제도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에서 관리
- ⑥ 잘 모르겠다

II. 다음은 구매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1. 다음 토마토 상품들 중에서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인증 없음



5,000원 / kg

유기농 + GAP



4,000원 / 1kg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겠다

2. 다음 토마토 상품들 중에서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농약



6,000원 / 1kg

GAP



5,000원 / 1kg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겠다

3. 다음 토마토 상품들 중에서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기농



7,000원 / 1kg

무농약 + GAP



6,000원 / 1kg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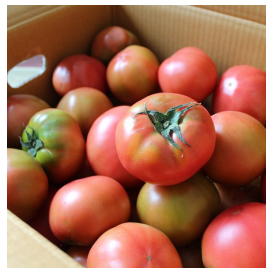
4. 다음 토마토 상품들 중에서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농약 + GAP



4,000원 / 1kg

인증 없음



6,000원 / 1kg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겠다

5. 다음 토마토 상품들 중에서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GAP



7,000원 / 1kg

유기농



5,000원 / 1kg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겠다

6. 다음 토마토 상품들 중에서 구매의향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농약



7,000원 / 1kg

유기농 + GAP



6,000원 / 1kg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겠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

- 1998(CFSAN).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 2005(김창길,김태영).친환경농산물의 구매행태 및 시장 전망
- 2007((사)미래농정연구원).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제고 방안
- 2009.Comparative study on the GLOBALGAP Fruit and Vegetables Standard and the EU Organic Agriculture Regulation
- 2009(USDA).Good Agricultural Practices and Good Handling Practices Audit Verification Program
- 2011(국회예산정책처).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 2012.FDA 식품안전 현대화법
- 2012(하상도).유기농식품의 안전성
- 2014(Dole).Dole Organic Pineapple Tour
- 2014(GB).Good agricultural practice-Part 5:Fruit and Vegetable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China)
- 2014(PrimusLabs).Local Farmer Basic GAP v13.04 Questions and Expectations
- 2015(김신애,권기대).농산물 국가인증마크가 브랜드신뢰 및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 2016(이시도르연구소).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 2016(농림축산식품부).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 2016(JGAP).JGAP(Japan Good Agricultural Practice) Control Points and Compliance Criteria(for Farms) Basic-Fruits and Vegetables
- 2017(일본농림수산부).GAP拡大の推進
- 2017(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 2017(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 2017(이시도르연구소).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급제 도입을 위한 민간인증기관 역량평가
- 2017(이시도르연구소).해외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실태조사
- www.ams.usda.gov
- www.enviagro.go.kr
- www.gap.go.kr
- www.globalgap.org

정책연구보고 R07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2017년 12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44-01

편저 ·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1108호

TEL:031-424-9792 FAX:031-424-9793
